

#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33권 제4호(통권 제132호)

2022 · 겨울호

##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는 형사정책분야에 관한 논문, 서평, 번역 등을 수록하는 학술지입니다.

본지의 발간목적은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자유로운 발표의 지면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의욕을 북돋우고 형사정책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논문의 의견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니고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본지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32호, 2022·겨울호)

## [ 연구논문 ]

의사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의 자살방조행위는 면책될 수 있는가?

- ▶ 이승준 ..... 1

경제적 계층이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갈등 인식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 ▶ 차유정·노성훈 ..... 39

사이버범죄의 주요 세 요인들의 작용과 친불법적 문화환경의 조절효과

- ▶ 이성식 ..... 71

직무위험인식과 조직냉소주의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업무량에 대한 다집단 분석

- ▶ 박은서·김승현 ..... 91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Vol. 33, NO. 4 (December, 2022)

[ Article ]

|                                                                                                                                                                            |     |
|----------------------------------------------------------------------------------------------------------------------------------------------------------------------------|-----|
| Is the act of a doctor who participated in Physician-assisted suicide exempt from the responsibility?                                                                      |     |
| ▶ Lee, Seungjun .....                                                                                                                                                      | 37  |
| <br>The Effect of Economic Class on the Perceived Criminal Injustice: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Perceived Social Conflict                                      |     |
| ▶ Cha, Yoojung · Roh, Sunghoon .....                                                                                                                                       | 68  |
| <br>The Moderating Effect of Pro-Cybercrime Culture in the Effects of Three Major Explanatory Factors on Cybercrime                                                        |     |
| ▶ Lee Seong-Sik .....                                                                                                                                                      | 89  |
| <br>The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risk perception and organizational cynicism of community police: a multi-group analysis of workload |     |
| ▶ Park, Eun-seo · Kim, Seung-Hyun .....                                                                                                                                    | 119 |

## 의사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의 자살방조행위는 면책될 수 있는가?

이 승 준\*

### 국 | 문 | 요 | 약

형법은 자살관여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경우는 형법의 개입대상이 아니나, 타인의 자살에 관여한 관여자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의사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의사조력자살은 자살자의 생명단축에 있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일견 윤리적 비난을 넘어 법적 비난가능성이 부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각국이 자살관여죄의 규정이 있음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방편으로서 의사조력자살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76%가 존엄사 내지 의사조력자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현실은 형법적으로도 의사조력자살을 검토할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헌법학계나 의료계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형법학계에서는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2016년부터 3명의 한국인이 안락사를 돕는 스위스의 비영리단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의사조력자살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임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조력한 사람이 있었고, 이들의 행위가 자살을 용이하게 한 방조의 정도였다면 자살방조죄의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의사조력자살의 형법적 정당화 가능성에 대한 시론(試論)적 고찰이다. 형법학계에서도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이에 기초한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심도 있는 학문적 논의가 촉발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먼저 의사조력자살의 개념을 살펴보았으며,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국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본 다음, 의사조력자살 허용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형법이론적으로 의사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의 행위가 정당화되고 자살방조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를 자기결정권의 관점, 평등권의 관점, 절대적 생명보호의 관점에서 논증하였다. 그 결과 의사조력자살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에 가담한 의료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2.12.31.4.1>.

❖ 주제어 : 의사조력자살, 조력존엄사, 존엄사, 안락사, 자살방조죄, 자기결정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I. 문제의 제기

죽음의 문제는 법학에서도 언제나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다. 유교 문화권인 우리 사회에서 생과 사의 경계지대에 서 있는 사람의 실존적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금기에 가까운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으며 생애주기의 마지막에는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된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다수이지만, 가족 내 간병살인, 존엄사 등의 이례적 생애말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생애과정에서 ‘늙거나 병든’ 사람들이 타인의 조력을 받고 그들의 생애말 결정(죽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형법을 통해 그러한 결정을 막고 타인의 죽음에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에서 이르게 되는 첫 번째 법적 쟁점은 존엄사 내지 연명의료의 중단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면 의사조력자살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안락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중 연명의료 중단은 사회적 논쟁이 뜨거웠지만 세브란스병원 대 김할머니 사건<sup>1)</sup>을 거치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점차 정착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을 넘어서는 의사조력자살은 헌법적 자유권과 생명의 절대적 보호원칙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영역으로, 각국에서 그 허용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져 왔다. 그런데 최근 유럽의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외의 국가에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경향이 커졌으며, 미국의 각 주도 허용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비드 구달(David Goodal) 박사의 의사조력자살은 또 한 번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104세였지만 비교적 건강했던 식물생태학의 권위자는 집에서 낙상하여 거동이 불편해진 것을 계기로 스위스로 건너가 생을 마감하면서, 노령을 이유로 한 의사조력자살의 윤리성에 불을 댕겼다.

형법은 자살관여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경우는 형법의 개입대상이 아니나, 타인의 자살에 방조하는 경우 자살방조(형법 제252조 제2항)로 처벌될 수 있다. 의사조력자살은 자살자의 생명종결에 사람의 생명을 보호·연장해

1) 대법원 2009.5.21. 2009다17417 전합 판결.

야 할 의료인인 의사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일견 윤리적 비난을 넘어 법적 비난가능성이 부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각국이 자살관련죄의 규정이 있음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방편으로 의사조력자살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76%가 존엄사 내지 의사조력자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현실<sup>2)</sup>은 형법적으로도 의사조력자살을 검토할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헌법학계나 의료계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형법학계에서는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2016년과 2018년, 2021년 각 1명씩 모두 3명의 한국인이 안락사를 돕는 스위스의 비영리단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sup>3)</sup>은 우리나라도 의사조력자살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임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라고 하겠다. 이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조력한 사람이 있었고, 이들의 행위가 자살을 용이하게 한 방조의 정도였다면 자살방조죄의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의사조력자살의 정당화 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고찰이다. 형법학계에서도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이에 기초한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심도 있는 학문적 논의가 촉발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본고는 먼저 의사조력자살의 개념을 살펴보고(Ⅱ),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국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본 다음(Ⅲ), 의사조력자살 허용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Ⅳ), 형법이론적으로 의사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Ⅴ).

## Ⅱ. 의사조력자살의 개념

의사조력자살로 잘 알려진 국가는 스위스이다. 스스로 생의 마감을 선택한 사람이 가족들과 담담히 인사를 나눈 후, 극약(펜토바르비탈)이 담긴 물잔을 들이키고 10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변한다. 흔히 알려진 의사조력자살의 장면이다.

2) 설문조사 결과는 “Ⅲ.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국민의 의식 조사 결과와 그 의미”에서 상론한다.

3) 서울신문 2019.3.6.자 기사 “한국인 2명 안락사 지원, ‘디그니타스’ 공동대표 단독 인터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06500050>) 참조. 2021년 1명이 추가로 의사조력자살을 시행하였다.

의사가 회복가능성 없는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고,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실행하는 경우를 의사조력자살 또는 의사조력사, 조력사망라고 한다.<sup>4)</sup> 가치중립적 용어로 의사조력사가 선호되기도 한다.<sup>5)</sup> 원어로는 PAS(Physician-Assisted-Suicide), PAD(Physician-Assisted dying) 또는 MAD(Medically-Assisted dying), AD(Assisted dying)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은 그 개념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간 의료계나 형법학계에서 사용되어온 용어와의 준별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성요건해당성이나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의사조력자살을 어디에 자리매김시키는지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선 자살과의 구별점을 살펴보면, 자살은 살 수 있는 신체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인데 반해 의사조력자살은 죽는 과정이 불가역적으로 진행되어 부득이하게 죽음을 수용한 것으로 둘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견해<sup>6)</sup>가 있다. 그러나 의사조력자살도 자신에게 부여된 생명을 포기하여 자연적인 사기를 앞당긴다는 점에서 자살의 하나로 구분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안락사 내지 존엄사와의 구별을 살펴보면, 우선 형법학계에서는 대체로 안락사(Euthanasie)란 격렬한 고통에 허덕이는 불치 또는 빈사의 환자에게 그 고통을 제거 또는 감경하기 위해 그를 살해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여기에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있고, 전자는 다시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가 구분된다. 그 중 고통제거의 부수적 결과로서 생명단축이 발생하는 간접적 안락사는 허용되지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사람의 생명을 단축하는 직접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sup>7)</sup>

여기서 소극적 안락사는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해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거나 치료를 중지하여 사기를 앞당기는 것을 말하며, 존엄사

4) 문재완,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2020, 7면.  
 이와 달리 의사가 직접 약물주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의사조력자살이라고 하면서 적극적 안락사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이기현,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2014, 205면).  
 5) 이하에서 혼용하여 사용하나 필자도 의사조력사라는 용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6) 김선택,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 세계적 동향”,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2018, 30면.  
 7)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6, 18면;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21면; 배종대, 형법각론(제10전정판), 홍문사, 2018, 69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제12판), 박영사, 2021, 22면.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하는 견해는 임웅, 형법각론(제9정판), 법문사, 2018, 26면.

(death with dignity)라고도 한다.<sup>8)</sup> 연명의료 중단은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안락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로 인해 행위태양에 초점을 맞추어 연명의료 중단을 소극적 안락사 대신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sup>9)</sup>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오용된 전력 때문에 안락사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지만 존엄사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sup>10)</sup>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sup>11)</sup>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사람의 자연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죽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므로 사기가 임박하여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때에 행해지는 생명유지조치의 중단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sup>12)</sup>

이러한 일반적인 구분에 대해,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고통 없는 방식의 죽음을 원해서 스스로 요청하는 경우의 안락사를 말하고,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구하지 않은 경우의 안락사를 말하며, 무자발적(non-voluntary) 안락사란 지속적인 식물인간상태와 같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상태에 놓여 있거나 나이가 어린 탓에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경우와 같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안락사로 구분하는 견해<sup>13)</sup>도 있다. 이 경우 적극적 안락사 및 소극적 안락사의 개념과 결

- 8) 배중대, 앞의 책, 35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22면.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로 보는 다른 문헌은 손미숙, “소극적 안락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제42권 제1호, 2014, 186면; 이승호, “안락사 논의와 연명의료 중단 법률의 주요쟁점에 관한 소고”, 일감법학 제35호, 2016, 210면 등.
- 9) 김선택, 앞의 논문, 29면. 다만 연명의료 중단은 명확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23면; 신동운, 형법각론(제2판), 법문사, 2018, 544면].
- 10) 한상수,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2011, 165면. 독일에서도 소극적 안락사라는 표현 대신 생애 말기에서의 치료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 11) 오레곤 주의 경우 1972년 주지사였던 톰 맥컬(Tom McCall)이 의사조력자살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지지자들에게 심리적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치적 레토릭으로서 존엄사라는 명칭을 제안하였다고 한다(엄주희,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헌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2013, 280면). 이러한 흐름에서 오레곤주와 같은 일부 주는 존엄사법(the Death with Dignity Act)이라는 법률을 쓰면서도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 12) 김성규, “업무로서 행해지는 자살방조의 범죄화”, 강원법학 제51권, 2017, 4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23면; 임웅, 앞의 책, 29면; 대법원 2016. 1. 28. 2015다9769. 반면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제3의 영역’이라는 견해로는 김성돈, 형법각론(제6판), SKKUP, 2020, 63면.
- 13) 김선택, 앞의 논문, 29면; 황도수, “죽을 권리와 죽일 권능 용어의 정리를 제안하며”, 세계헌법연구 제19권 제2호, 2013, 113면 이하.

합하면 6개의 조합이 가능하게 된다.<sup>14)</sup> 이에 더해 의사조력자살은 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남용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소극적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sup>15)</sup>

생각건대 자발성·비자발성·무자발성은 일부의 입법례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기는 하나 이는 환자의 동의의 방식 내지 태양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안락사의 유형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소극적 안락사도 사기에 임박한 환자에게 행해지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권의 차이로 의사조력자살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소극적 안락사가 사기에 임박한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생명유지조치의 중단을 의미하는 반면 의사조력자살은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사망의 시기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중단행위를 하는 점에서 적극적 안락사에 유사한 적극적·직접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가 의사에게 중단을 강제할 수 있으나 의사조력자살은 환자가 의사에게 강제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이상의 분류에 비춰보면 의사조력자살은 자살의 일종으로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지만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사기 임박이라는 시기적 제한이 없이 죽음의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을 본인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적극적 안락사나 소극적 안락사의 분류에는 포함될 수 없다. 안락사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생명의 단축을 초래하거나 부차적으로 촉진하는 행위가 제3자에 의해 지배되지만,<sup>16)</sup> 의사조력자살은 허용되는 상황, 실행의 주체 등에서 이러한 안락사와 구분된다. 다만 의사조력자살은 환자가 불치의 질병, 격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의료인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점에서 안락사의 일종이며, 직접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는 제3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14) 김선택, 앞의 논문, 29면.

15) 문제완, 앞의 논문, 8면.

16) 즉 죽음에 이르는 사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환자 본인이 아니라 의료인 등 제3자인 것이다.

### Ⅲ.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와 그 의미

#### 1. 국민의식 설문조사 결과

최근 국내 대학의 한 연구진은 의사조력자살과 관련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살펴볼 또 하나의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피해자 평균 나이 64.2세’, ‘간병기간 평균 6년 5개월’, ‘아들과 남편이 58.3%’, ‘환자를 죽이거나 같이 죽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사람의 10명 중 6명 독박간병’등의 키워드들로 요약되는 이 설문조사는 한 언론사가 간병살인에 이른 피고인들의 판결문 108건, 가해자 154명을 분석한 결과이다.<sup>17)</sup>

본 논문의 시작점이 일정 부분 가족의 질병과 간병생활로 인한 처지비관, 가족에 대한 부담의 감경 등의 사유로 간병살인에 이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출발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부정하고 싶지만 간병살인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주제가 바로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이라는 ‘판도라의 상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더하여 의사조력자살과 관련하여 실시된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다소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 연구팀이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sup>18)</sup>으로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는데, 조사대상자의 76.3%가 합법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우 동의’ 61.9%, ‘동의’ 14.4%, ‘부동의’ 21.7%, ‘매우 부동의’ 2%였다.<sup>19)</sup>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찬성 이유는 ‘남은 삶의 무의미’ 30.8%, ‘존엄한(good death) 죽음에 대한 권리’ 26.0%, ‘고통의 경감’ 20.6%, ‘가족의 고통과 부담’ 14.8%, ‘의료비

17) 서울신문 2018. 9. 2.자 “간병은 전쟁이다, 죽어야 끝나는” 기사 참조(<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03005004>).

18) Young Ho Yun/Jin-Ah Sim/Yeani Choi/Hyejeong Yoon, “Attitudes toward the Legalization of Euthanasia or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South Korea: A Cross-Sectional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IJERPH)*, 2022, 19(9), 5183, p. 4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20대부터 70대로 20대가 16.6%, 30대가 16.6%, 40대가 20.5%, 50대가 20.9%, 70대 이상이 9%로 평균 연령은 47.96세였다.

19) Young Ho Yun et al., 앞의 논문, p. 3.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4.6%, '인권에 반하지 않음' 3.1%,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1% 등이 있었다.

## 2. 설문조사 결과의 의미

우선 주목할 부분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동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점인데, 76.3%라는 비율은 영국(75.8%)이나 스위스(81.7%)와 비교해도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다.<sup>20)</sup> 연구진의 과거 조사결과, 즉 2008년 50.4%, 2016년 41.4%의 국민이 찬성한 데 비해 이번 연구에서는 그 비율이 절반가량 상승하였다.<sup>21)</sup>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다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의사조력자살의 입법화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령으로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둘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동반질병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율이 높은 것은 고령사회인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2)</sup>

그러나 이번 조사에는 한계도 존재한다. 연구진도 인정했듯이 의사조력자살의 정의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sup>23)</sup> 이에 따라 설문조사 참여자가 수용반응하는 것도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본 조사가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기에 이루어졌으며,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였으나 면담자가 존재하여 사생활 및 익명성 보호가 미흡할 수 있었다. 또한 응답률이 55.6%로 무응답 편향으로 인해 대표성이 낮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클 수밖에 없는 그룹인 70세 이상이 13.6%에 불과한 한계가 있다.<sup>24)</sup>

이 같은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의식변화를 판단컨대 최소한 이제는 우리 사회도 연명의료중단을 넘어 죽음의 본질적 문제, 자기결정권의 종국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의사조력자살과 그 부차적 조건(완화의료의 확

20) Young Ho Yun et al., 앞의 논문, p. 6.

21) 2022.5.24.자 서울대학교 병원뉴스, “국민의 76%,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http://www.snuh.org/board/B003/view.do?bbs\_no=5880).

22) Young Ho Yun et al., 앞의 논문, p. 8.

23) 연구진은 PAS of Dr. David Goodall in Switzerland의 정의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단어와 구문을 사용하여 EAS를 정의했다고 한다.

24) Young Ho Yun et al., 앞의 논문, p.7~8.

대 등)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는 점은 알 수 있다.

## IV.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76%가 넘는 국민이 의사조력자살의 입법화에 찬성하여 스위스나 영국 등 유럽과 비교하여 결코 낮지 않은 찬성률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유럽을 비롯한 외국의 의사조력자살 규제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형법이론적으로는 물론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도 의미가 있는 작업일 것이다.

### 1. 유럽

유럽 중 전세계적으로 의사조력자살이 알려진 곳은 스위스이다. 유럽연합 중 적극적인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이며,<sup>25)</sup> 스위스는 의사조력자살 캡슐(SARCO)이 도입될 정도로 의사조력자살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스위스에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한국 등 타국 국민들의 조력자살을 돕는 대표적 단체, 엑시트<sup>26)</sup>, 디그니타스<sup>27)</sup> 등이 활동하고 있다.

스위스는 1942년 조력자살을 제한하는 형법 제115조를 제정하기 전까지는 관습적으로 조력자살을 처벌해 오지 않았다. 1893년 이후 자살과 자살 시도가 처벌되지 않았으며 자살방조자도 경제적 이익 등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한 처벌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속을 노린 자녀의 존속살해 등이 횡행하자 규제체계로의 편입이 필요했고 이에 ‘이기적 동기’의 자살을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1942년 스위스는 형법 제115조에 이기적

25) 문제완, 앞의 논문, 13면.

26) 엑시트(Exit)는 1982년 설립된 최초의 단체로 회원수 14만 5천명의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27) 디그니타스의 정식명칭은 역설적이게도 Dignitas-To live with dignity-To die with dignity이다. 1998년 창립되어 11,0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한 해 200여명의 회원이 조력자살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이 100여 명 가입되어 있는 디그니타스의 활동 내용으로는 자살과 자살시도 예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목표는 디그니타스와 같은 조력자살단체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 1998년부터 2021년까지 이곳을 통해 자살한 외국인인 3,500여명에 이른다(<http://www.dignitas.ch/index.php?lang=en%5D%28http://www.dignitas.ch/index.php?lang=en%29>).

인 동기로 타인의 자살을 유인 또는 자살에 조력을 제공하여 그가 자살하거나 자살미수에 이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모호한 개념이지만 이기적인 동기가 있을 경우에만 자살관여행위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후 2011년 조력자살을 금지하자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지만 압도적 반대로 실패하였다. 스위스는 현재 의사조력자살을 시행하는 자가 스위스 국적일 필요도 없으며 조력자가 의사일 필요도 없다.

스위스의 국내법상 의사조력자살의 엄격한 요건은 없다.<sup>28)</sup> 그러나 조력자살을 시행하는 전문가체인 의사협회, 즉 스위스 의학아카데미에서 제정한 의료윤리지침(Umgang mit Sterben und Tod)은 의사가 지켜야 할 4가지 요건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첫째 의사는 환자가 조력자살을 판단할 능력이 있음을 문서화해야 하며 정신질환, 치매 등과 같이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 적절한 전문의가 평가하도록 해야 하고, 자살충동이 정신장애의 증상일 경우 조력자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환자의 요구는 숙고를 통해 외부의 압력 없이 결정되고 영구적이어야 한다.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2회 환자의 이러한 요구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환자에게 심각한 상태(Schwerwiegendes Leiden)가 인정되어야 한다. 환자의 증상 및 기능장애의 심각성이 적절한 진단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이것이 환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원인이어야 한다. 다만 이 고통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의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의사는 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고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고 고통이 납득가능했다는 점을 기록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의 조력자살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넷째 의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옵션과 기타 도움 및 지원방안을 찾고 환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제안하여야 한다.<sup>29)</sup>

28) 디그니티스와 엑시트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의사조력자살은 대체로 희망자가 조력단체와 상담을 하면서 의학적으로 조력자살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의사조력자살을 시행할 날짜를 잠정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이후 추가면담을 통해 최종 시행일을 확정하고 극약을 처방받은 후 시행 당일 다시 한 번 서류 및 최종 의사를 확인하고 환자가 직접 투약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사망이 확인되면 법의학자 등의 검사를 통해 법률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장례절차를 진행한다.

29) Schweizerische Akademie der Medizinischen Wissenschaften, Umgang mit Sterben und Tod, 2019, p. 26~27(<https://www.samw.ch/de/Publikationen/Richtlinien.html>).

스위스는 연간 사망자가 76,000여 명인데 이 중 자살자는 1,000여 명이다(2020년 기준). 조력자살의 비율은 1.5% 내외이다. 자살률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의사조력자살도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흔히 발생한다(인구 10만명 당 16명). 조력자살의 추세를 살펴보면 2003년 187명이었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35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965명에 이르렀다.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이다가 2020년 현재 1,251명에 이르고 있다.<sup>30)31)</sup> 의사조력자살을 택하는 환자들의 질병은 암이 대다수이며 퇴행성질환과 심혈관질환들을 앓고 있었다. 스위스는 자살률은 감소하는 반면 의사조력자살률은 늘어나고 있다.

벨기에는 2002년 안락사법(Belgian Act on Euthanasia of 2002)을 제정하여, 자발적 안락사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명시적인 요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의해 환자의 삶을 의도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sup>32)</sup> 의사조력자살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락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sup>33)</sup> 안락사법에 따르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거나 난치성 장애로 인해 완화될 수 없고 의학적으로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의 상태에 있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숙고를 통해 반복적이며 외부압력 없는 요청을 서면으로 할 경우, 의사는 그러한 환자가 안락사 요청 당시 성년이거나 완전 자립 청소년(emancipated minor)으로 법적으로 판단능력이 있다면 1개월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다.<sup>34)</sup>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2014년 개정법은 요청권자를 미성년자로 확대하였다.<sup>35)</sup>

네덜란드는 사실 유럽에서 첫 번째로 안락사 및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국가이다. 조력자살법은 고령화 사회의 영향 속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형성된 높은 신뢰라는 사회적

30) 스위스 연방통계청 자료이다(<https://www.bfs.admin.ch/bfs/de/home/statistiken/gesundheit/gesundheitszustand/sterblichkeit-todesursachen/spezifische.assetdetail.23145296.html>)(2022.9.10. 접속). 2020년 1,251명 중 남성이 510명, 여성이 741명이며, 65세 이상이 1,151명에 이른다.

31) 이 기간 동안 자살자 수는 1995년 1,419명, 2003년 1,28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 다시 1,004명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 1,071명, 2020년 972명으로 감소하고 있다(<https://www.bfs.admin.ch/bfs/de/home/statistiken/gesundheit/gesundheitszustand/psychische.assetdetail.23145272.html>)(2022.9.9. 접속).

32) The Belgian Act on Euthanasia of 2002 Section 2. 법령은 영역본이다.

33) 김선택,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 세계적 동향”,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2018, 55면.

34) Section 3(1)~(4).

35) 미성년자가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으며, 완화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의 상태에 있고, 단기간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Section 3(1)].

바탕에 기초해, 1970년대부터 안락사의 불법성을 부정해 오던 판례를 대폭 수용하여 그 요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sup>36)</sup> 2001년 4월 제정된 생명종결 및 조력자살법(wet toetsing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은 2002년 4월부터 발효되었는데, 의사가 적극적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형사소추를 면제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미성년자, 신생아는 물론 치매환자에게도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어<sup>37)</sup> 그 허용범위가 매우 넓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동법에 따른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의 시행이 아닌 경우, 즉 원칙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하거나 또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293조(촉탁살인) 또는 제294조(자살관여)에 의하여 범죄로 처벌된다. 위 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이 합법적이라고 판단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sup>38)</sup> 첫째 의사는 환자의 요청이 자발적이고 신중하게 숙고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신하여야 한다. 둘째 의사는 환자의 고통이 호전의 가망성이 없이 인내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하여야 한다. 셋째 환자에게 그의 건강상태와 예후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넷째 의사와 환자는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어떠한 다른 합리적인 대안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야 한다. 다섯째 의사는 최소한 한 명의 다른 의사와 상의하여야 하는데, 그 의사는 환자를 대면하여야 하고 적절한 처치기준, 즉 위 4개의 항목의 이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섯째 환자의 생명을 종결하거나 환자의 자살에 조력을 제공함에 있어 의사는 의학적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시행하여야 한다.

조력자살을 시행한 의사는 장례법(The Burial and Cremation Act)에 따라 지방검시관(coroner)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보고를 받은 지역심사위원회(regional committee)는 요건준수 여부를 평가한다.<sup>39)</sup> 환자에게는 안락사에 대한 절대적 권리가 없으므로 어떠한 의사도 적극적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의 요청을 승인할 의무는 없다.<sup>40)</sup> 미성년자도

36) 문성채, “연명중단에 관한 관련법 제정에서의 주요내용과 방향성을 위한 소고 - 네덜란드 연명중단 및 자살방조를 위한 심사법 의 내용을 중심으로 -”, 법조 통권 제641호, 2010, 171면 이하.

37) [https://www.government.nl/topics/euthanasia-and-newborn-infants\(2022.9.9. 접속\)](https://www.government.nl/topics/euthanasia-and-newborn-infants(2022.9.9. 접속)).

38) Termination of Life on Request and Assisted Suicide Act(Euthanasia Code 2018)(<https://www.euthanasiacommissie.nl/uitspraken/brochures/brochures/euthanasiacode/2018/euthanasia-code-2018>) Section 2 (1). 법령은 영역본이다.

39) Section 8.

12세부터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16세까지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요구된다.<sup>41)</sup>

네델란드는 비교적 일찍부터 완화의료가 시행되어 왔으며 판례에 의해 제한적이지만 안락사가 허용되어 왔고 장례법(The Burial and Cremation Act) 등을 통해 안락사의 시행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sup>42)</sup> 생명종결 및 조력자살법의 입법이 비교적 저항 없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2. 미국

미국의 경우 이미 여러 주에서 의사조력자살법이 입법되어 시행 중에 있다. 이 중 오레곤 주가 가장 빨리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sup>43)</sup>을 입법화했는데 그 시점은 무려 1997년이었다. 이후 2008년의 워싱턴 주(존엄사법: Death with Dignity Act)를 시작으로 버몬트 주(환자선택과 생명종결 통제법: Patient Choice and Control at the End of Life Act), 캘리포니아 주와 콜로라도 주(생명종결 선택법: End of Life Option Act), 하와이 주(돌봄과 선택법: Our Care, Our Choice Act), 메인 주(존엄사법: Death with Dignity Act), 뉴저지 주(영구질환자 조력사망법: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Act)에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외에도 2021년 뉴멕시코 주(Elizabeth Whitefield End of Life Options Act) 등도 입법화에 이르렀다.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미국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사망할 권리를 생명종결의 선택 내지 통제에 대한 자기결정으로 이해하는 주가 다수이며, 오레곤이나 워싱턴처럼 주민투표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입법화된 주도 있으나 버몬트를 포함한 다수의 주는 의회입법형태로 법률이 제정되었다. 물론 몬타나 주처럼 의회입법이 실패하고 주 대법원의 판결<sup>44)</sup>에 의해 의사조력자살이 허용된 경우도 있다.

40) Adam McCann, Assisted Dying in Europe: A comparative law and governance of four national and two supranational systems, PhD thesis, University of Groningen(2016), p. 76

41) Section 2(2)-(4).

42) 안락사 허용에 관한 법원의 판례와 장례법에 대하여는 문성제, 앞의 논문, 172면 이하 참조.

43) Chapter 127.800-995(<https://www.oregon.gov/oha/PH/PROVIDERPARTNERRESOURCES/EVALUATIONRESEARCH/DEATHWITHDIGNITYACT/Pages/ors.aspx>).

44) Baxter, et al., v. Montana, et al., MT DA 09-0051, 2009 MT 449.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명치료거부권과 의사조력자살권을 구분하고 있으나, 존엄사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2006년 연방법무부장관이 조력자살을 막기 위해 오레곤 주의 의사가 말기환자에게 독극물을 처방하는 것은 정당한 치료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약물규제법(Controlled Substances Act)의 해석규칙을 제정한 처분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sup>45)</sup>

오레곤 주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환자의 자살에 조력한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오레곤 주의 존엄사법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sup>46)</sup> 오레곤 주의 거주자로 18세 이상의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는 그의 상태가 주치의와 상담의인 2명의 의사들의 진단에 의해 6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질병의 말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 조력자살에 대한 자발적 의사표시를 밝히고 인도적이고 존엄한 방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극약투약에 대한 서면요청을 의사에게 할 수 있다. 이후 환자가 의사로부터 극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에게 2차에 걸쳐 의사조력자살을 구두로 신청하고 나서야 서면으로 극약처방을 신청할 수 있으며, 2명의 증인의 입회하에 환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신청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처럼 문서로 된 약물요청서가 제출된 후 48시간이 경과되어야 극약처방이 이뤄질 수 있다. 처방 담당의사와 상담의사는 진단과 예후, 의사결정능력을 확인해야 하고, 2명 중 1명이라도 환자가 정신질환이나 심리적 장애,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면 반드시 환자의 심리상담을 의뢰하여야 하며, 심리상담을 통해 환자가 정신질환이나 심리적인 장애, 우울증을 겪고 있지 않다는 진단이 있어야 한다. 극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간병, 호스피스케어, 통증완화 등 다른 대체 수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는 의사에게 극약을 처방해 달라는 요청을 언제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철회할 수 있고,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고는 극약을 처방할 수 없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의사의 일체의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127.880 §3.14.).

45) Gonzales v. Oregon 546 U.S. 243.

46) Death with Dignity Act Chapter 127.805~995. 원문은 <https://www.oregon.gov/oha/PH/PROVIDERPARTNERRESOURCES/EVALUATIONRESEARCH/DEATHWITHDIGNITYACT/Pages/ors.aspx>. 참조(2022.9.7. 접속)

### 3. 기타

독일은 조력자살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처벌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17조<sup>47)</sup>에 대해 2020년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고 무효로 하였다.<sup>48)</sup> 제217조는 종래 공범종속성의 원칙에 따라 자살방조 처벌 규정이 없던 현실에서 처벌될 수 있는 자살방조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된 것이었다.<sup>49)</sup> 독일인들이 스위스의 DIGNITAS나 EXIT와 같은 비영리조력자살단체에 찾아가 의사조력자살을 감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는데, 연방헌법재판소는 본인의 생명을 종결하는 행위는 자율성에 기초한 자기결정 행위로서 자기결정권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생명을 종결할 자유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3자의 도움을 받을 자유가 포함되므로 자살에 조력하는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판단하였다.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적 인격권(Das 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은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는데, 자신의 결정에 의해 죽을 권리는 자신의 생명을 종결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며 자신의 삶을 종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결정은 자율적 자기결정행위(autonome Selbstbestimmung)로서 그 자체로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50)</sup> 그런데 해당 조항의 경우 개인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유를 행사할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조력자살의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47) 자살의 상업적 촉진 (1) 타인의 자살을 조장할 의도로 상업적 방법으로 그 기회를 제공, 마련 또는 알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공범으로서 본인이 상업적으로 행하지 않고 제1항의 타인과 친척이거나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17조는 자살과 자살에 대한 처벌의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살의 상업적 제안이 자기결정과 삶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개입하는 것이었다(Deutscher Bundestag, BT Drucks 18/5373, 2015, S. 2, 11 이하, 17 참조).

48) BVerfG, 2020. 2. 26. 2 BvR 2347/15, 2 BvR 651/16, 2 BvR 1261/16, 2 BvR 1593/16, 2 BvR 2354/16, 2 BvR 2527/16

49) 형법 제217조는 2015년 12월 10일부터 자살의 상업적 촉진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법률(BGBI I p. 2177)에 의해 2015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독일 형법 제217조의 도입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는 C. Roxin, “Die geschäftsmäßige Förderung einer Selbsttötung als Straftatbestand und der Vorschlag einer Alternative”, NStZ, 2016, S. 185 이하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50) BVerfG *supra* note 48)

#### 4. 시사점

우리 법원은 여전히 자살방조죄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sup>51)</sup> 그러나 의사조력자살의 문제는 생명보호에 초점이 맞춰지던 기존의 사례들과는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지만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고통제거와 존엄한 죽음을 위해 조력이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형법적 쟁점에 그치지 않는다.<sup>52)</sup> “의사조력자살은 죽을 권리로서 허용되는 행위인가”라는 질문은 어느 학문 분야에서도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

여기서 우리보다 먼저 의사조력자살을 입법화한 국가들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스위스의 안락사 입법과정을 보면 역사문화적 전통, 국민의식,<sup>53)</sup> 국민적 성향, 의료시스템 또한 매우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스위스는 19세기 후반 이후 1942년 조력자살을 제한하려는 형법 제115조를 제정하기 전까지 관습적으로 의사조력자살을 처벌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상속을 노린 이기적 동기의 존속살해 등이 횡행하자 규율이 필요했던 것이며 이후 의사조력자살을 법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위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의사조력자살의 부작용도 실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스위스의 의사조력자살단체 엑시트는 초기 회원가입 대상이 말기환자였으나 최근에는 치매는 물론<sup>54)</sup>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55)</sup> 벨기에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의사조력자살 장면을 목격한 환자의 가족들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겪는 것이다.

그리고 조력자살단체를 이용할 경우에도 상당한 경제적 비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sup>56)</sup>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존엄사의 요건이 충족됨에도 경제

51)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노3591 판결 등 참조.

52) 영국은 2015년까지 4차례나 발의되었지만 법조계가 아닌 영국성공회 등 ‘종교계’의 반발로 의사조력자살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53) 최근 일본은 ‘내가 죽을 자유’가 보장되기보다는 ‘당신이 죽을 의무’가 됨을 경계한다고 한다.

54) <https://exit.ch/freitodbegleitung/haeufige-fragen/#c542>(2022.9.5. 접속)

55) 이는 물론 2006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결과이다. 물론 엑시트 공식 홈페이지는 우울증이 조력자살의 대상이 아니라고 게시하고 있으나, 장기간 앓아 온 심각한 정신질환, 치매 등의 경우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엄격한 요건하에 실시될 수 있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https://exit.ch/freitodbegleitung/voraussetzungen-einer-freitodbegleitung/#c403>)(2022.9.9. 접속).

적 요건에 따라 조력자살의 실행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무자력자의 사회적 타살이 강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조력자살 실시국을 보면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의사조력자살이 사회적으로 ‘정상화’되는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는 비판<sup>57)</sup>에 직면하는 것이다.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의사조력자살을 시행하는데 의사조력자살 건수는 증가하면서 자살 건수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의사조력자살의 근본적 의미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스위스의 예를 보면 그러나 이러한 의심은 기우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 오레곤 주의 예를 보더라도 2/3 가까이 암환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백인이며, 의료 보험 등에 가입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진입한 환자들이 주 대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빈곤층, 흑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오남용될 것이라는 우려라든가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sup>58)</sup>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59)</sup>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의사조력자살이 입법화될 경우에도 그 범위와 요건, 실행방법, 절차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알 수 있다. 의사조력자살은 존엄사의 관점에서 다루질 수 있지만 형법적 접근 이전에 우리 사회의 사회정책문제의 하나로서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6) 디그니타스를 이용할 경우 가입비 CHF 200, 행정처리 비용 CHF 4,000, 의사 진료관련 행정비용 CHF 1,000, 장례비용 CHF 2,500 등 대략 CHF 10,500, 한화 1,4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57) BT Drucks 18/5373, p. 2.

58) 비탈길 논증이란 사소한 사항을 허용했는데 연쇄적인 과정 내지 반응을 겪으면서 매우 나쁜 결과에 이름을 의미한다. 따라서 애초에 사소한 사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59) 김선택, 앞의 논문, 50면. 2021년 최신 통계는 Oregon Health Authority, Public Health Division,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2021 Data Summary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oregon.gov/oha/PH/PROVIDERPARTNERRESOURCES/EVALUATIONRESEARCH/DEATHWITHDIGNITYACT/Documents/year24.pdf>).

## V. 의사조력자살 가담행위의 형법적 정당화 가능성 검토

### 1. 기존의 논의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논의는 헌법학과 의료계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다양한 반응이 존재한다. 먼저 말기환자나 식물상태에서의 연명의료 중단결정이 가능하도록 한 후에 의사조력자살을 논의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신중론이 있는가 하면, 의사조력존엄사로 위장된 의사조력자살이라는 종교계와 윤리학계의 비판도 제기된다.

환자의 자살에 관여하는 경우, 형법적으로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형법 제252조 제1항)와 자살방조죄(동조 제2항)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환자 본인이 의사의 약물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복용하고 주도적으로 죽음을 실행하는 때에는 의사에게 자살고사·방조죄가 성립하고, 말기환자로부터 유효한 의사결정에 따라 촉탁을 받은 의료진이 연명의료중단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경우에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다만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행위인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가 있다.<sup>60)</sup>

범행지배 내지 행위지배의 개념에 비추면다면<sup>61)</sup> 의사조력자살의 경우 환자 스스로 자살의 결정적 과정, 불가역적인 생명중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가능성은 희박하며, 환자의 존엄사 내지 자살을 돕는 의사의 경우에도 자살의 방조를 넘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의사조력자살의 경우 약물을 처방하거나 준비해 준 의료인의 자살방조죄의 처벌이 핵심 죄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헌법학계에는 대체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견해들이 주장된다. 먼저 생명권의 주체에게는 죽을 권리가 있으며 인간이 자기 생명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이기

60) 이인영, “미국의 의사자살방조에 관한 법리 논쟁과 입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3권 제1호, 2022, 140면.

61) 종래 정범성과 공범성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과 자살방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범행지배설의 주관적 요소는 내적 기준(자살구조가 자살자에 의해 설계되었는가)으로 객관적 요소는 외적 기준(구체적 행위를 누가 실행하고 있는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견해로는 정배근, “자기책임원칙을 통한 자살참가자의 가벌성 판단”, 중앙법학 제20집 제1호, 2018, 164면.

때문에 당연히 향유하는 권리로써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존엄한 방법으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sup>62)</sup>가 있다. 이 견해는 의사의 조력을 받아 죽을 권리 또한 헌법상 권리로 자기운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하나라고 본다.<sup>63)</sup> 유사하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회복될 가망이 없는 말기질환자의 생명의 존엄을 존중한다는 점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인한 요청이라는 관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된다.<sup>64)</sup>

이러한 헌법학계의 논의에 비하면 형법학계는 아직 논의 초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과거 의사조력자살 개념 등장 이전에 존엄사 내지 연명의료중단에 대해 제시된 견해들이 주를 이룬다. 우선 자살방조행위의 처벌 자체에 의문을 표하는 견해가 있다. 불치의 질병으로 임종에 직면한 자에 대한 자살방조는 환자가 편안히 자살하도록 단순히 방조하는 것에 불과하고 자살자의 자살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가피한 사정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경우 자살자가 자살에 대한 변별력이 성숙한 단계에서 자살을 의욕하고 실행하였다면 그 자살방조행위, 방조적 존엄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sup>65)</sup>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더해 자살방조행위 자체의 처벌은 범죄로서 구성요건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형벌권의 남용이라는 견해<sup>66)</sup>도 제시된 바 있다. 자살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방조행위는 자살에 영향력에 미칠 수 없는 행위이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sup>67)</sup> 이와 달리 대부분의 견해들은 연명의료중단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sup>68)</sup>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최근 들어 이러한 견해들과 달리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성을 정면에서 다룬 주장들이 형법학계에서도 일부 보인다. 이기헌교수는 연명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은 행위태양은

62) 문제완, 앞의 논문, 5면 이하.

63) 문제완, 앞의 논문, 21-22면.

64) 성경숙,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2019, 234면.

65) 허일태, 안락사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28면.

66) 송승현, “자살교사 방조죄의 인정여부”,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2015, 354면 이하.

67) 송승현, 앞의 논문, 356면.

68) 김성규, 앞의 논문, 4면; 조한상/이주희, “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헌법학과 형법학의 융합과 그 파급효과”, 법학연구 제49집, 2013, 78면.

다르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 평온한 죽음을 맞을 기회를 부여한다는 본질에는 차이가 없으며,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 간병살인 내지 살인촉탁 등 더 큰 비극을 초래하는 결과를 고려한다면 의사조력자살의 금지는 무책임하고 비인도적 처사라고 한다.<sup>69)</sup> 이인영 교수는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를 전제로, 우선적으로 의사의 행위에 대한 규범적 보호수단의 논의가 필요한데 의사가 환자의 요구에 협력해 환자의 죽음을 예견하는 동안 의사는 환자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 선택을 거부하는 것은 환자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70)</sup>

생각건대 생명의 연장과 강화의 방향으로 동기화(動機化)된 섭리를 거슬러 인간이 스스로 생명단축 결정을 내리고 자연적인 사기를 앞당기는 자기결정의 문제는, 인간 실존 본연의 문제로서 법학과 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윤리, 철학과도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의사조력존엄사’로 위장된 ‘의사조력자살’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그 우려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으며, 방조적 존엄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도 간병살인·촉탁살인과 같은 심각한 병리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귀기울일 필요가 있는 주장이다.

기존 논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헌법학계의 주류적 견해와 같이 의사조력자살 ‘자체’의 가벌성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적으로는 방조자인 의사의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하므로 추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회복될 가망이 없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관점에서 의사조력자살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가와 그에 따라 생명단축에 동참한 의사의 행위 역시 가벌성이 부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 2. 시론적 검토

상징형법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구성요건이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살방조행위의 처벌은 부정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안규백의원의 입법안처럼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안 형식으로 의사조력자살이 입법화될 경우<sup>71)</sup> ‘법령에 의한 행위’로 정당화될

69) 이기현, 앞의 논문, 218면 이하.

70) 이인영, 앞의 논문, 145면.

7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86호).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 제252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안 제20조의7). 이에 대한 검토는 다른 글로 상론하기로 한다.

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해법은 이론적으로 매우 간명하다.

그러나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입법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다. 자살방조행위의 형사책임 면제에 대해서는 생명보호와 인간 존엄성이라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관점에서 형법이론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사의 조력자살 가담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실존적 존재인 인간에게 즉각적인 사기의 단축을 가져오는 가장 중대한 생명권의 문제로, 연명의료 중단보다 더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자살방조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신설만으로 인간의 생애 말 결정에 대한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자살관여행위를 처벌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대체로 그 이유는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살과는 성질을 달리하며, 타인의 생명은 그 주체의 생존의사와 무관하게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sup>72)</sup> 국가와 제3자의 생명보호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sup>73)</sup> 그러나 자살방조행위가 자살방조를 위장한 살인(일반살인)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이해관계가 별로 없다고 보여진다면 무조건 가벌적으로 보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74)</sup>

이하에서는 이 같은 처벌의 필요성에 비추어 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의 행위가 자기결정권, 평등권, 절대적 생명보호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논증한다.

## 가. 자기결정권의 관점

자살방조 책임의 논의에서 핵심은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에 따른 죽음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인간이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결정권이라고 본다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행위 역시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며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의사조력자살도 허용된다는 주장<sup>75)</sup>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며,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일반적 인

72)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35면.

73) 이인영, 앞의 논문, 141면.

74) 허일태, 앞의 보고서, 128면.

75) 예컨대 성경숙, 앞의 논문, 227면. 이 견해는 의사조력자살도 자살의 일종이라는 점을 간과하여 동일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 맹점이 있다.

격권이 보장된다.<sup>76)</sup> 일반적 인격권은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게 되며, 모든 국민은 이러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자율적으로 형성해나갈 수 있다.<sup>77)</sup>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생명단축에 관한 자기결정의 가장 ‘낮은’ 단계인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는 의학적인 의미에서 치료의 목적을 상실한 신체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자연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죽음의 과정에서의 종기를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비록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생명단축에 관한 자기결정’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은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 아니며 오히려 인위적인 신체침해행위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명을 자연적인 상태에 맡기고자 하는 행동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는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보았다.<sup>78)</sup>

이에 동조해 자기결정권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여 행사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자살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견해<sup>79)</sup>도 있다. 연명의료의 거부(중단)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으로서 보장되지만, 자기결정권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여 행사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의사조력자살과 같은 자살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본다.<sup>80)</sup>

임종단계에서 소극적으로 연명의료의 중단을 결정하는 것과 의사조력자살을 결정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연명의료 중단은 사망에 이르는 자연적 상태 내지 과정이 진행되도록 놔둔 부작위에 불과하지만 극약을 처방해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살에 개입하는 작위로서 비도덕성이 훨씬 크다는 도덕적 논변<sup>81)</sup>의 허들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다. 의사조력자살을 자살로 본다면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의사조력자살을 금지하는 형법 제217조

76) 헌재 2015.2.26. 2009헌바17 결정; 헌재 2012.8.23. 2010헌바402 결정 등.

77) 헌재 1997.3.27. 95헌가14 결정.

78) 헌재 2009. 11. 26. 2008헌마385 결정.

79) 김은철/김태일,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1호, 2013, 103면.

80) 이인영, 앞의 논문, 143면. 다만 이인영교수는 말기환자인 경우 의사조력자살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상황·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등에 따라 달리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이인영, 앞의 논문, 144면).

81) 예컨대 Cruzan v. Director, Missouri Department of Health, 497 U.S. 261(1990).

에 대해 위험결정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종결할 자유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제3자의 도움을 받을 자유가 포함되므로 자살에 조력하는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 인격권(Das 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은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는데, 자신의 결정에 의해 죽을 권리는 자신의 생명을 종결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며 자신의 삶을 종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결정은 자율적 자기결정행위(autonome Selbstbestimmung)로 그 자체로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생명종결 결정 그 자체가 국가와 사회에 의해 존중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다른 근거나 정당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로 한 결정이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자 인간의 정체성과 개성(Individualität)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82)</sup>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생명의 모든 단계에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살관여를 범죄화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과 관련해 타인에 의한 외부결정의 위험을 정당화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부에서의 위험이 없다면 타인의 조력에 의해 자살하는 것도 규범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 환자의 의사가 의료인의 치료의무보다 우선시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도덕적 판단과 실천이성을 가진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은 의료기술로 생명을 무의미하게 연장하거나 생명의 지속이 존재의 의미 없이 고통의 연장에 불과한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형법상 불법도 상대적인 것으로 고정불변이 아니다. 법의무에 반하는 자율성의 실행이 오로지 자기관계, 자기법익과의 관계에서 규정되고 형상화되는 한 형법상의 불법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sup>83)</sup> 더욱이 자살의 불법성에 대한 역사적 변천 과정<sup>84)</sup>을 본다면 자살관여행위의 불법성도 변화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수호를 위해 행해져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82) BVerfG *supra* note 48)

83) 손미숙,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형사정책 제28권 제1호, 2016, 50면 이하. 손미숙박사는 칸트식의 표현으로는 내적인 법의무에 반하는 한 형법상 불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임종기 환자의 의사에 따라 의사가 치료 혹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순전히 자연스럽게 죽어가도록 하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견해는 독일의 M. Köhler의 자기결정권 이론(“Das Rechtspflicht gegen sich selbst”, *Jahrbuch für Recht und Ethik* Bd. 14, 2006, S. 425ff)에 영향을 받은 견해로 보인다.

84)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자살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으나 중세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자살이 범죄로 취급되었으나, 19세기 이후 각국의 자살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된다면 그에 대한 조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형법의 불법은 결과의 불법성은 물론 행위의 불법성 또한 인정되어야 하며, 불법의 판단은 행위의 불법성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sup>85)</sup> 조력자살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한다면 이에 관여한 의사에게도 형벌이라는 수단이 적절한 대책이 아닐 수 있다. 자살방조죄의 존재 목적이 절대적 생명보호를 강제하여 결과적으로 자살을 희망하는 사람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형법은 그것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sup>86)</sup>

형법의 임무는 윤리의 최대개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며, 형법의 윤리성은 생명의 영역에 있어 자유의 보장과 생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후퇴될 수 있다. 자살관여 행위의 불법성도 각국의 사정과 문화, 생사관 등이 반영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sup>87)</sup> 어느 정도의 관여행위까지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도 입법적으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라고 하겠다.<sup>88)</sup>

우리 헌법재판소의 논리<sup>89)</sup>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과 달리 의사조력자살은 ‘자살’이기 때문에 헌법상 권리로 인정할 수 없고 의사의 조력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 쉽다. 그러나 의사조력자살은 생명의 말기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가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생명단축의 결정을 한 것이고, 여기에는 의료인의 의학 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자살과는 구별함이 타당하다. 즉 의사조력자살은 통상적 의미의 자살이 아니며 자신의 생명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판시하였듯이 자신의 생명을 종결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며 자신의 삶을 종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결

85)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

86) Stellungnahme deutscher Strafrechtslehrerinnen und Strafrechtslehrer zur geplanten Ausweitung der Strafbarkeit der Sterbehilfe III.g([https://www.jura.uni-wuerzburg.de/fileadmin/02150100/Daten\\_fuer\\_News/Resolution\\_zur\\_Sterbehilfe\\_21\\_7.pdf](https://www.jura.uni-wuerzburg.de/fileadmin/02150100/Daten_fuer_News/Resolution_zur_Sterbehilfe_21_7.pdf))(2022.10.1. 접속); C. Roxin, 앞의 논문, S. 188f.

87)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등은 자살관여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스위스, 독일 등은 상업적 자살방조만을 처벌하고 있다(이러한 형법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었음은 전술하였다).

88) 자살방조행위에 대한 ‘전면적 불처벌의 방식’ - ‘영업적 또는 상업적으로 자살방조행위에 한해서 처벌’하는 중간적 방식 - 자살방조행위에 대한 ‘전면적 처벌’의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이 될 것이다.

89) 헌재 1997.3.27. 95헌가14 결정.

정은 자율적 자기결정행위로서 그 자체로 국가와 사회로부터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국가가 억지할 수 없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자 인간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sup>90)</sup> 그렇다면 그 방법으로서 의사의 조력을 받든 일반인의 조력을 받든 그 실행방법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조력자의 행위가 자살방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법익의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위법한 피해나 타인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없기 때문이다.<sup>91)</sup>

자신의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생명의 종기를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결정이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그러한 과정에 도움을 준 의사를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sup>92)</sup> 이 부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자기결정권의 핵심 내지 본질이 침해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사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형법의 최후수단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sup>93)</sup> 극단적으로 불치의 질환으로 말기에 있는 환자가 의료인의 도움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 못하게 한다면 역설적이게도 비참한 자살로 생을 마감하도록 내모는 상황의 반복도 초래될 수 있다.<sup>94)</sup> 조력자살의 남용의 위험성 등 부작용의 문제는 형사입법이 아니라 사회정책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의사조력자살을 결정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이러한 내용과 범위를 가지고 있다면 환자의 생명종결 결정에 조력한 의사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조력행위는 단순한 자살의 방조와는 성질을 달리하며 예외적 상황에서 생명의 주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특수한 의료행위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법상의 불법도 전체 법질서의 관점, 특히 헌법적 가치질서의 존중하에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의사의 조력행위를 헌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형법상 의미 있는 위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결과 자살방조의 불법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의사의 행위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자살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

90) BVerfG *supra* note 48)

91) C. Roxin, 앞의 글, S. 188.

92) Baxter, et al., v. Montana, et al., MT DA 09-0051, 2009 MT 449 판결도 이 점을 지적한다.

93) Stellungnahme deutscher Strafrechtslehrerinnen und Strafrechtslehrer의 앞의 정명서, III. d.

94) 같은 취지로 이기현, 앞의 논문, 218면 이하.

켜주는 최후의 행위로 불법상쇄적 기능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sup>95)</sup> 의사조력자살은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환자가 오히려 남은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자살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다.<sup>96)</sup> 이는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평등의 관점

모든 국민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인 행복추구권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내용으로 한다.<sup>97)</sup> 그렇다면 자기운명결정권의 행사, 생명의 단축에 대한 자기결정도 행복추구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행복추구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sup>98)</sup>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연명의료 중단을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국가가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여기서 연명의료 중단은 사망에 이르는 자연적 과정 내지 경과가 진행되도록 놔둔 부작위에 불과하지만 극약을 처방해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살에 개입하는 작위로서 비도덕성이 훨씬 크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말기 내지 임종기의 환자를 전제로 하지 않을 때에 도덕적 비난의 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며, 말기 내지 임종기의 환자가 자신의 생명종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이 그의 존엄하고 고통없는 죽음을 위한 자유로운 결정이라면 소극적·부작위적 방법이든 적극적·작위적 방법이든 그 방법의 차이에 대해 규범적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95)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이 같이 의사의 조력을 받아 죽을 권리까지 포함된다면 이러한 상황에 조력하는 의사는 자살방조의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96) 디그니타스 자료에 의하면 1998~2017년 동안 2,550명의 조력자살을 도왔지만 3~4만명의 자살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한다(H. Schöch, “Das Recht auf selbstbestimmtes Sterben”, GA 167, 2020, S. 4).

97) 헌재 2009. 11. 26. 2008헌마385 결정.

98) 중증장애인이거나 말기환자는 정상인과 달리 자살을 위해서는 타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므로 애초부터 이런 사람들의 합법적인 자살을 차단하는 것이 평등권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Rodriguez v. British Columbia(Attorney-General) 3 S.C.R. 519, 544(1993) 판결에서 Lamer C.J. 대법관의 반대이견].

또한 남용가능성의 방지 등 생명침해 방지를 위한 국가의 이익은 동일하나 오히려 연명치료 중단이 그 기간과 방법에 있어 의사조력자살보다 의사가 감당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sup>99)</sup> 그렇다면 연명의료의 중단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합법적으로 면제해주면서 존엄사라는 명분하에 기만적 형태로 포장된 자살이 아니라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해지는 의사조력자살도 유사한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연명의료와 말기 진정요법, 의사조력자살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고,<sup>100)</sup> 의학적 치료라는 개념도 기본적으로는 질병의 회복 가능성을 전제로 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치료 내지 호전의 가능성이 없어 인위적으로 생명의 종기를 연장시키는 의미밖에 없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여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연명의료 중단은 부작위이기 때문에 작위인 의사조력자살보다 불법하지 않다는 주장은 의사조력자살이 입법화된 여러 국가의 예에서 보듯이 과거의 낡은 유물에 대한 집착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연명의료 중단은 허용하면서 동일한 환자에게 자기결정권 행사의 정도가 강하다는 이유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sup>101)</sup>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도 *Cruzan* 사건에서 적법절차의 관점에서는 환자가 자살함에 있어 제3자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다면서도, 연명의료를 거부할 자유를 인정하고 ‘급식튜브 제거’와 같이 사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행위까지도 긍정하였다.<sup>102)</sup> 말기 환자에게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다고 하여 이들의 생명권이 일반 환자의 생명권보다 보호받을 가치가 떨어지는 것<sup>103)</sup>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점이 논증되기 전까지는 의사조력

99) *Quill v. Vacco*, 80 F. 3d 716(1996)

100) 의료계에서도 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말기 진정요법의 경우에도 생명을 단축하거나 죽음을 앞당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명의료의 중단, 말기 진정요법, 의사조력자살이 사실상 구분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Timothy Quill, Doctor, “I want to die, will you help me?”, JAMA, 1993, p.270. 엄주희/김명희,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2018, 18면에서 재인용).

101)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양자의 구별이 무의미하다는 견해로는 F. Saliger, “Sterbehilfe ohne Strafrecht? Eine Bestimmung des Anwendungsbereichs von Sterbehilfe als Grundstein für ein intradisziplinäres Sterbehilferecht”, KritV, 2001, Vol. 84, No. 4, 2001, p. 386.

102) *Cruzan v. Director, Missouri Dept. of Health*, 497 U.S. 278(1990). 다만 연방대법원은 의사조력자살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지는 않았다[(*New York State v. Quill*, 177 S. CT. 2293(1997))].

103) *Lee v. Oregon*, 891. F. Supp. 1429, 1438(1995). 이러한 주장은 자살이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는

자살이 평등보호 기반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의 조력자살을 처벌하는 형법 제78조<sup>104)</sup>에 대해 ‘타인의 자살에 조력’이라는 문구를 위헌이라 판단하면서, 개인이 자신의 인간다운 죽음의 시점을 결정할 권리가 평등권을 규정한 국민의 일반적 권리에 관한 국가기본법 제2조와 연방헌법 제7조의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을 실시한 점<sup>105)</sup>은 주목할 만하다. 환자가 처분권 내지 치료고권을 통해 의학적 생명연장 또는 생명유지조치를 거부하는 것과 제3자의 조력을 통해 삶을 종결하는 것 사이에 기본권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이다.

#### 다. 절대적 생명보호의 관점

인간의 존엄은 생명을 기초로 하므로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간 생명의 존중이라는 명제는 자살관여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일견 의사조력자살은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자살방조죄의 처벌이 개인의 생명보호청구권과 국가와 제3자의 생명보호의무를 전제로 한다는 주장<sup>106)</sup>도 실재한다.

헌법재판소도 생명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생명권의 주체라도 자신의 생명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sup>107)</sup>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생명권 못지 않게 우리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생명은 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sup>108)</sup>

점에 기초하고 있다.

104) 타인으로 하여금 자살하도록 유도하거나 타인의 자살에 조력한 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05) VfGH 11.12.2020. G139/2019-71.

106) 이인영, 앞의 논문, 141면.

107) 헌재 2009. 11. 26. 2008헌마385 결정.

이처럼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자기결정은 생명단축과 관련된 결정이므로 필연적으로 생명권 보호에 관한 헌법적 가치질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가? 생명의 절대적 보호는 법률 후견주의 (legal paternalismus)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반대편에는 개인의 자율성이 존재한다. 생명이 절대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은 결국 개인의 자율성, 자기결정권은 제한됨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상호제한적 관계이다. 이러한 기본구도 하에서 우리 형법상 생명의 절대적 보호는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최대한의 생명보호로 이해될 수 있으며, 절대적 생명보호라고 할지라도 이는 죽음을 원하지 않는 자에 대한 생명의 침해를 형법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09)</sup>

형법이 촉탁·승낙 살인죄와 자살관여죄를 두고 있지만 이는 의학적 판단이 배제된 일반인에 의한 살인 내지 자살관여행위의 위험성 때문이다. 이와 달리 정상적인 사회시스템, 즉 의료체계를 통해 시행되어 자살방조행위가 자살방조를 위장한 살인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없다면 반드시 가벌적 행위라고 단정지를 필요는 없다. 생명이 그 주체의 생존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는 그에게 인간다운 삶 무의미하지 않은 삶 고통을 대가로 가치 없는 생명의 연장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기초에서 가능할 따름이다. 의사조력자살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택권 없이 무의미한 삶의 연장을 강요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단계에서도 생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 자유지향적·자유책임적 형법의 관점에서 형법적 금지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제기될 수 있으며,<sup>110)</sup> 자살방조의 불법은 중범의 불법을 정범화한 것으로 그 불법의 경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가능한 것이다.

또한 법익의 포기가 적정절차에 의해 이뤄질 경우 형법의 개입이 포기될 수도 있다. 인간의 자기보존과 자기실현에 대한 기본의무는 고유한 자유의 현존재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자기 처분에 대한 금지와 부합하는데, 이러한 자기보존과 자기실현에 대한 기본의무는 단순한 도덕적 성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로 이해될 수 있다.<sup>111)</sup> 이

108) 헌재 2009. 11. 26. 2008헌마385 결정.

109) 같은 취지로 이기현, 앞의 논문, 218면.

110) 예컨대 무책임한 자살을 방지하려는 헌법적 목표가 형법의 확실적 금지보다는 행정적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로는 H. Schöch, 앞의 논문, S. 4.

런 맥락에서 생애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법에서 최고의 법익으로 평가되는 것이다.<sup>112)</sup> 그런데 자기유지와 실현이라는 법의무는 1차적으로는 자기관련적 명령이자 요청으로서 당연히 스스로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며 타인이나 국가가 이러한 자기보존을 후견적으로 감독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sup>113)</sup> 하지만 자기보존에 대한 이 의무가 - 법관계의 기초인 - 상호적인 승인관계의 영역에서 이에 대한 준수나 불승인이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일반적인 유효성의 관철과 관련될 때에는 법공동체인 국가가 외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형법적으로 중요한 법의무가 된다.<sup>11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승인관계에서 자기보존에 대한 의무위반이 형법상의 불법이 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에서처럼 오로지 타인 스스로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법적인 현존재를 실제로 파괴할 때에만 가능한 것일 수 있다.<sup>115)</sup>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그 주체의 의사와 관련하여 규범적 평가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타인에 의해 자신의 법적인 존재가 파괴되지 않는 한 생명권을 포함한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가부장적 보호는 정당화될 수 없다.<sup>116)</sup>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사조력자살이라는 하나의 유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친사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객체성만을 추구하는 결과일 수 있다. 자유로운 의사에 입각한 자살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과제 내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sup>117)</sup> 국가에 의한 생명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은 정신장애인처럼 자유롭고 임의적인 자기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국한되는 것이다. 형법 규범의 금지범위 또한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 생명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익으로서의 생명은 상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sup>118)</sup>

말기 내지 임종기 환자의 의사조력자살 상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가 의심

111) Köhler, 앞의 글, S. 425 이하.

112) 손미숙, 주 8)의 논문, 201면.

113) Kahlo, “Sterbehilfe und Menschenwürde”, in: FS Frisch, 735면 이하(손미숙, 주) 8)의 논문, 201면에서 재인용).

114) Kahlo, 앞의 논문, 735면(손미숙, 주 8)의 논문, 201면에서 재인용).

115) Kahlo, 앞의 논문, 735면(손미숙, 주 8)의 논문, 202면에서 재인용).

116) BVerfG *supra* note 48)

117) Berka/Binder/Kneihs, Die Grundrechte, 2019, Verlag Österreich GmbH, S. 286(VfGH 11.12.2020. G139/2019-71에서 재인용).

118) 배종대, 앞의 책, 25면.

받는 예외적·극단적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의 조력이 비록 환자의 사기를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생명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그의 의사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환자가 존엄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의 생명유지 의무가 요구되는 것은 질병의 회복 내지 관리를 통해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될 때인데, 의사조력자살과 같은 상황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유지와 연장이라는 의사의 권리의무에 우선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살의지가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것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확인된다면 입법자 또한 이 의지를 존중해야 하며, 이는 기본권 간에 형량할 문제가 아니므로<sup>119)</sup> 수범자인 의료진에게도 생명권을 존중할 의무보다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자살방조죄는 의료인에게 절대적 생명보호를 무조건적으로 강제하여 자살 희생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 3. 한계 지움: 자살방조행위의 형사면책의 기초

형법이론적으로는 위의 논거들을 통해 의사조력자살에 가담한 의료인의 방조행위는 생명단축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정의 귀결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형사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형법이론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더라도 입법의 문제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사조력자살의 입법은 신중하게 컨센서스가 형성된 이후 시행될 과제이다.<sup>120)</sup>

이 지점에서 명확히 지적할 것이 있다. 향후 의사의 자살방조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및 입법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형사법학계에서 이견 없이 소극적 안락사에 대하여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사기를 앞당기기는 하지만 ①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②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해 ③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거나 치료를 중지하였기 때문에 인간다운 죽

119) VfGH 11.12.2020. G139/2019-71.

120) 캘리포니아주나 영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은 물론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공감대 없이는 입법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음에 대한 권리로서 정당화시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의사조력자살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말기환자부터 단순히 우울증 환자가 실시하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 의사조력자살은 소극적 안락사와 대비되는 측면<sup>121)</sup>이 존재하므로, 목적과 시기,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정당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① 의사조력사가 허용될 수 있는 대상은 참기 힘든 고통을 지닌 여명 6개월 이내의 말기환자로서 죽음에 직면해있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예컨대 정신질환의 경우 허용될 수 없다.<sup>122)</sup> 마찬가지로 죽음에 직면해 있지는 않으나 근무력증 등 중증질환의 경우에도 우선은 사회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정도 단계까지는 간병시스템, 의료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 내지 책임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② 다음으로 이러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외부의 강요 없는 명시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에 기해 의사조력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의사는 증인에 의해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이러한 의사조력사 신청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어야 하며 의료진은 숙고기간 등을 통해 그러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의사조력사의 이행 전에 의료진은 반드시 환자의 증상과 예후, 완화의료를 포함한 다른 의료적 대안에 대해 충실히 설명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환자도 이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④ 환자의 신청에 따른 조력사의 결정과 이행은 중앙 의사조력사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그 이행은 의료체계 내에서 최종적으로 환자의 인과적 생명단축행위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⑤ 의사조력사의 신청과 이행의 전 과정은 문서화되어 기록으로 남겨져야 하며, 이행 이후에는 그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의사조력사심사위원회로 그 결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될 때에만 의사의 형사책임은 면제될 수 있을 것이다.

121) 우선 목적의 경우 의사조력자살도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 위한 것이 다수일 수 있으나 우울증이 극심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같이 반드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실시상황의 대다수의 경우 죽음에 직면한 환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실시 방법의 경우 생명유지장치의 제거나 치료의 중지를 넘어 의료인이 제공한 극약을 환자가 복용한다.

122) 정신질환의 경계 설정은 매우 난해한 문제로서 다수의 의사가 참여하더라도 사기 압박과 달리 주관적 고통을 객관화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 VI. 결론

서두에서 밝혔듯이 최소 3명의 한국인이 스위스에서 조력자살단체의 도움을 받아 생명중단결정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 동행한 조력자가 있는 상황에서 형법학계에서도 이제는 죽음에 대한 권리, 의사조력자살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단계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의사조력자살이 도입될 경우 우려되는 상황은 이른바 생존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도태시키는 것이 정당화 내지 합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생명권을 지닌 본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더욱이 생명을 스스로 단축하는 결정이 단순히 비구조적 요인, 예컨대 경제적 곤궁 등의 이유 때문이라면 쉽게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사회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국가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가 된다. 의사조력자살이 ‘유전장수, 무전자살’, ‘사회적 타살의 강요’라는 새로운 비극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생명의 모든 단계에서 자율적 자기결정행위로서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비록 생명단축이 있더라도 환자가 생명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내린 합리적 의사결정을 조력하기 위해 의사가 개입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자살방조와 달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정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의 험난한 입법화 과정을 겪었다. 필자가 위에서 제시한 의사조력자살의 정당화가 다소 급진적인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형법학계에서 향후 다양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다면<sup>123)</sup> 충분히 의미를 가진 주장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123) 슈펜델의 “학문적 인식은 논쟁을 통해 촉진되며 자신의 견해는 반대 의견의 표명에 의해 자극받을 수 있다”는 표현(Spendel, “Gegen den Verteidigungswillen als Notwehnerfordernis, Bockelmann-FS, 1979, S. 246)을 빌리고 싶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성돈, 형법각론(제6판), SKKUP, 2020
- 김일수/서보화, 형법각론(제8판), 2016
-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 배종대, 형법각론(제10전정판), 홍문사, 2018
- 신동운, 형법각론(제2판), 법문사, 2018
- 유영규/임주형/이성원/신용아/이혜리,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 2020, 북콤마
-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제12판), 박영사, 2021
- 임 우, 형법각론(제9정판), 법문사, 2018

### 논문

- 김선택,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 세계적 동향”,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2018
- 김성규, ““업무로서 행해지는 자살방조 의 범죄화”, 강원법학 제51권, 2017
- 김은철/김태일,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1호, 2013
- 문성채, “연명중단에 관한 관련법 제정에서의 주요내용과 방향성을 위한 소고 - 네덜란드 연명중단 및 자살방조를 위한 심사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법조 통권 제641호, 2010
- 문재완,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2020
- 성경숙,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2019
- 손미숙, “소극적 안락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제42권 제1호, 2014
- \_\_\_\_\_,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형사정책 제28권 제1호, 2016,
- 송승현, “자살교사 방조죄의 인정여부”,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2015
- 임주희,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헌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2013

- 엄주희/김명희,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2018
- 이기현,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2014
- 이인영, “미국의 의사자살방조에 관한 법리 논쟁과 입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3권 제1호, 2022
- 이승호, “안락사 논의와 연명의료 중단 법률의 주요쟁점에 관한 소고”, 일감법학 제35호, 2016
- 조한상/이주희, “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 - 헌법학과 형법학의 융합과 그 파급효”, 법학연구 제49집, 2013
- 정배근, “자기책임원칙을 통한 자살참가자의 가벌성 판단”, 중앙법학 제20집 제1호, 2018
- 한상수,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2011
- 황도수, “죽을 권리와 죽일 권능 용어의 정리를 제안하며”, 세계헌법연구 제19권 제2호, 2013
- Young Ho Yun/Jin-Ah Sim/Yeani Choi/Hyejeong Yoon, “Attitudes toward the Legalization of Euthanasia or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South Korea: A Cross-Sectional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IJERPH), 2022, 19(9)
- Roxin, Claus, “Die geschäftsmäßige Förderung einer Selbsttötung als Straftatbestand und der Vorschlag einer Alternative”, NStZ, 2016
- Saliger, Frank, “Sterbehilfe ohne Strafrecht? Eine Bestimmung des Anwendungsbereichs von Sterbehilfe als Grundstein für ein intradisziplinäres Sterbehilferecht”, KritV, 2001, Vol. 84, No. 4, 2001,
- Schöch, Heinz, “Das Recht auf selbstbestimmtes Sterben”, GA 167, 2020
- Köhler, Michael, “Das Rechtspflicht gegen sich selbst”, Jahrbuch für Recht und Ethik Bd. 14, Duncker & Humblot, 2006

## 기타

허일태, 안락사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Adam McCann, Assisted Dying in Europe: A comparative law and governance of four national and two supranational systems, PhD thesis, University of Groningen(2016)

Deutscher Bundestag, BT Drucks 18/5373, 2015

Oregon Health Authority, Public Health Division,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2021 Data Summary

Stellungnahme deutscher Strafrechtslehrerinnen und Strafrechtslehrer zur geplanten Ausweitung der Strafbarkeit der Sterbehilfe

## Is the act of a doctor who participated in Physician-assisted suicide exempt from the responsibility?

Lee, Seungjun\*

Criminal Code stipulates the crime of engaging in suicide. Therefore, in the case of choosing to kill oneself, the criminal law does not intervene, but in the case of engaging in other person's suicide, the person involved can be punished. Doctors who have participated in Physician-assisted suicide(PAS) are no exception.

PAS does not shorten life only through actions of the suicide victim, but involves the intervention of a doctor who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lives. It seems difficult to deny legal responsibility beyond ethical criticism. However,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countries recognize PAS as one of the ways to protect human dignity, and that 76% of the people positively judge death with dignity or PAS legal, there is a great need to carefully consider PAS. It can be said that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in the constitutional law academia and medical circles, but PAS is still out of interest in the criminal law academia.

However, the fact that since 2016, three Koreans committed PAS in Switzerland is a signal that it is time for the discussion of PAS in Korea. This is because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for aiding and abetting suicide cannot be ruled out if the person who helped them lead to death.

This thesis is a preliminary review on the of the possibility of criminal justification of PAS. It aims to spark an in-depth academic discussion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death and PAS based on this in the criminal law academia as well. For this purpose, I examined the concept of legalized PAS first, and analyzed the results of a public survey on PAS, and then examined the legislative

---

\*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Law School

examples of countries that allowed PAS.

Based on this, I argu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equal rights, and the absolute protection of life in the constitution, whether the act of a doctor who participated in PAS can be justified and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for aiding suicide.

❖ Key words: Physician-Assisted-Suicide(PAS), Doctor-Assisted death with dignity, death with dignity, Euthanasia, aiding and abetting suicide, self-determination

# 경제적 계층이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갈등 인식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차유정\* · 노성훈\*\*

## 국 | 문 | 요 | 약

경제적 계층과 형사사법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는 서구의 비범범죄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이러한 논의는 법률의 형성 및 집행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범죄학계는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학에 경도된 나머지 형사사법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결핍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제적 계층에 따라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양자 간의 관계 속에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8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이고 표본은 총 6,300개이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경제적 계층, 형사사법 불공정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사회갈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형사사법기관이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인식이 높았다. 사회갈등 인식은 경제적 계층이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형사사법기관의 법적 정당성 확보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2.12.31.4.39>.

❖ 주제어 :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사회갈등 인식, 경제적 계층, 갈등이론, 법적 정당성

\* 주저자: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경찰대학 행정학과,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

## I. 서론

형사사법은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 행위자에 대해 어떤 제재를 어떤 방식으로 가할지에 대한 기본원칙에 따라 작동된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사법의 원칙은 법률로 확정된다. 그런데 원칙과 법률 차원의 형사사법과 실제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집행과 재판의 형태로 구현되는 형사사법의 모습에 대한 인식 간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범죄학자 존 헤이건과 셀레스타 알보네티(Hagan & Albonetti, 1982: 329-330)는 다음과 같은 말로 형사사법의 의미를 표현한다.

형사사법의 의미는 범죄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상징적(symbolic)이면서 동시에 가변적(variable)이다. 형법 및 집행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고 기대된다. 는 점에서 형사사법은 상징적이다. 이러한 상징과 원칙이 법률적 개념의 측면과 일반인의 인식 측면에서 다르다는 점에서 형사사법은 가변적이다.

공정한 법집행과 재판은 형사사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서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원칙이 실제 형사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눈에 비친 형사사법의 법집행과 재판은 사람에 따라 공정과 불공정의 스펙트럼 위에 다르게 위치한다. 객관적인 상수(constant)로서의 형사사법 원칙과 주관적인 변수(variable)로서의 형사사법 인식 간의 틈이 존재하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형사사법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인식한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불공정하게 작동된다는 인식은 법집행에 대한 불신과 공권력의 정당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해지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정치 시스템 자체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 형사사법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범죄 발생의 위험이 커지기도 하고(Tylor, 1990; LaFree, 1998), 재범 가능성이 증가하기도 한다(Petersilia & Deschenes, 1994). 저항이론(defiance theory)에 따르면 사람은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더욱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보인다(Sherman, 1993). 범죄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법적 제재가 불공정하다고 규정하면 분노의 감정을 불법행위를 통해 표출하는 방식으로 저항하는데, 제재가 차별적이거나 과도하거나 부당한 경우 불공정하다고 간주하게 된다. 이렇

게 형사처벌의 불공정성 인식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불법행위를 합리화하는 태도로 이어진다(서한별 & 황의갑, 2019).

그런데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계층에 따라 가변적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계층이 낮을수록 형사사법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Hagan & Albonetti, 1982; Hagan, Shedd, & Payne, 2005; Unnever, Gabbidon, & Higgins, 2011; Walker, Spohn, and DeLone, 2012).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한 소수인종에게서 형사사법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난다(Matsueda, et al., 2011). 계층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간의 연관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위계층에 대한 불공정한 법집행 및 형사절차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또는 재회의 불공평한 분배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계층적 지위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자원(예: 변호사 수입)의 차이에서 비롯된 인식일 수 있다(Black, 1976).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 또한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주로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일수록 사회갈등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Wright, 1989; Delhey & Keck, 2008; Kelly & Evans, 2000). 사회갈등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본질을 이해관계를 둘러싼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갈등과 경쟁 속에서 찾는 경향이 크다. 이에 반해 사회갈등의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주로 합리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보편적 가치에 대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규범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믿는다(Bohm, 2001; Moore & Morris, 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대립적 관점은 형사사법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전자는 형사사법제도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운용된다고 보지만 후자는 법 앞의 평등, 적정절차의 원리 등 형사사법의 원칙들이 대체적으로 잘 지켜진다고 여긴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형사사법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사회갈등의 수준의 높다고 인식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적 계층,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그리고 사회갈등 인식 간의 관련성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과연 사회갈등 인식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관련성에서 개인의 계층적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

다. 첫째, 사회갈등 인식이 높을수록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도 높지만 이는 계층에 의한 허위적 관계로 가정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계층적 지위가 각각 사회갈등 인식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회갈등 인식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간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는 단순히 계층적 지위에 의한 허위적 관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그러나 사회갈등 인식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간의 관계가 비허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면 사회갈등 인식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계층적 지위는 양 변수에 대한 선행변수로서 계층적 지위가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또다시 사회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변수 간에 조절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할 수 있다. 즉, 계층적 지위가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이 사회갈등의 인식 정도에 의해 조절된다고 가정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 형사사법에서의 갈등적 관점

형사사법에서의 갈등적 관점에 따르면 범죄는 개인이나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 내의 갈등에서 비롯되는데, 이때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권력을 가진 집단에 의해 결정된다. 형법은 지배집단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며 하위계층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형사사법제도 역시 법집행과 처벌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강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차별적 제도로 간주한다. 갈등이론 범죄학자 조지 볼드(George B. Vold)에 의하면 사회 집단은 다른 집단과의 지속적인 경쟁적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향상 또는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자신의 방식을 사회질서 또는 사회조직이라고 불리는 다소 안정적인 힘의 균형상태에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된다(Bernard et al., 2019). 이때 사회질서는 집단 간의 합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힘과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집단 간의 ‘불편한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따라서 집단 간의 갈등은 사회가 작동하기 위한 핵심적 사회과정과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Bernard et al., 2019). 챔블리스와 사이드만(Chambliss & Seidman, 1971)은 이해관계를 둘러싼 집단 간의 갈등은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재기구의 개입이 필요해지는데 그 과정에 정치적, 경제적 지배집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행위규범을 강압적으로 집행하게 된다(Lilly et al., 2017:257에서 재인용).

1960년대 미국 사회는 다양한 집단이 갈등하고 서로 다른 가치들이 충돌하던 혼란한 시기였다. 그동안 지배적이었던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과 탈곳 파슨스(Talcott Parsons)의 기능주의적, 합의적 관점은 당시 사회의 혼란한 모습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이 시기에 마르크스 이론에 바탕을 둔 갈등적 관점이 범죄학 분야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마르크스 이론은 자본주의 사회가 내포한 근본적 문제를 소유권의 불평등과 생산수단의 통제를 둘러싼 계급 간의 갈등에서 찾았다. 기존의 노동착취적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자본계급과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동계급 간에는 갈등이 존재하며 그 속에서 타락하고 비인간화된 개인들은 범죄행위를 통해 환경에 동화되거나 저항한다(Bonger, 1916; Quinney, 1980). 국가는 자본계급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기관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통제한다. 그런 의미에서 형법은 지배계급의 이익과 의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Chambliss, 1975).

갈등이론은 범죄의 의미에 대해서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퀴니(Quinney, 1970)는 범죄는 객관적 실재라기보다는 국가의 권위 있는 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 행위에 대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의 권력 계층은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추진할 때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한다. 그래서 스티븐 박스(Box, 1983)는 형법 조항이 ‘이데올로기적 구상물’(ideological constructs)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행위를 범죄화하는 대신 권력층의 유사한 행위는 범죄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사회 고위층과 권력층이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성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범죄의 심각성은 하위계층에 의해 저질러지는 일부 행위에 국한된다. 그 결과 실제로 권력 계층의 범죄가 더 심각한데도 일반 국민들의 인식 속에 위험한 범죄자들이 하위계층에 많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만들고 하위계층에 대한 국가통제를 정당화한다. 국가의 법집행이 하위계층에 집중될수록 범죄통계를 통해 이러한 허위의식이 객관화되어 사실로 받아들여지

게 된다. 범죄 현상의 실상과 원인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일종의 ‘공격대상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배계층은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하위계층의 범죄로 향하게 하여 실제로 문제의 근원이 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개선 요구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Reiman & Leighton, 2016).

## 2. 계층과 형사사법에 대한 인식

다수의 연구들이 범죄학의 갈등적 관점에 대한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법에 규정된 내용과 법의 실제적 적용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법집행의 형평성 원칙 위반을 확인하고자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재판 결과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판결이나 형량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연구 결과 노동자 계층과 유색인종일수록 체포, 구금,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이 크고, 재판 전 석방 결정에서도 불리하며 더 장기간 교도소에 징역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Lizotte, 1978, Albonetti et al, 1989, Reiman & Leighton, 2016).

그런데 형사사법에서의 계층에 따른 차별과 공정성의 문제는 주관적 인식의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막스 베버(Max Weber)가 법적 정당성(legitimacy)의 개념을 통해 논의한 바 있는데, 베버는 법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적 합리성(legal rationality)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다. 보편적 규칙으로서 법률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판사 등 형사사법의 주체들이 비인격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원칙에 따라 논리적인 분석과정을 거쳐 집행될 때 법적 합리성이 확보된다고 보았다. 그럴 때 비로소 일반 국민은 법체계를 정당하다고 여기게 되어 법질서가 확립된다고 주장했다(Weber, 1978). 이와 비슷하게 톰 타일러(Taylor, 1990; Sunshine & Taylor, 2003)도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의 개념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법집행 결과의 수용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법적 정당성은 법집행기관이 객관적 차원에서 법과 규정을 얼마나 준수했는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집행의 대상자들이 법집행기관과 법집행 행위 및 절차가 얼마나 공정하며 정의롭다고 여기는지의 문제다.

형사사법에서 말하는 공정성은 형평(fairness)와 정당(justice)의 의미를 담고 있다. 법 집행의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정당한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동시에 법집행 절차와 결과가 타인과 비교해서 차별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헤이건과 알보네티의 연구(Hagan & Albonetti, 1982)는 형사사법의 불공정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1) 법집행기관(경찰)이 가난한 용의자와 부유한 용의자를 대우하는 방식이 다른지, 2) 법집행기관(경찰)이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는지, 3) 법원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지, 4) 배심원단이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대표하는지, 5) 변호인이 가난한 의뢰인과 부유한 의뢰인을 대우하는 방식이 다른지, 6) 법원이 가난한 피고인과 부유한 피고인을 대우하는 방식이 다른지를 질문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기도 했는데, 헤이건과 동료들(Hagan, Shedd, & Payne, 2005)은 ‘경찰이 가난한 사람에 비해 부유한 사람을 더 좋게 대우하는지’ 질문하였고, 마수에다와 동료들(Matsueda et al., 2011)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가난한 사람 중에 몇 퍼센트가 경찰에 의해 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런데 형사사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사람이 속한 계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할수록 형사사법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계층(class)은 한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교육 수준, 직업적 지위, 그리고 소득 수준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계층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간의 연관성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다.(Buckler & Unnever, 2008; Hagan, Shedd, and Payne, 2005; MacDonald et al., 2007; Unnever, Gabbidon, & Higgins, 2011; Walker, Spohn, and DeLone, 2012; Weitzer et al., 1999). 대부분의 미국 연구에서는 계층과 인종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적 취약성과 인종의 조합이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모든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Hagan and Albonetti 1982; Wortley, Hagan and Macmillan 1997; Brooks and Jeon-Slaughter 2001). 다수의 연구는 백인보다 흑인의 인식이 더욱 부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러한 인종의 영향은 소득수준이나 취업상태 등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나 하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종과 상관없이 형사사법의 불공정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흑인 집단 내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불공정 인식은 비례해서 감소했다. 경제적 취약성의 영향은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확인되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사회구조적 취약요인들은 주민들 사이에 형사사법 불공정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Berg et al., 2016).

국내에서도 법집행의 공정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 신의기와 강은영의 연구(2012)에 따르면 80% 가까운 응답자가 권력이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경제적 수준과 법 인식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는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법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처벌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외(2015)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67%는 법집행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신분이나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법집행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사람은 14.4%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임동진과 박관태의 연구(2017)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제력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측정되었다. 스스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법집행뿐만 아니라 정치 활동,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사회적 분배구조 전반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경찰 신뢰도에 관한 연구로서 홍명기와 장정현(2020)은 신분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 3. 계층과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사회갈등 인식(perceived social conflicts)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환경을 적대적인 관계로 특징짓는 경향이 강하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노동자와 사업주, 남성과 여성, 청년세대와 장년세대 사이를 갈등적 관계로 규정한다(서문기, 2004; 정정화, 2011; 오창우, 2017; 고대유, 2022; 정수현, 한의식, 정희옥, 2017) 사회갈등 인식의 수준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불평등 수준과 사회의 계층화 정도에 대한 인식, 개인의 정치적 태도 및 이념적 확신 등이 이에 속한다. 무엇보다 개인이 속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 사람의 사회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안락한 여건에 비추어 사회가 전반적으로 평등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크다.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원의 갈등보다는 합의적 측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하위계층에 속한 사람은 사회가 불평등한 구조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 간의 갈등에 더 큰 관심을 둘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모든 자본주의 사회는 착취구조에 기반한 생산양식을 토대로 삼기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지위 상승과 삶의 수준 향상을 향한 열망이 높은 중산층도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할수록 사회를 갈등적 관점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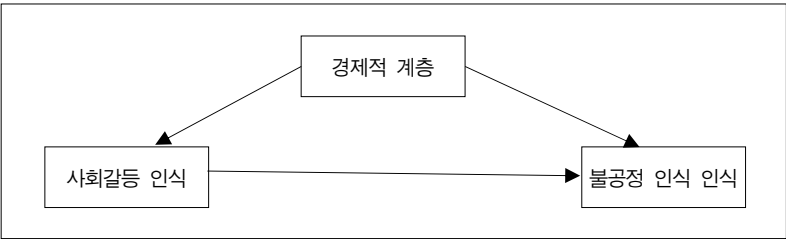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이 계층과 사회갈등 인식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개인의 계층적 지위가 낮을수록 사회갈등 인식은 높았다(Wright, 1989; Delhey & Keck, 2008; Kelly & Evans, 2000). 또한 물질적 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계층 간 갈등에 대한 인식도 증가했다(Edlund & Lindh, 2015). 객관적 차원의 불평등 수준이 사회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차원의 인식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elly & Evans, 1995). 국가 단위의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27개 OECD 국가들을 상대로 한 비교 연구에서 중상위 계층의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들의 사회갈등 인식 수준이 낮았다(Hertel & Schoneck, 2019). 국내 연구로는 유일하게 임동진과 박관태(2017)의 연구가 있는데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사회갈등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사회갈등 인식을 계층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측정하였다.

#### 4. 이론적 모형 및 연구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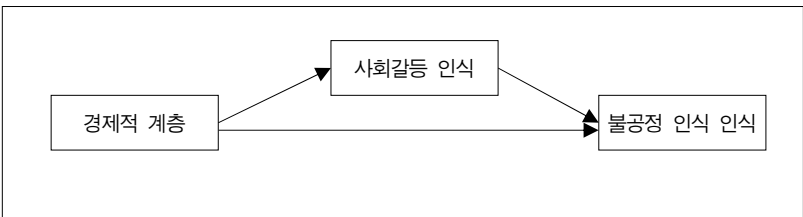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배경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경제적 계층, 사회갈등 인식 그리고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이론적 모형을 만든 뒤 이를 바탕으로 3가지 경쟁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경제적 계층, 사회갈등 인식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간의 관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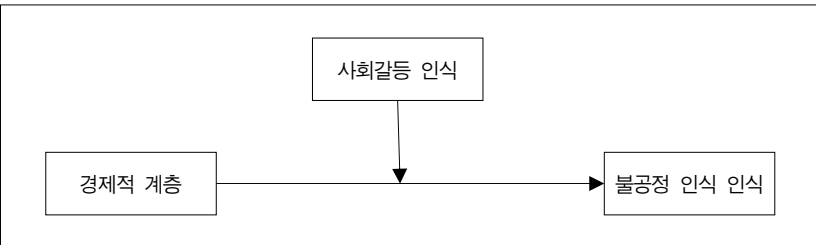
(a) 계층에 의한 허위적 효과 모형



(b) 사회갈등 인식에 의한 매개효과 모형



(c) 사회갈등 인식에 의한 조절효과 모형



*H1* : 사회갈등 인식이 높을수록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도 높는데 이는 경제적 계층에 의한 허위적 관계이다.

*H2* : 낮은 경제적 계층일수록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이 높으며 이러한 관계는 사회갈등 인식에 의해 매개된다.

*H3* : 낮은 경제적 계층일수록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이 높으며 이러한 관계는 사회갈등 인식에 의해 조절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2018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서베이연구센터에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2018년 10월 19일부터 2018년 12월 6일까지 수집되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가 201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전국단위 국민인식조사이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대인면접조사가 실시되었다. 다단계 층화집락표집으로 6,300명이 조사를 위해 추출되었다.

#### 2. 변수측정 및 연구모형

#####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하 ‘불공정 인식’)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형사사법제도와 관련된 기관은 3가지로,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이 있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있다. 형사절차를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3가지 기관 중 1개 이상의 기관을 접촉할 수밖에 없기에 3가지 기관을 하나로 묶어 형사사법기관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종속변수의 문항은 ‘법원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 ‘검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경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의 3가지 문항들로 측정된 것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을 위해 역코딩한 뒤 3문항에 대한 응답점수를 합산해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0.821).

## 나. 독립변수

첫 번째 독립변수인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하 ‘사회갈등 인식’)은 세대, 계층, 지역, 성별, 정치이념 등 여러 사회적 영역에 있어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는 갈등의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뒤 20-30대와 50-60대, 부자와 가난한 자, 수도권과 지방, 고용주와 근로자, 남자와 여자, 진보와 보수, 임대인과 임차인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1=갈등 수준이 매우 낮다’, ‘2=갈등수준이 낮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갈등수준이 높은 편이다’, ‘5=갈등수준이 매우 높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응답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0.768$ )

두 번째 독립변수인 ‘경제적 계층’은 응답자가 인식하는 상대적 임금수준으로 측정하였다. 객관적 차원의 소득수준보다는 주관적 차원에서 자신의 상대적 임금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인식 형성에 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sup>1)</sup> 주관적인 경제적 계층은 ‘귀하께서는 귀하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하였고 응답은 ‘1=10%’부터 ‘10=100%’까지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을 선택한 응답자는 자신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10%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10’을 선택한 사람은 자신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100%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임금수준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 통제변수

‘성별’, ‘정치적 성향’, ‘연령’, ‘학력’을 분석모형에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성별은 ‘1=남성’, ‘2=여성’으로 측정하였다. 정치적 성향은 본 설문조사가 본래 정부의 업무수행이 적절한지 묻기 위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현정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제변수로 선정했다. 김상돈(2009)은 정치적 성향과 정책 불신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며 또한 정책에 대한 불신이 국가기관 불신과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류준혁과 홍태경(2016)의 연구에서

1) 소득수준과 같은 객관적 지표가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분석에 활용할 수 없었다.

도 시민들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경찰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정치적 성향은 ‘귀하께서는 스스로의 정치성향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뒤 ‘1=매우 진보적’, ‘2=다소 진보적’, ‘3=중도 성향적’, ‘4=다소 보수적’, ‘5=매우 보수적’ 등 5개 응답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연령은 조사 당시 응답자의 만 나이로 측정하였다. 학력은 ‘1=미취학’, ‘2=초등졸(재학)’, ‘3=중졸(재학)’, ‘4=고졸(재학)’, ‘5=전문대졸(재학)’, ‘6=대졸(재학)’, ‘7=대학원 석사졸업(재학)’, ‘8=대학원 박사 이상 졸업(재학)’으로 응답한 것을 ‘미취학’부터 ‘고졸(재학)’까지 0으로 코딩하고, ‘전문대졸(재학)’부터 ‘대학원 박사 이상 졸업(재학)’까지를 1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2.0버전과 Process Macro 4.1버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는 Process Macro를 통해 분석하였다(Hayes(2012)). Process Macro의 매개효과 분석은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방식에 따라 진행되며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Process Macro가 제시하는 Bootstrappin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홍명기, 장현석, 2018). 매개분석에서 Bootstrapping은 간접효과의 표본분포의 대표치를 경험적으로 도출하는데 사용되며 Sobel 검정과 달리 Bootstrapping은 표본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고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표본분포의 비정규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Sobel 검정보다 더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고 검정력도 높게 나타난다(이형권, 2015).

## IV. 분석결과

### 1. 기술통계 분석결과

사회갈등 인식의 평균값은 25.18( $SD=3.65$ )로서 비교적 사회갈등 인식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계층은 평균이 3.97( $SD=1.74$ )로서 자신의 상대적인 경제적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3,154명, 여성이 3,146명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었다. 정치적 성향은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55명, ‘다소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265명, ‘중도 성향’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863명, ‘다소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35명, ‘매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1명이었다. 종속변수인 불공정 인식은 평균값이 9.61( $SD=2.22$ )로서 형사사법기관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만 19세부터 만 95세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48세였다. 학력은 고졸(재학)이하가 고졸 이상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들의 척도, 왜도는 절대값 기준 2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결측값은 없었다.

〈표 1〉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

|      | N=6,300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독립변수 | 사회갈등 인식 | 7   | 35  | 25.18 | 3.65  |
|      | 경제적 계층  | 1   | 10  | 3.97  | 1.74  |
| 통제변수 | 성별      | 1   | 2   | 1.5   | 0.50  |
|      | 정치적 성향  | 1   | 5   | 2.90  | 0.83  |
|      | 연령      | 19  | 95  | 48.04 | 15.80 |
|      | 학력      | 0   | 1   | 0.46  | 0.50  |
| 종속변수 | 불공정 인식  | 3   | 15  | 9.61  | 2.22  |

## 2. 상관관계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불공정 인식은 사회적 갈등 인식과는 정적관계( $r=.218$ ,  $p<0.01$ ), 경제적 계층과는 부적관계( $r=-.042$ ,  $p<0.01$ )를 나타냈다. 즉, 사회갈등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경제적 계층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형사사법기관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남성일수록( $r=-.042$ ,  $p<0.01$ ), 정치적 성향이 보수쪽에 가까울수록( $r=.026$ ,  $p<0.05$ ) 형사사법기관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연령과 학력이 낮을수록 불공정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사회갈등 인식도 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 및 정치적 성향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연령( $r=.031$ ,  $p<0.05$ )이 낮을수록, 학력( $r=.055$ ,  $p<.01$ )이 높을수록 사회 갈등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            | 1)      | 2)      | 3)      | 4)      | 5)      | 6)      | 7) |
|------------|---------|---------|---------|---------|---------|---------|----|
| 1) 불공정 인식  | 1       |         |         |         |         |         |    |
| 2) 사회갈등 인식 | .218**  | 1       |         |         |         |         |    |
| 3) 경제적 계층  | -.042** | -.073** | 1       |         |         |         |    |
| 4) 성별      | -.033** | -.020   | -.058** | 1       |         |         |    |
| 5) 정치적 성향  | .026*   | -.001   | -.068** | 0.043** | 1       |         |    |
| 6) 연령      | -.014   | -.031*  | -.119** | .080**  | .294**  | 1       |    |
| 7) 최종학력    | -.003   | .055**  | .132**  | -.147** | -.230** | -.589** | 1  |

\* $p<0.05$ , \*\* $p<0.01$

## 3. 가설 검증 결과

### 가. 경제적 계층에 의한 허위관계

사회갈등 인식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간의 정적관계가 경제적 계층에 의한 허위관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제적 계층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모형1과 포함된 모형2를 비

교했다. 모형1에서 경제적 계층을 제외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투입했을 때 사회갈등 인식은 형사사법 불공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갈등 인식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형사사법기관이 불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모형2에서 경제적 계층을 투입한 후에도 사회갈등 인식이 여전히 불공정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사회갈등 인식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사이에 경제적 계층에 의한 허위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사회갈등 인식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사이에는 실제적인 영향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통제변수의 경우 모형1과 2 모두에 있어서 남성일수록,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형사사법기관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학력은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해 본 바 VIF값이 2를 넘는 변수는 없었다.

〈표 3〉 경제적 계층에 의한 허위관계 검증

|                                       | 모형 1         |         |            | 모형 2         |         |            |
|---------------------------------------|--------------|---------|------------|--------------|---------|------------|
|                                       | B            | $\beta$ | t          | B            | $\beta$ | t          |
| 상수                                    | 6.638        |         | 20.979 *** | 6.772        |         | 20.979 *** |
| 사회갈등 인식                               | 0.133        | 0.218   | 17.704 *** | 0.131        | 0.216   | 17.453 *** |
| 경제적 계층                                |              |         |            | -0.033       | -0.026  | -2.084 *   |
| 성별                                    | -0.140       | -0.031  | -2.522 *   | -0.143       | -0.032  | -2.580 *   |
| 정치적 성향                                | 0.081        | 0.030   | 2.353 *    | 0.079        | 0.030   | 2.306 *    |
| 연령                                    | -0.004       | -0.030  | -1.785     | -0.004       | -0.030  | -1.757     |
| 최종학력                                  | -0.042       | -0.024  | -1.428     | -0.033       | -0.019  | -1.118     |
| R <sup>2</sup> (adj. R <sup>2</sup> ) | 0.050(0.049) |         |            | 0.050(0.049) |         |            |
| F                                     | 65.682***    |         |            | 55.488***    |         |            |

\* :  $p < .05$     \*\*\* :  $p < .001$

나. 사회갈등 인식의 매개효과

경제적 계층이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갈등 인식에 의해 매개되는지 검증하였다. 사회갈등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1에서 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사회갈등 인식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다. 다음으로 모형2에서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불공정 인식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 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사회갈등 인식이 높을수록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 인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층이 사회갈등 인식을 통해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부트스트랩 결과(하한값: -0.0238, 상한값: -0.0120)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이 형사사법 불공정에 미치는 직접효과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하한값: -0.0509, 상한값: -0.0020), 마지막으로 총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하한값: -0.0691, 상한값: -0.0192). 이를 통해서도 사회갈등 인식이 계층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사회갈등 인식의 매개효과 검증

|                | 모형 1<br>(종속변수: 사회갈등 인식) |         |             | 모형 2<br>(종속변수: 불공정 인식) |         |             |
|----------------|-------------------------|---------|-------------|------------------------|---------|-------------|
|                | B                       | $\beta$ | t           | B                      | $\beta$ | t           |
| 상수             | 25.7618                 |         | 81.9385 *** | 6.7238                 |         | 25.0147 *** |
| 사회갈등 인식        |                         |         |             | 0.1312                 | 0.2160  | 17.4988 *** |
| 경제적 계층         | -0.1720                 | -0.0820 | -6.4675 *** | -0.0336                | -0.0264 | -2.1206 *   |
| 성별             | -0.1140                 | -0.0156 | -1.2311     | -0.1462                | -0.0330 | -2.6535 **  |
| 정치적 성향         | 0.0432                  | 0.0099  | 0.7502      | 0.0774                 | 0.0291  | 2.2587 *    |
| 연령             | -0.0012                 | -0.0053 | -0.3364     | -0.0048                | -0.0340 | -2.1887 *   |
| 최종학력           | 0.4561                  | 0.0623  | 3.9613 ***  | -0.1315                | -0.0296 | -1.9179     |
| R <sup>2</sup> | 0.0099                  |         |             | 0.0506                 |         |             |
| F              | 12.5283 ***             |         |             | 55.9144 ***            |         |             |

\* :  $p < .05$     \*\*\* :  $p < .001$

〈표 5〉 경로분석 결과

| 효과   | 경로                 | $\beta$ | S.E.   | LLCI    | ULCI    |
|------|--------------------|---------|--------|---------|---------|
| 간접효과 | 계층 → 사회갈등 인식 → 불공정 | -0.0177 |        | -0.0238 | -0.0120 |
| 직접효과 | 계층 → 불공정           | -0.0264 | 0.0125 | -0.0509 | -0.0020 |
| 총효과  | 계층 → 불공정           | -0.0442 | 0.0127 | -0.0691 | -0.0192 |

다. 사회갈등 인식의 조절효과

다음은 경제적 계층이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갈등 인식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모형1에서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경제적 계층과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 사회갈등 인식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2에서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경제적 계층과 사회갈등 인식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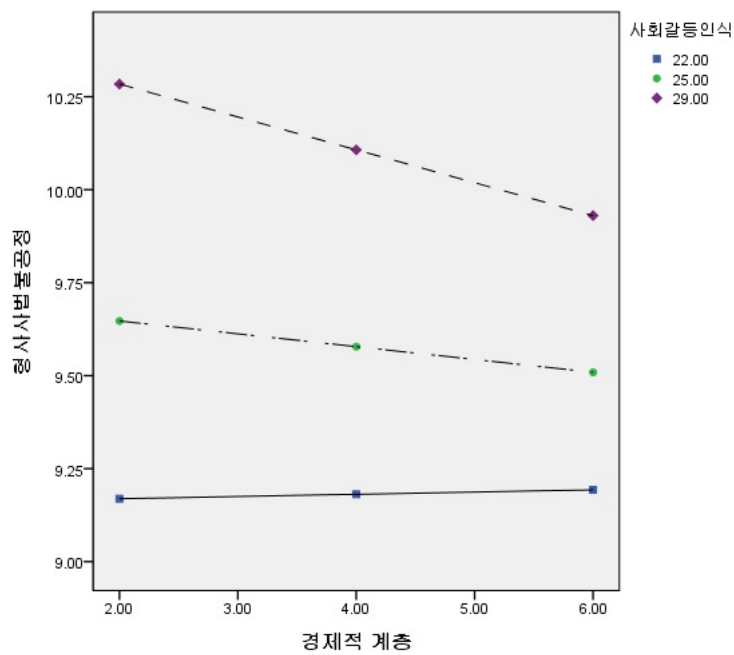
[그림 2]는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은 ‘-1SD, Mean, +1SD’를 통해 조건부 효과를 측정하나 이 방법은 표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 측정척도에 따라 조절변수의 평균값이 매우 낮은 또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백분위를 사용함으로써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이형권, 2015). 이에 따라 조절변수인 사회갈등인식을 각각 16th, 50th, 84th 퍼센타일(percentiles)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사회갈등인식이 낮은집단(22.00), 중간집단(25.00), 높은집단(29.00)이 된다. 즉 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은 증가하는데 이러한 부적 영향은 사회갈등 인식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표 6〉 사회갈등 인식의 조절효과 검증

|                                       | 모형1          |         |           | 모형2          |         |           | 모형3          |         |           |
|---------------------------------------|--------------|---------|-----------|--------------|---------|-----------|--------------|---------|-----------|
|                                       | (기본모형)       |         |           | (사회갈등 추가모형)  |         |           | (상호작용 모형)    |         |           |
|                                       | B            | $\beta$ | S.E. p    | B            | $\beta$ | S.E. p    | B            | $\beta$ | S.E. p    |
| 상수                                    | 10.103       |         | 0.191 *** | 6.724        |         | 0.269 *** | 5.354        |         | 0.516 *** |
| 경제적 계층                                | -0.056       | -0.044  | 0.016 **  | -0.034       | -0.026  | 0.016 *   | 0.301        | 0.236   | 0.109 **  |
| 사회갈등인식                                |              |         |           | 0.131        | 0.216   | 0.007 *** | 0.186        | 0.307   | 0.019 *** |
| 경제적계층×<br>사회갈등인식                      |              |         |           |              |         |           | -0.013       | -0.274  | 0.004 **  |
| 성별                                    | -0.161       | -0.036  | 0.056 **  | -0.146       | -0.033  | 0.055 **  | -0.150       | -0.034  | 0.055 **  |
| 정치적 성향                                | 0.083        | 0.031   | 0.035 *   | 0.077        | 0.029   | 0.034 *   | 0.074        | 0.028   | 0.034 *   |
| 연령                                    | -0.005       | -0.035  | 0.002 *   | -0.005       | -0.034  | 0.002 *   | -0.005       | -0.033  | 0.002 *   |
| 최종학력                                  | -0.072       | -0.016  | 0.070     | -0.131       | -0.030  | 0.069     | -0.132       | -0.030  | 0.069     |
| R <sup>2</sup> (Adj. R <sup>2</sup> ) | 0.004(0.004) |         |           | 0.051(0.050) |         |           | 0.052(0.051) |         |           |
| F값                                    | 5.585***     |         |           | 55.914***    |         |           | 49.377***    |         |           |
| ΔR <sup>2</sup>                       | 0.004        |         |           | 0.046        |         |           | 0.001        |         |           |
| ΔF값                                   | 5.585***     |         |           | 306.207***   |         |           | 9.691**      |         |           |

\* : p< .05    \*\* : p< .01    \*\*\* : p< .001

[그림 2] 사회갈등 인식의 조절효과 그래프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범죄학의 갈등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경제적 계층이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 속에서 사회갈등 인식의 역할에 대해 조사하였다. 첫째, 연구를 통해 경제적 계층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이 공정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형사사법기관이 불공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에 실제로 존재하는 불공정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흔히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대표되는 형사사법의 불공정성 문제는 비판범죄학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출발한 초기 급진이론은 애초에 범죄행위 자체가 개인의 어떠한 병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속 고립되고 소외된 인간이 벌이는 투쟁의 결과

로 이해했다(Talyor, Walton, Young, 1973). 자본을 장악한 권력 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 범죄와 일탈이 정의되고 형사사법제도는 이러한 지배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았다(Bonger, 1916). 부의 불평등한 분배와 이에 따른 계층화(stratification)라는 사회적 요소에 의해 움직이는 동적(動的) 속성이 정부의 공식적 사회통제 수단인 법률에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한 도널드 블랙(Black, 1976)의 주장도 급진이론의 연장선에 있다. 블랙에 의하면 개인의 사회계층적 지위가 낮을수록 동원할 수 있는 법의 양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으로 향하는 법이 그 반대 방향보다 크다. 또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수직거리가 커질수록 적용되는 법의 양이 증가하고 법의 유형도 더욱 징벌적(punitive)으로 된다(Black, 1976). 이와 같은 비판범죄학자들의 주장이 현실화할 때 형사사법 정의(criminal justice)는 ‘계급 정의’(class justice)가 될지도 모른다(Talyor et al., 1973).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는 경제적 취약성과 기회 박탈의 의미를 넘어 형사절차적으로 취약한 ‘형사사법적 약자’와 동일시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가 형사사법의 불공정성이 실재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다는 단지 시민들, 특히 경제적 하위계층의 주관적 인식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시민들의 인식을 그저 허위의식 정도로 치부할 수는 없다. 사실 형사사법기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법성(legality)뿐만 아니라 ‘법적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법규정의 위반 여부에 의해 평가되는 적법성과 달리 법적 정당성은 형사사법기관의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판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적 정당성은 반드시 적법성 여부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객관적 차원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집행을 당하는 시민은 정당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톰 타일러(Tyler, 1990)에 의하면 법집행이 절차적 정의를 충족했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해당 법집행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재판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여도 재판과정이 공정하다고 인식한 사람은 그 결과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Thibaut & Walker, 1975).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일러는 법집행 대상자에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들의 주장에 귀기울이며 가능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형사사법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이 중립적이며 편견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 정보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

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기관이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사회 전반의 일반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갈등 인식의 수준이 경제적 계층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사이에서 매개 요인 또는 조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범죄학계는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로 양분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처벌을 통한 범죄 억제와 인간 행동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 범죄예방정책(예: 셉테드)을 다루는 고전주의 범죄학과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범죄 원인을 규명하려는 실증주의 범죄학이 학계와 정부 정책 전반에 걸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대 범죄학 패러다임은 법률의 형성, 범죄의 의미, 사회의 본질 등에 대해서 합의론적 관점을 취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합의론적 관점에 의하며 법률은 사회 전체 합의의 결과이며, 따라서 범죄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입장을 막론하고 허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규정된다. 하지만 또 다른 범죄학 패러다임인 비판적 범죄학에서는 사회의 본질을 합의가 아닌 갈등에서 찾는다. 사회는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 간의 힘의 대결을 통해 어떤 행위가 범죄로 규정될지, 위반자에게는 어느 수준의 형벌을 부과할지가 결정된다. 비판적 범죄학자들은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들의 주도하에 범죄가 정의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경제적 하위계층일수록 한국 사회 내 갈등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갈등의 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 내에서 경제적 계층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간의 관련성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범죄학 연구에 있어서 갈등론적 관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범죄학 연구가 지나치게 합의론적 관점에만 경도되었던 한계점을 극복하고 범죄의 의미, 발생원인 그리고 형사사법제도를 통한 범죄통제에 이르기까지 갈등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갈등의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20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7.6%가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조권중·최지원, 2021). OECD 29개국 중에서 한국은 사회갈등 지수(SCI)가 7번째로 높은 나라이다(이부형·박용정, 2017). 전문가들은 사회갈등

이 해소되기 위해 우선하여 개방된 의사소통 채널이 마련되어야 하고, 갈등 이해관계자, 정부,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개방된 네트워크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이환범·김태희, 2014). 또한 갈등 당사자들 간의 이념적 거리만을 좁히는 노력과 함께 사회구조적,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유희정, 이숙중, 2016). 단순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 외에도 경제적 배분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오민지, 2022).

이번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응답자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경험이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석모형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이다. 형사사법절차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Buckler et al., 2011; Pllock & Menard, 2015; Callanan & Rosenberger, 2011). 또한 법집행 및 형사절차의 개시, 과정, 결과 등은 형사사법기관 및 제도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와 같은 변수들을 포함한 1차 자료가 수집되어 형사사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정교한 모형이 검증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세현. (1998). “범죄와 비행 연구에 있어 이론적 통합론의 비판적 고찰.” 論文集 22.-128-137.
- 고대유. (2022). 공정성과 사회갈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쟁해결연구, 20(1), 147-170.
- 김상돈. (2009).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성향이 국가기관 불신에 미치는 영향: 정부 정책 불신의 매개효과. 한국사회학, 43(2), 25-54.
- 김혜원, 박운환. (2016). 경찰신뢰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9, 40-61.
- 박성훈, 최이문, 강우예. (2015).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IX):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59.
- 박효민, 김석호. (2015). 공정성 이론의 다차원성. 사회와이론, 219-260.
- 송영남, 최재용, 이운호. (2015). 위계적선형모형을 활용한 국민의 경찰신뢰도 영향요인 분석. 한국범죄학, 9(1), 3-32.
- 서문기. (2004).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 갈등해결 시스템을 모색하며. 한국사회학, 38(6), 195-218.
- 서한별, 황의갑. (2019). 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범위반 합리화에 미치는 영향-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매개효과. 한국경찰연구, 18(1), 191-218.
- 신의기, 강은영, 김일수. (2012).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11.
- 오민지. (2022). 사회갈등인식이 국가 경제전망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2(4), 63-89.
- 유영현, 신성식. (200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2(2), 337-356.
- 유희정, 이숙중. (2016). 한국사회 갈등의 원인 및 관리에 대한 연구: 갈등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7(1), 39-80.
- 류준혁, 홍태경. (2016). 시민의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 성향과 경찰에 대한 인식과의 관

- 계 연구. *Crisisonomy*, 12(2), 129-143.
- 오창우. (2017). 한국에서의 사회갈등 논의의 의미연결망 분석: 주요 포털에서의 핵심어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45, 37-67.
- 이건. (2015). 사회갈등 해소 기제로서의 공정성 탐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4), 27-51.
- 이병도. (2017). 경찰신뢰도 궤적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9(2), 141-170.
- 이부형, 박용정. (2016).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사회적 갈등 개선으로 3%대 성장 가능하다!. *한국경제주평*, 718, 1-16.
- 이승모, 하동현. (2020). 공공갈등과정에서 사회집단의 역할유형 분석: 갈등의 발생책임과 해소노력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4(4), 203-229.
- 이형권(역). (2015).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신영사.
- 이환범, 김태희. (2014). 우리나라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6(2), 141-160.
- 임동진, 박관태. (2017).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통신뢰가 공정성 및 사회갈등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4239-4251.
- 임현철, 은재호. (2020). 미래의 갈등관리, 어디로 가야하나? 공정성, 소통, 사회갈등의 삼각관계. *입법과 정책*, 12(3), 57-88.
- 장현석. (2013). 일반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 표현적 시각의 경찰신뢰도 설명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2(2), 213-236.
- 정수현, 한의석, 정화옥. (2017). 한국 사회의 갈등양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당의 역할: 표적집단면접 (FGI) 을 통한 분석. *미래정치연구*, 7(2), 115-140.
- 정정화. (2011).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공공갈등: 국책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3), 1-27.
- 조권중, 최지원. (2021). 서울 시민의 사회갈등 인식과 시사점. *정책리포트*, 1-22.
- 황의갑, 홍명기. (2020). 일반시민과 체류외국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비교 연구-중국, 몽골, 베트남 출신 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9(3), 291-334.

- 홍명기, 장정현. (2020). "Factors Affecting Korean Public Opinion of the Police: The Conflict Perspective." 한국테러학회보 13(4), 133-144.
- 홍명기, 장현석. (2018). 낮은 자기 통제력이 비행피해에 미치는 영향: 기회요인과 부모 감독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2(2), 99-119.
- Albonetti, C. A., Hauser, R. M., Hagan, J., & Nagel, I. H. (1989). Criminal justice decision making as a stratification process: The role of race and stratification resources in pretrial release.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5(1), 57-82.
- Berg, M. T., Stewart, E. A., Intravia, J., Warren, P. Y., & Simons, R. L. (2016). Cynical streets: Neighborhood social processes and perceptions of criminal injustice. *Criminology*, 54(3), 520-547.
- Bernad, Tomas J., Snipes, Jeffrey B., & Gerould, Alexander. L. (2019). Vold의 이론범죄학. 그린출판사.
- Black, D. (1976). *The Behavior of Law*, New York: Academic Press.
- Bonger, W. A. (1916). *Criminality and economic conditions*. Boston, MA: Little, Brown & Company.
- Boulding, K. E. (1962). *Conflict and defense: A general theory*. New York, NY:Harper & Row.
- Box, S. (1983). *Power, crime and mystification*. London: Routledge.
- Brooks, R. R., & Jeon Slaughter, H. (2001). Race, income, and perceptions of the US court system.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19(2), 249-264.
- Buckler, K., & Unnever, J. D. (2008). Racial and ethnic perceptions of injustice: Testing the core hypotheses of comparative conflict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6(3), 270-278.
- Buckler, K., Wilson, S., Hartley, D., & Davila, M. (2011). Racial and ethnic perceptions of injustice: Does prior personal and vicarious incarceration experience alter the racial/ethnic gap in perceptions of injustice?. *Criminal Justice Review*, 36(3), 269-290.

- Callanan, V. J., & Rosenberger, J. S. (2011). Media and public perceptions of the police: Examining the impact of race and personal experience. *Policing & Society*, 21(2), 167-189.
- Chambliss, W. J. & Seidman, R. (1971). *Law, Order and Power*. Reading, MA: Addison-Wesley
- Chambliss, W. J. (1975).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crime. *Theory and Society*, 2(1), 149-170.
- Chow, H. P. (2012). Attitudes towards Police in Canada: A Study of Percep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a Western Canadian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Sciences*, 7(1).
- Edlund, J., & Lindh, A. (2015).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revisited: the welfare state, social cohesion and political conflict. *Acta Sociologica*, 58(4), 311-328.
- Gabbidon, S. L., Higgins, G. E., & Potter, H. (2011). Race, gender, and the perception of recently experiencing unfair treatment by the police: Exploratory results from an all-black sample. *Criminal justice review*, 36(1), 5-21.
- Hagan, J., & Albonetti, C. (1982). Race, class, and the perception of criminal injustice in Americ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2), 329-355.
- Hagan, J., Shedd, C., & Payne, M. R. (2005). Race, ethnicity, and youth perceptions of criminal injusti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3), 381-407.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 Hertel, F. R., & Schöneck, N. M. (2022). Conflict perceptions across 27 OECD countries: The roles of socioeconomic inequality and collective stratification beliefs. *Acta Sociologica*, 65(3), 231-249.
- Jang, H., Joo, H. J., & Zhao, J. S. (2010). Determinants of public confidence in

- polic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1), 57-68.
- J. Robert Lilly, Francis T. Cullen & Richard A. Ball. (2017). *범죄학 이론: 사회적 배경과 결과물*. 박영사.
- Kelley, J., & Evans, M. D. (1995). Class and class conflict in six western n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57-178.
- Kelley, J., & Evans, M. D. R. (2000) Public perceptions of class conflict in 21 nations. In: Tos N, Mohler P, Malnar B (eds) *Modern Society and Values: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ISSP Project*. Ljubljana: University of Ljubljana, pp.43-71.
- LaFree, G. (1998). *Losing Legitimacy: Street Crime and the Decline of Social Institutions in America*. Boulder, CO: Westview.
- Lizotte, A. J. (1978). Extra-legal factors in Chicago's criminal courts: Testing the conflict model of criminal justice. *Social Problems*, 25(5), 564-580.
- MacDonald, J., Stokes, R. J., Ridgeway, G., & Riley, K. J. (2007). Race, neighbourhood context and perceptions of injustice by the police in Cincinnati. *Urban Studies*, 44(13), 2567-2585.
- Matsueda, R. L., Drakulich, K., Hagan, J., Krivo, L., & Peterson, R.D. (2011). Crime, perceived criminal injustice, and electoral politics, in J. H., Aldrich & K. M. McGraw (Eds), *Improving Public Opinion Surveys: Interdisciplinary Innovation and the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oore, M., & Morris, M. B. (2011). Political science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21(3), 284-296.
- Petersilia, J., & Deschenes, E. P. (1994). What Punishes-Inmates Rank the Severity of Prison vs. Intermediate Sanctions. *Fed. Probation*, 58, 3.
- Petrocelli, M., Piquero, A. R., & Smith, M. R. (2003). Conflict theory and racial

- profiling: An empirical analysis of police traffic stop data.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1(1), 1-11.
- Pollock, W., & Menard, S. (2015). Perceptions of unfairness in police questioning and arrest incidents: Race, gender, age, and actual guilt. *Journal of Ethnicity in Criminal Justice*, 13(3), 237-253.
- Quinney, R. (1970). *Social reality of crime*.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 Quinney, R. (1980). *Class, state and crime*. New York: Addison-Wesley Longman.
- Reiman, J., & Leighton, P. (2016). *The rich get richer and the poor get prison: Ideology, class, and criminal justice*. Routledge.
- Sampson, R. J., & Lauritsen, J. L. (1997).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Crime and justice*, 21, 311-374.
- Sherman, L. W. (1993). Defiance, deterrence, and irrelevance: A theory of the criminal sanc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4), 445-473.
- Sunshine, J., & Tyler, T. R. (2003). The role of procedural justice and legitimacy in shaping public support for policing. *Law & society review*, 37(3), 513-548.
- Taylor, I., Walton, P., & Young, J. (1973). *The new criminology: for a social theory of devian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Thibaut, J.W. and Walker, L. (1975) *Procedural Justice: A Psychological Analysis*. L. Erlbaum Associates, Hillsdale.
- Tyler, T. (1990). *Why People Obey the Law*.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Unnever, J. D., Gabbidon, S. L., & Higgins, G. E. (2011). The election of Barack Obama and perceptions of criminal injustice. *Justice Quarterly*, 28(1), 23-45.
- Walker, S., Spohn, C., & DeLone, M. (2012). The color of justice: Race,

- ethnicity, and crime in America (5th ed.). Belmont, TN: Cengage Learning.
- Weber, Max. (1978). *Economy and Society*, Vol. 1.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eitzer, R. (1996).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indings and problems in the literatur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4(4), 309-322.
- Weitzer, R., & Tuch, S. A. (1999). Race, class, and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by the police. *Crime & delinquency*, 45(4), 494-507.
- Wortley, S., Hagan, J., & Macmillan, R. (1997). Just des (s) erts? The racial polarization of perceptions of criminal injustice. *Law and Society Review*, 637-676.
- Wright, E. O. (1985). *Classes*, London, England: Verso.
- Wu, Y., & Sun, I. Y. (2009). Citizen trust in police: The case of China. *Police quarterly*, 12(2), 170-191.

## The Effect of Economic Class on the Perceived Criminal Injustice: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Perceived Social Conflict

Cha, Yoojung\* · Roh, Sunghoon\*\*

Critical criminology in the Western countries has long dealt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one's economic status and his/her percep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This issue is based on the conflict perspective toward the creation and enforcement of law. On the contrary, overwhelmed by classical and positivist criminology, our criminology academia lacks critical analyses about the legitimacy of criminal justice system.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percep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varies by one's economic status and how the perceived social conflict is associated with the causal process. We used the data drawn from 'Public Opinion Survey 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Quality of Life, 2018,' and the sample size was 6,300 in total. We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the effect of economic class upon perceived criminal injustice and the mediating/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social conflict as well. The result shows that economic class declines and the level of perceived social conflict increases, the level of perceived criminal injustice increases. The perceived social conflict has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between the economic class and perceived criminal injustic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strengthen legitimacy and the government should reduce the level of conflict in our society.

❖ Key words: Perceived criminal injustice, Perceived social conflict, Economic

---

\* The 1<sup>st</sup> Author, student of Ph.D, Department of Criminology,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class, Conflict theory, legitimacy



## 사이버범죄의 주요 세 요인들의 작용과 친불법적 문화환경의 조절효과

이 성 식\*

###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 세 요인을 제시하고 이 세 요인이 사이버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친불법적 사이버문화환경이 사이버범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면서 무엇보다 그러한 친불법적 사이버문화환경은 조절변인이 되어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 세 요인과 함께 작동할 것이라고 보아, 세 요인이 친불법적 사이버문화환경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했고 이를 검증하고자 했다. 서울시 대학생 대상의 조사자료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이버범죄의 설명요인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주요 세 변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사이버범죄를 용인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사이버범죄기회가 많을수록 사이버범죄를 더 저지른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이버범죄용인태도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사이버범죄기회,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이 그 다음으로 유의미한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는 친불법적 사이버문화 조절변인과 모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갖는 것을 제시했다. 즉 이 결과는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는 독립적으로도 사이버범죄에 영향을 갖지만 친불법적 사이버문화의 환경에서 사이버범죄에 더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이버범죄용인태도와 친불법적 사이버문화와의 상호작용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사이버범죄기회,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과 친불법적 사이버문화와의 상호작용효과 순으로 유의미한 것을 제시했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2.12.31.4.71>.

❖ 주제어 : 사이버범죄,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사이버범죄기회, 친불법적 문화환경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 I. 서론

인터넷이나 SNS 등의 사용이 일상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이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생활의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기존 오프라인에서의 범죄에 관심을 가졌던 범죄학자들은 온라인에서의 사이버범죄를 설명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려는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시도로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범죄학이론들을 적용하고 검증하여 왔는데, 그 연구들에서는 사이버범죄의 몇몇 주요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다(이성식, 2017). 여기서는 그러한 여러 원인들 중에서 그동안의 연구들에서 주목받아 왔던 자기통제력(일반이론)(Gottfredson and Hirschi, 1990), 범죄용인태도(차별접촉/사회화습이론)(Akers, 1985), 그리고 그 외 범죄기회의 용이성(기회이론) 등을 주요 요인들로 제시해 본다. 이 세 요인은 사이버공간의 특성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즉 인터넷 이용상 익명과 비대면의 공간에서는 탈억제되어 자기조절을 못하여 욕구와 충동대로 행동하기 쉽고,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보다 규제로부터 자유롭다고 인식하여 온라인에서의 사이버범죄를 더 용인하며, 또한 범죄의 기회가 용이하여 쉽게 사이버범죄를 저지른다고 본다.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를 통해 과연 그와 같은 세 요인들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기존 범죄학연구에서 개인미시적 연구이외에 거시 환경적 요인에도 관심을 가졌듯이(Shaw and McKay, 1942; Sampson et al., 1997) 사이버범죄 설명에서도 위의 요인들이외에 인터넷환경 등의 환경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에 있다. 그와 같은 요인들에는 통제론적 관점의 집합효율성과 같은 요인이외에 친불법적 문화환경의 거시요인이 있는데 그동안 사이버범죄 연구에서는 후자의 사이버문화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듯이(Tompsen, 1996; 이성식, 2012)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 미시적 요인이외에 인터넷 이용상의 친불법적 문화환경은 개인의 사이버범죄를 잘 설명하는가?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또 불법행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성향이나 태도 등의 개인문제도 있지만 이용자가 활동하는 인터넷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불법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환경적 맥락이 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거시문화 환경요인을 다루는 것에 다소 소홀했다는 점에서 그 요인의 중요성을 다룰 것이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그 영향력을 살펴보려는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 용인태도, 사이버범죄기회의 요인들이 그 자체적으로는 그 영향력이 한계가 있으며 이와 같은 친불법적 사이버문화환경과 결합할 때 그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점에 앞서 주요 세 요인들의 영향력이 사이버문화환경요인과 함께 작용하는지 그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려고 한다. 이는 개인요인과 환경맥락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상황행위이론(Wikström, 2004, 2010)에서와 같은 일종의 통합론적 접근으로, 기존 개인미시적 요인들과 함께 거시환경요인을 조절변인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상호작용을 강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는 기회요인과 거시환경요인의 상호작용효과도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사이버범죄에 대한 통합모형을 제시하고 최근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로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이버범죄를 설명하려고 하며 스마트폰의 주 이용층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하려는 것에 목적을 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처함에 있어 개인 대상으로 교육하고 통제하고 처벌하며, 또 기술적 조치 등을 통해 기회를 차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터넷문화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의 그 중요성을 확인해 보려는 데도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사이버범죄의 해결책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도 본 연구의 주 목적의 하나가 된다.

## II. 이론적 논의

### 1. 사이버범죄의 주요 원인들

#### 가. 낮은 자기통제력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일반이론에서는 대부분의 범죄가 즉각적이면서도 충동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범죄의 원인도 순간만족과 충동성을 통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으로서 낮은 자기통제력이라고 보았고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이 범죄의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범죄의 주요 설명요인이라고 보았다. Gottfredson과 Hirschi는 그러한 낮은 자기통제력이 어릴 때 형성되고 안정적 성향이 되어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러한 내적 성향이 범죄의 유일한 원인이 되며 어느 나라에서나 모든 유형의 범죄를 설명한다고 보았다.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주장은 이후 연구들에서 어느 정도 지지되어 왔다(Gibbs and Giever, 1995; Pratt and Cullen, 2000).

자기통제력은 현실에서의 범죄에서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에 적용한 연구에서도 사이버폭력, 음란물관련 범죄, 저작권침해 등 여러 사이버비행이나 범죄의 주요 설명요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Higgins and Wilson, 2006; Buzzell et al., 2006; 이성식, 2006; 정혜원, 2010; 남상인, 권상희, 2013).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과 비대면의 상황에서 평소에는 못할 행동을 탈억제로 인해 우발적이고도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쉬운데 범죄가 쉽고 용이한 상황에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더 저지르기 쉬우며 그러한 점에서 사이버범죄에서 중요한 설명요인이 된다.

## 나. 사이버범죄용인태도

차별접촉이론/사회학습이론(Akers, 1985)은 범죄가 학습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범죄에 우호적인 사람과의 접촉 혹은 상호작용으로부터 범죄를 학습하고 그들로부터 친범죄적 정의나 태도를 형성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그러한 주장들이 경험적으로 지지를 받아 왔는데(Matsueda, 1982; Krohn et al., 1985; Warr and Stafford, 2001), 즉 범위반자와의 차별접촉이나 범죄용인태도가 범죄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한 주장들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적용되어 초기 연구로 Skinner와 Fream(1997)은 해킹 혹은 인터넷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있어 사회학습이론에서의 요인들을 적용했고 차별접촉과 불법사용에 대해 갖는 친범죄적 태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했다.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의 요인들은 음악 다운로드 등 주로 저작권침해 연구에서 적용되어 왔고(Higgins and Wilson, 2006), 그러한 주장은 악성댓글과 같은 사이버폭력에 있어서도 적용되어 여러 요인들 중 범위반의 정의나 태도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 제시되어 왔다(성동규외, 2006; 이성식, 2006; Boulton et al., 2012). 비대면의 상황에서는 개인의 사이버범죄 행위가 그다지 나쁜 행위가 아니어서

덜 죄책감을 느끼게 되며 더구나 사이버공간에서는 평소 개인의 갖고 있던 태도대로 행동해 개인태도의 설명력이 높다고 주장되는데(Joinson, 2003) 그런 점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해 호의적이고 용인하는 태도를 가질 경우 사이버범죄의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 다. 범죄기회

기존의 주요 이론들이 주로 범죄자의 특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이었다면, 또 다른 논의는 범죄발생의 기회요인을 중시했는데, 생활양식이론(Hindelang et al., 1978)에서는 범죄발생 위험에의 노출이, 일상행위이론(Cohen and Felson, 1979)에서는 매력적 대상이 있고 감시의 부재 등 범죄기회가 있어야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들 논의는 범죄기회이론으로 불리며 범죄기회가 범죄의 주요 설명요인이라고 주장했는데 주로 범죄피해를 설명하면서 그동안의 연구에서 지지받아 왔다(Meier and Miethe, 1993).

그러한 논의는 사이버범죄 연구에도 적용되어 그와 같은 기회가 많을 때 사이버범죄가 더 발생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Holt and Bossler, 2009; Macum et al., 2010; Reyns et al., 2011). 기존에는 이와 같은 논의가 피해중심의 연구로 이루어졌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범죄기회가 많고 수월할수록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사이버공간에서는 손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감시의 부재 등 우연한 범죄기회가 많아 그러한 기회요인이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성식(2014)의 연구에서는 여러 이론들의 요인들의 영향력 비교에서 기회요인이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임을 제시했다.

## 2. 친불법적 사이버문화환경과 그 조절작용

#### 가. 친불법적 문화환경

개인의 성향이나 태도와 같은 미시요인이외에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사이버공간의 친불법적 문화와 같은 거시적 환경요인은 범죄행동을 설명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찍이 사회해체이론에서는 거시적 환경요인으로 지역환경적 특성이 범죄의 주

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Shaw and McKay, 1942). 그동안 사회해체이론은 집합효율성 논의로 발전되어 구성원들의 신뢰나 비공식통제가 범죄의 설명요인으로 주목받아 왔지만(Sampson et al., 1997), 하위문화의 논의에서와 같이 친불법적 문화가 존재하는 정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Anderson, 1999), 실제로 인터넷이용공간에서는 집합효율성과 같은 통제적 요인이외에 범죄행동을 유발하고 학습할 수 있는 친불법적 거시환경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논의가 있다(Tompsen, 1996; 이성식, 2012, 2013). 예를 들어 이성식(2012)의 인터넷에서의 악성댓글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집합효율성보다도 문화환경요인이 더 큰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거시적 환경요인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했고, SNS에서의 범죄연구(이성식, 2013)에서도 문화환경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익명의 그리고 더 확대된 네트워크에서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간에 다양한 가치가 혼재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범위반의 친불법적 문화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는데 그것은 개인의 범죄행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이 이용하는 사이버공간에 친불법적 문화의 정도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하는 거시환경적 요인은 범죄를 설명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 나. 그 조절작용

그런데 그러한 거시문화환경은 개인의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독립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원인들의 작용을 촉진하는 조절변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상황행위이론(Wikström, 2004, 2010)에서는 개인의 범죄행위 설명에 있어서 개인요인과 환경요인 모두를 함께 고려하면서 개인요인과 환경요인들의 상호작용과정을 강조했는데, 개인요인은 범죄경향성(criminal propensity)으로, 환경요인은 범죄환경(criminogenic settings)으로 언급하면서, 어떤 범죄경향성을 갖는 행위자가 어떤 환경여건에서 범죄라는 대안을 지각하고 선택하는지의 지각-선택 과정을 통해 범죄행위를 한다고 했다. 이때 주요 범죄경향성으로 낮은 자기통제력과 도덕성(혹은 범죄용인태도)을 제시했다.

앞서 본 연구에서 주요 요인으로 제시한 낮은 자기통제력은 독립적으로도 작용하지만 친불법적 문화에서 더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기존 연구들에서 Wright와 동료들(1999)은 낮은 자기통제력의 사람이 비행친구와 사귄 때 비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회

증진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했고 그와 같은 연구는 상황행위이론을 검증했던 연구들에서도 지지된다(Hirtenlehner et al., 2015; Hirtenlehner and Hardie, 2016). 그러한 연구들은 사이버범죄연구에서도 제시되는데(Higgins et al., 2007; Holt et al., 2012), 낮은 자기통제력의 사람이 친불법적 문화환경에서 범위반자와 접촉할 경우 사이버범죄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더 나아가 낮은 자기통제력과 거시적 문화환경은 상호작용하여 사이버범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제시된다(이성식, 2012).

거시적 친불법적 문화환경요인은 낮은 자기통제력 이외에 범죄용인태도와 같은 요인들과도 함께 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태도와 거시적 하위문화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지만 친범죄적 태도는 비행친구 등 환경요인과 상호작용효과를 갖는다고 하듯이(이성식, 2019) 좀 더 거시적인 하위문화 환경에서도 더 크게 범죄설명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범위반 태도를 갖는 사람들도 범위반을 허용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기 쉽지 않지만 범위반이 허용되는 하위문화가 존재하는 사이트나 그러한 SNS에서는 더 더욱 어려움 없이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실제로 Antonaccio 와 동료들(2017)은 낮은 자기통제력과 범죄용인태도(도덕성)의 개인범죄성향과 거시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자기통제력과 거시환경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범죄용인태도와 거시요인과는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했음을 제시했다. 또한 이성식(2015)은 사이버범죄 설명에서 사회학습요인들이 거시적 하위문화환경에서 더 통합적으로 작용하는지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는데 범죄용인태도와 하위문화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을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범죄기회요인도 친불법적 문화환경과 함께 작용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상황행위이론에서도 논의된 바 없고 그동안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위문화환경과 범죄기회는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상호작용할 것으로 본다. 즉 불법적 환경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적 기회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범죄를 하지 않겠지만 그 여건이 갖추어질 때 더욱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고 범죄기회가 있더라도 범죄를 허용하지 않는 문화에서보다 그것을 허용하는 불법적 문화환경에서 범죄를 더 하게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존에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과 기회요인은 상호작용효과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듯이(Haynie and Osgood, 2005; Lee et al., 2020), 기회요인은 하위문화환경과 통합하여 작용할 수 있다. 즉 행위자는

범죄기회가 높을 때 더구나 그가 활동하는 환경이 친법적 문화환경일 때 사이버범죄를 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 Ⅲ. 연구가설과 연구방법

#### 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 세 요인을 제시하고 이 세 요인이 사이버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논의들에 따라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Higgins and Wilson, 2006; 이성식, 2006; 정혜원, 2010), 사이버범죄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를 가질수록(Higgins and Wilson, 2006), 이성식, 2006; Boulton et al., 2012)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가 많을수록(이성식, 2014) 사이버범죄를 더 저지를 것이며,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는 사이버범죄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한다.

가설 1-1: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사이버범죄를 더 저지를 것이며 낮은 자기통제력은 사이버범죄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가설 1-2: 사이버범죄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사이버범죄를 더 저지를 것이며 사이버범죄용인태도는 사이버범죄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가설 1-3: 사이버범죄기회가 많을수록 사이버범죄를 더 저지를 것이며 사이버범죄기회는 사이버범죄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나 온라인 환경의 문화가 친법적일수록 그러한 환경이 사이버범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그러한

친불법적 사이버문화환경은 조절변인이 되어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 세 요인과 함께 작동할 것이라고 보며, 따라서 낮은 자기통제력과 친불법적 사이버문화환경(Higgins et al., 2007; Holt et al., 2012; 이성식, 2012), 사이버범죄용인태도와 친불법적 사이버문화환경(Antonaccio et al., 2017; 이성식, 2015),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와 친불법적 사이버문화환경(Lee et al., 2020)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한다.

가설 2-1: 낮은 자기통제력과 친불법적 사이버문화환경은 사이버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정(+)적인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 사이버범죄용인태도와 친불법적 사이버문화환경은 사이버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정(+)적인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3: 사이버범죄기회와 친불법적 사이버문화환경은 사이버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정(+)적인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이다.

##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에서의 사이버범죄에 대해 다루기로 하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 자료는 2018년 서울시에 재학중인 5개 대학의 대학생을 조사한 것으로 각 학교에서 성과 학년을 할당하여 60여명씩 총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부적절한 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2명을 제외한 301명을 최종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사이버범죄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행동으로 정의하며 기존의 논의들에 따라 여러 유형의 사이버범죄를 통해 측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상에서 사이버범죄를 다루기로 하는데, 이에 폭력 및 성관련범죄, 온라인이용 재산범죄, 그리고 침해형범죄 등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이버범죄 항목으로 1) 욕설/비방/허위사실유포 2) 성희롱 3) 스토킹, 4) 사기/재물훔치기 5)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혹은 이용 6) 음란물사이트 운영 혹은 이용 7) 저작물 업로드나

무단이용 8) 해킹으로 인한 정보침해나 악성코드 유포 등 여덟 항목에 대해 지난 1년간 스마트폰 이용 중의 경험을 알아보기로 하는데, 위의 각각의 경우로 “없음”과 “있음”에 응답하도록 하고 0-1점을 부여한 후 이것을 합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기존의 연구에 따라(Grasmick et al., 1993), 충동성, 위험추구성, 단순작업추구성, 활동성, 이기성, 화기질 등 여섯 특성에 대해 두 문항씩의 질문을 하였는데, 예컨대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와 같은 총 열두 개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이들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alpha=.832$ ).

또 다른 독립변인으로 사이버범죄용인태도는 위의 사이버범죄 여덟 항목에 대해 각각 그것을 위반하는 것은 옳지 않고 나쁘다고 생각하는지의 질문에 “전혀 나쁘지 않다”에서 “매우 나쁘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고 역으로 부호화한 후 합산했다( $\alpha=.957$ ).

사이버범죄기회는 스마트폰 이용 중에 범죄기회의 인지도로 “나는 스마트폰 이용 중에 사이버범죄를 할 기회가 많은 편이다”, “나는 스마트폰 이용 중에 사이버범죄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 이용 중에 사이버범죄를 나를 드러 내지 않고 숨길 수 있다” 등의 세 문항을 질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 후 합산하였다( $\alpha=.894$ ).

본 연구에서 조절변인으로 사용할 친불법적 사이버문화환경은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용환경에서 사이버범죄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지의 문화환경에 대해 인지 하는 정도로 질문했는데,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서비스상에서 범위반은 흔한 일이다”,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서비스상에서 범위반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서비스상에서 범위반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등의 세 문항을 질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 후 합산하였다( $\alpha=.945$ ).

본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통제변인으로 성은 여성(=0)과 남성(=1)을, 연령은 태어난 연도를 묻고 연령으로 재부호화를 했다.

## IV. 분석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1>에 제시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성은 남성이 149명(49.5%), 여성이 152명(50.5%)이었다. 연령은 18-28세 범위에서 평균이 21.48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12-60범위에서 평균값이 35.173으로 중간보다 다소 낮았고, 사이버범죄용인태도는 8-40범위에서 평균값이 11.183으로 그 점수가 매우 낮아 대부분 그것을 용인하지는 않는 것을 제시했다. 사이버범죄기회는 3-15범위에서 평균값이 9.037으로 중간보다는 약간 높았다. 본 연구에서 조절변인으로 사용할 친불법적 사이버문화환경은 3-15범위에서 평균값이 9.445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이버범죄는 여덟항목의 합 0-8범위에서 평균값이 .60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1> 주요 요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         | 명   | %    | 평균     | 표준편차  | 범위    |
|---------|-----|------|--------|-------|-------|
| 성 남성    | 149 | 49.5 |        |       |       |
| 여성      | 152 | 50.5 |        |       |       |
| 연령      |     |      | 21.480 | 2.073 | 18-28 |
| 낮은자기통제력 |     |      | 37.173 | 7.573 | 12-60 |
| 범죄용인태도  |     |      | 11.183 | 4.274 | 8-40  |
| 범죄기회    |     |      | 9.073  | 3.487 | 3-15  |
| 친불법문화   |     |      | 9.445  | 3.088 | 3-15  |
| 사이버범죄   |     |      | .601   | 1.260 | 0-8   |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로 우선 <표 2>에서는 주요 독립변인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영향의 다중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주요 세 변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사이버범죄용인태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가장 높아  $p<.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했고, 그 다음으로 사이버범죄기회가  $p<.001$ 수준에서,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이  $p<.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제시했다. 즉 이 결과는 사이버범죄를 용인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사이버범죄기회가 많

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사이버범죄를 더 저지른다는 것을 제시해, 가설 1-1부터 가설 1-2, 가설 1-3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배경변인으로 성과 연령이  $p<.05$ 수준에서 유의미했고, 남성이, 그리고 연령이 많은 대학생이 사이버범죄를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이버범죄에 대한 주요 세 요인들의 영향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
|---------|-----------|---------|
|         | 사이버범죄     |         |
|         | b         | $\beta$ |
| 남성      | .249*     | .099    |
| 연령      | .058*     | .095    |
| 낮은자기통제력 | .023**    | .139    |
| 범죄용인태도  | .139***   | .472    |
| 범죄기회    | .076***   | .209    |
| R제곱     | .432      |         |
| F값      | 44.498*** |         |

\* $p<.05$ ; \*\* $p<.01$ ; \*\*\* $p<.001$

본 연구의 주요 세 변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와 조절변인으로 친불법적 사이버문화와의 상호작용효과를 알기 위한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된다. 그 결과 세 변인 모두 친불법적 사이버문화와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이버범죄용인태도와 친불법적 사이버문화와의 상호작용효과가  $p<.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이버범죄기회와 친불법적 사이버문화와의 상호작용효과는  $p<.01$ 수준에서 정(+)적으로,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과 친불법적 사이버문화와의 상호작용효과는  $p<.05$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결과는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는 독립적으로도 사이버범죄에 영향을 갖지만 친불법적 사이버문화의 환경에서 사이버범죄에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가설 2-1부터 가설 2-2, 가설 2-3을 지지하는 것을 제시한다.

〈표 3〉 사이버범죄에 대한 주요 세 요인들과 사이버문화환경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
|---------|-----------|---------|
|         | 사이버범죄     |         |
|         | b         | $\beta$ |
| 남성      | .145      | .057    |
| 연령      | .065*     | .106    |
| 낮은자기통제력 | .022**    | .133    |
| 범죄용인태도  | .099***   | .335    |
| 범죄기회    | .057**    | .159    |
| 친불법문화   | .053*     | .131    |
| 낮자×불법문화 | .006*     | .121    |
| 태도×불법문화 | .017***   | .202    |
| 기회×불법문화 | .012**    | .136    |
| R제곱     | .530      |         |
| F값      | 36.280*** |         |

\*p<.05; \*\*p<.01; \*\*\*p<.001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 세 요인을 제시하고 이 세 요인이 사이버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친불법적 사이버문화환경이 사이버범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면서 무엇보다 그러한 친불법적 사이버문화환경은 조절변인이 되어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 세 요인과 함께 작동할 것이라고 보며, 세 요인이 친불법적 사이버문화환경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했고 이를 검증하고자 했다.

서울시 대학생 대상의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주요 세 변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사이버범죄를 용인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사이버범죄기회가 많을수록 사이버범죄를 더 저지른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이버범죄용인태도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사이버범죄기회,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이 그 다음으로 유의미한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는 조절변인으로 친불법적 사이버문화와 모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갖는 것을 제시했다. 즉 이 결과는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범죄용인태도, 그리고 사이버범죄기회는 독립적으로도 사이버범죄에 영향을 갖지만 친불법적 사이버문화의 환경에서 사이버범죄에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이버범죄용인태도와 친불법적 사이버문화와의 상호작용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사이버범죄기회,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과 친불법적 사이버문화와의 상호작용효과 순으로 유의미한 것을 제시했다.

본 연구결과 주요 세 요인들이 충분히 사이버범죄를 잘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이버범죄의 특성으로 익명성과 관련하여 선택한 주요 요인들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쉽다는 점, 사이버상에서는 범죄를 더 용인하며 또한 평소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점, 그리고 그만큼 범죄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낮은 자기통제력, 태도, 기회요인을 선정했는데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일정 규범이 부재하여 친불법적 범위반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이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고 더구나 그러한 문화가 앞서 주요 원인들과 함께 그 작용을 촉진하는 요인임을 확인했고 이와 같이 요인들의 미시와 거시의 통합론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주로 미시적 개인요인들에 주목했지만 이처럼 사이버문화의 거시적 환경요인도 주목해야 할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그 대책에서 필요한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사이버문화 등의 요인은 그 요인이 거시환경적 요인임에도 개인이 생각하는 측면으로 측정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그 요인들의 작용이 범죄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사이버범죄 유형 혹은 범죄별로 연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바 앞으로는 보다 더 미시요인들과 거시요인들을 통합하는 통합론적 논의가 더 활발했으면 한다. 또한 개인미시적 대책이외에 거시환경에 대한 대책도 더욱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 참고문헌

- 남상인, 권남희. (2013). “청소년 사이버범죄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미래청 소년학회지, 10(3): 23-43.
- 성동규, 김도희, 이윤석, 임성원. (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보, 19: 79-129.
- 이성식. (2006). “중학생 오프라인과 온라인 폭력 원인모색을 위한 주요 요인들의 작용”. 한국청소년학연구, 13(6): 179-200.
- 이성식. (2012). “인터넷 악성댓글에 있어 낮은 자기통제력과 인터넷사이트 환경요인의 조건적 작용과 그 남녀 차이”. 형사정책, 24(3): 163-185.
- 이성식. (2013).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의 불법행동과 그 원인으로 사회자본과 그 쟁점: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비교”. 형사정책연구, 24(2): 261-290.
- 이성식. (2014). “대학생의 사이버일탈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주요 네 이론에서 요인들 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4: 145-168.
- 이성식. (2015). “SNS상의 범죄행위 설명에 있어 사회학습이론과 보완적 논의의 검증”. 정보화정책, 22(4): 91-104.
- 이성식. (2017). 사이버범죄학: 원인. 유형. 대책(개정판). 그린.
- 이성식. (2019). “사이버범죄를 위한 상황행위이론의 확대적 그리고 대안적 논의의 적용 과 논쟁”. 형사정책연구, 30(3): 1-26.
- 정혜원. (2010). “청소년단계에서 사이버비행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일반긴장이론. 자기 통제이론. 비행기회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2): 263-288.
- Akers, R.L. (1985).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3rd Edition. Belmont, CA: Wadsworth.
- Anderson, E. (1999). *Code of the Streets: Decency, Violence, and the Moral Life of the City*. W.W. Norton & Company, New York.
- Boulton, M., J. Lloyd, J. Down, & H. Marx. 2012. “Predicting Undergraduates’ Self-reported Engagemnting Traditional and Cyber-bullying from Attitude”.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5:

141-147.

- Buzzell, B., Foss, D. & Middleton, Z. (2006). "Explaining Use of Online Pornography: A Test of Self-Control Theory and Opportunities for Devia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nd Popular Culture*, 13: 96-116.
- Gibbs, J.J. & Giever, D. (1995). "Self-control and Its Manifesta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An Empirical Test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ustice Quarterly*, 12: 231-245.
- Gottfredson, M.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G., Tittle, C.R., Burski, R.J. & Arneklev, B.K.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 Haynie, D. & Osgood, D.W. (2005). "Reconsidering Peers and Delinquency: How do Peers Matter?". *Social Forces*, 84(2): 1109-1130.
- Higgins, G., Fell, B. & Wilson, A. (2007). "Low Self-Control and Social Learning in Understanding Student's Intentions to Pirate Movie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5(3): 339-357.
- Higgins, G.E. & Wilson, A.L. (2006). "Low Self-Control, Moral Beliefs and Social Learning Theory in University Student's Intentions to Pirate Software". *Security Journal*, 19: 75-92.
- Hindelang, M.S., M.R. Gottfredson, & J. Garofalo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Cambridge. MA: Ballinger.
- Hirtenlehner, H., Pauwels, L., & Mesko, G. (2015). "Is the Criminogenic Effect of Exposure to Peer Delinquency dependent on the Ability to exercise Self-Control? Results from Three Countri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3: 532-543.
- Hirtenlehner, H. & Hardie, B. (2016). "On the Conditional Relevance of Controls: An Application of Situational Action Theory to Shoplifting".

- Deviant Behavior*, 37(3): 315-331.
- Holt, T. & A. Bossler (2009). "Examining the Applicability of Lifestyle-Routine Activities Theory for Cybercrime Victimization". *Deviant Behavior*, 30: 1-25.
- Holt, T., Bossler, A. & May, D.C. (2012). "Low Self-control, Deviant Peer Associations and Juvenile Cyber Deviance".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2): 378-395.
- Joinson, A.N. (2003). *Understanding the Psychology of Internet Behavior*. Palgrave McMillian.
- Krohn, M.D., Skinner, W.F., Massey, J.L. & Alers, R.L. (1985). "Social Learning Theory and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A Longitudinal Study". *Social Problem*, 32: 455-473.
- Lee, S.S., H.Y Jang, & J.S. Park. (2020). "A Comprehensive Explanation of Three Factors in Cyberbullying with Smartphone".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1): 95-114.
- Marcum, C.D., G.E. Higgins, & M.L. Ricketts (2010). "Potential Factors of Online Victimization of Youth: An Examination of Adolescent Online Behaviors Utilizing Routine Activity Theory". *Deviant Behavior*, 31: 381-410.
- Matsueda, R.L. (1982). "Testing 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A Causal Modeling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489-504
- Pratt, T.C. & Cullen, F.T. (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 931-64.
- Reyns, B.W., B. Henson & B.S. Fisher. (2011), "Being Pursued Online: Applying Cyberlifestyle-Routine Activities Theory to Cyberstalking Victimizatio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8: 1149-1169.
- Sampson, R.J., Raundenbush, S. &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 Shaw, C.R. & McKay, H.D.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kinner, B.F. & Fream, A.M. (1997). “A Social Learning Theory Analysis of Computer Crim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 495-518.
- Thompsen, P.A. (1996). “Whats Fueling the Flames in Cyberspace? A Social Influence Model”. In S. Lance, R. Jacobson, & S.B. Gibson(eds), *Communications and Cyberspace*. New Jersey: Hampton Press.
- War, M. & Stanfford, M. (1991). “The Influence of Delinquent Peer: What They think or What They do?”. *Criminology*, 29: 851-866.
- Wright, B.R., Capsi, A. & Silva, P.A. (1999). “Low Self-Control, Social Bonds, and Crime: Social Causation, Social Selection, or Both?”. *Criminology*, 37: 479-514.

## The Moderating Effect of Pro-Cybercrime Culture in the Effects of Three Major Explanatory Factors on Cybercrime

Lee Seong-Sik\*

This study suggests three major causal factors such as low self-control, attitude toward cybercrime, and opportunity of cyber crime in explaining cybercrime and examines those effects on cybercrime. In addi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 of pro-cybercrime culture on cybercrime and tests its moderating interaction effects between each low self-control, attitude toward cybercrime, and opportunity of cyber crime and cybercrime. Using data from college students in Seoul, results show that low self-control, attitude toward cybercrime, and opportunity of cyber crime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ybercrime. It is shown that the effect of attitude toward cybercrime among them is strongest and the effect of opportunity is next. Furthermore, consistent with my hypotheses, it is revealed that all moderating interaction effects between each low self-control, attitude toward cybercrime, and opportunity of cyber crime and cybercrime.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attitude toward cybercrime and pro-cybercrime culture on cybercrime is strongest. They implies that low self-control, attitude toward cybercrime, and opportunity have more significant effects on cybercrime when pro-cybercrime culture is high.

❖ Key words: cybercrime, low self-control, attitude toward cybercrime, opportunity of cyber crime, pro-cybercrime culture

|                                                |
|------------------------------------------------|
| 투고일 : 11월 1일 / 심사일 : 12월 22일 / 게재확정일 : 12월 22일 |
|------------------------------------------------|

---

\*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 직무위험인식과 조직냉소주의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업무량에 대한 다집단 분석

박은사\* · 김승현\*\*

## 국 | 문 | 요 | 약

경찰조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냉소주의는 조직혁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연구는 현장경찰관의 조직냉소주의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개입을 통한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연구설계에 있어 현장경찰관이 인지하는 직무위험성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조직냉소주의로까지 이어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추가적으로 직무위험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업무량과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일 것이라 가정하고 변수 간 관계에 있어 업무량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의 직무위험인식이 증가할 경우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아지며 이는 조직냉소주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업무량이 많은 경찰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조직냉소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와 업무량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현장경찰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인프라를 확장하여 직무위험에 근거한 스트레스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료지지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하여 경찰이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보편적인 업무환경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2.12.31.4.91>.

❖ 주제어 : 직무위험인식, 조직냉소주의, 직무스트레스, 현장경찰, 다집단분석

\* 주저자,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수료

## I. 서론

경찰은 여러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는 경찰직무의 목적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사명을 다하지 않은 경찰에게는 법적·도덕적 책임과 함께 사회적 비난이 뒤따른다. 잘못된 판단으로 시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경찰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 사회는 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경찰에게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한다<sup>1)</sup>.

그러나 경찰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경찰의 임무에는 늘 위험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항시 대비하고 있음에도 범죄 현장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이 상존한다. 특히 현장경찰관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요인을 극복하고 본인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숙련된 경찰에게조차 현장의 예기치 못한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위험요인들은 경찰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sup>2)</sup>.

실제로 2013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으로 나타났다. 동 기관이 수행한 2015년 조사에서는 730개의 직업 중 ‘불쾌한 사람을 응대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직업’으로 확인되었다. 비단 현재의 경찰만이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경찰이 느끼는 극심한 스트레스 수준은 여러 연구들로부터<sup>3)</sup> 경험적으로 규명되어 왔다. 다수의 조직구성원의 스트레스 수준이 과도할 경우 조직차원에서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공공조직에서 구성원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암묵적이고 표출되지 않는 조직냉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sup>4)</sup>. 조직냉소주의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1) Wolfe, S. E., & Piquero, A. R. (2011). “Organizational justice and police misconduc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8(4), pp.332-353.

2) 조현빈·박준기. (2021). “경찰공무원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연구-경찰복지법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1), pp.183-202.

3) Selye, H. (1978). *Stress, cancer, and the mind. Cancer, stress, and death* (pp. 11-19) Springer. ; Violanti, J. M., Marshall, J. R., & Howe, B. (1985). “Stress, coping, and alcohol use: The police connection”. *Journal of Police Science & Administration*, 13, pp.106-110.

열정이나 주인의식을 잃고 반감을 갖게 되는 상태로서, 경찰과 같은 공공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sup>5)</sup>. 현재 경찰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신입 경찰에게서 냉소주의가 만연해있으며, 이는 조직의 혁신과 조직의 발전에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는 장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sup>6)</sup>.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장경찰관의 조직냉소주의를 설명함에 있어 직무위험인식과 직무스트레스에 주목하였다. 현장경찰관이 인지하는 직무위험성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조직냉소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해당 관계에 대한 업무량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현장경찰관 업무의 대부분이 사건 해결에 있음을 고려했을 때 평균 사건발생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현장경찰관들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현장경찰관 평균 업무량을 기준으로 표본이 수집된 7개 경찰서(강북·동작·방배·수서·종암·중부·혜화)의 업무량을 집단 구분하여 다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조직냉소주의의 개념 및 중요성

고대 그리스에서 냉소주의(Cynicism)는 해당 시기에 냉소주의란 조직이 아닌 개인을 자연스러운 삶의 단위로 믿으며 사회제도조차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철학이었다<sup>7)</sup>. 사회제도는 부당하다는 냉소주의자들의 주장이 수 세기에 걸쳐 이어지며 냉소주의의 의미에는 부정성이 강해졌다. 현재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Cynicism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맥락에서 냉소주의는

4) 강리경·김선혁. (2017).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계약 위반의 매개효과”, *인적자원개발연구*, 20(1), pp.125-156.

5) 박성수. (2014). “경찰조직 구성원간의 침묵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조직냉소주의의 매개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3(3), pp.81-108.

6) 박재풍. (2021). *한국경찰의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패널조사 IV-2. 치안정책연구소*.

7) Dean Jr, J. W., Brandes, P., & Dharwadkar, R. (1998). “Organizational cynicism”.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2), pp.341-352.

이상주의의 반대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냉소주의자들은 이상주의자와는 반대로 행동의 결과에 대해 늘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곤 한다<sup>9)</sup>.

조직냉소주의(Organization Cynicism)는 이러한 냉소주의의 개념에 근거하여 정의된다. Niederhoffer(1967)는<sup>10)</sup> 경찰의 조직냉소주의에 대해 “역할모호성과 업무의 전문화의 상충에서 비롯된 아노미의 결과”로 설명했다. Kanter & Mirvis(1989)는<sup>11)</sup> 냉소주의를 타인 또는 조직에 대한 무관심과 단념 또는 절망과 같은 부정적 태도로 정의하였고 그러한 냉소주의가 조직 속에서 발현된 것을 조직냉소주의라 정의했다. Dean et al.(1998)은 조직냉소주의를 믿음(Belief)과 감정(Affect) 그리고 행동(Behavior)에 근거하여 개념화하고 있다. 믿음은 조직의 관행이 공정성, 정직성, 성실성과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조직에 대해 냉소적인 사람들은 조직에서 비양심적이고 비합리적인 관행들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믿고 있다. 감정은 냉소주의의 대상에 대한 감정을 의미한다<sup>12)</sup>. 냉소주의는 조직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다. 즉, 조직에 대해 냉소적인 사람들은 조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행동은 조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폄하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조직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과 더불어 냉소와 비웃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조직냉소주의에 대한 Dean과 동료들(1998)의 연구에 근거한다면 조직에 대한 경찰관의 냉소주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경찰조직의 공정성과 정직성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여 조직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것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직해야 하는 경찰에게 조직에 대한 불신은 직업가치관 및 직무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직에 대한 불신은 경찰조직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 감정에 일조한다.

8) Stevenson, A. (2010). cynicism.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 Oxford University Press. 검색일자 2022.12.26

9) Graves, W. (1996). “Police cynicism: Causes and cures”. *FBI L.Enforcement Bull.*, 65(6), pp.16-20.

10) Niederhoffer, A. (1967). *Behind the shield: The police in urban society*. Doubleday Garden City.

11) Mirvis, P., & Kanter, D. L. (1989a). “Combating cynicism in the workplace”. *National Productivity Review*, 8(4), pp.377-394.

12)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Kanter & Mirvis(1989)<sup>13)</sup>가 조직냉소주의를 정의내린 것처럼 조직에 대한 무관심과 단념 또는 절망과 같은 부정적 태도는 이러한 감정의 결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조직에 대한 비판과 냉소를 실제 표현으로 옮기게 된다. 조직냉소주의가 극심한 수준까지 다다르면 일부 경찰은 이직까지 고려하게 된다(박성수, 2016). 이처럼 조직냉소주의가 만연한 경우 경찰조직 전반적인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을 넘어 조직운영에까지 극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조직냉소주의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개입을 통해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경찰의 직무위험의 개념 및 중요성

시대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경찰의 직무환경은 극적으로 변화한다. 시대의 흐름은 새로운 범죄유형은 만들고 그에 따라 경찰활동의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 사회적 배경에 따라 경찰이 활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은 달라진다. 경찰의 물리력 수준은 대치자의 물리력 수준을 상정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높은 경찰물리력 수준은 경찰에게 예견된 높은 위험을 의미한다. 직무환경의 변화는 언제나 경찰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부여하며 이러한 상황에는 항상 위험이 전제되어 있다. 직무특성 상 경찰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경찰과 일반 부처의 공무원을 분명히 구분하는 직무특성이다. 직무위험은 업무환경의 위험과 물리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업무환경의 위험’은 재난현장, 사고현장, 예측 불가능한 상황업무와 같은 환경적 요인을 의미하고, ‘물리적 위험’은 직무수행과정에서 가해지는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 상해, 정신적 불안 등 개인이 인식하는 물리적·심리적 위험을 의미한다<sup>14)</sup>. 각 유형의 위험은 시시각각 경찰에게 위협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경찰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위험은 사건의 용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서도 유발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연평균 500여 건의 경

13) Mirvis & Kanter, 앞의 논문.

14) 정지수·최혜민. (2020).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직무위험과 직무압박,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내재적 동기의 영향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8(3), pp.236-269.; Jermier, J. M., Gaines, J., & McIntosh, N. J. (1989). “Reactions to physically dangerous work: A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0(1), pp.15-33.

찰에 대한 범인피습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2022년 1월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9개월 간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6,651건 중 6,273건이 경찰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 즉, 실제 현장에서 경찰은 사건의 용의자보다 일반시민으로부터 직무로 인한 물리적 위협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무특성에 근거한 위험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러한 위험은 경찰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지속적인 피해를 끼친다. 직무위험이 유래한 불안에 대해 경찰은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는 있지만 결코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다(Van Maanen, 1974). 부상과 죽음에 대해 대한 두려움은 경찰활동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불안과 긴장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동료 경찰의 부상 또는 사망도 경찰에게 극심한 괴로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5)</sup>. 이처럼 직무위험에 대한 경찰의 인식은 전반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초래하게 되므로 경찰의 직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면에서의 개입이 요구된다.

### 3. 경찰의 직무스트레스의 개념 및 현황

스트레스(Stress)는 ‘팽팽하다’, ‘좁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Strictus*, *Stringere*에서 유래되어, 어떤 물체에 가해진 외부적인 힘으로부터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에서 발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오늘날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있으나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수준이 과도할 경우에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이항우·최응렬·정우일, 2007). 스트레스는 불안과 분노와 같은 감정에 영향을 미쳐 심리적인 긴장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부정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sup>16)</sup>. 또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은 개인 수준을 넘어 조직 수준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Violanti & Aron, 앞의 논문, Spielberger, C. D., Westberry, L. G., Grier, K. S., & Greenfield, G. (1981). *The police stress survey: Sources of stress in law enforcement*.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Washington, DC.

16) 조성호. (2015).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요인이 직무소진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격특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경찰학회보, 17(4), pp.185-212.

경찰의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는 조직문화, 업무체계, 직무특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제시되어 왔다<sup>17)</sup>. 경찰의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객관적인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누적되어 온 결과이다. 경찰의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에는 교대 근무체계 및 야간 근무와 같은 업무환경이 속한다. 두 번째 범주에는 직무와 관련된 여러 위험요인이 포함된다.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은 경찰활동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직무 자체의 위험성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수직적 조직문화, 교대근무와 같은 경찰의 업무특성은 경찰관에게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좌절, 분노, 무기력, 우울 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sup>18)</sup>. Biggam과 동료들은<sup>19)</sup>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영향요인 중에서도 외부 환경적 요인보다는 직업 자체에 내재한 영향요인들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경찰 직무에 내재한 위험요인들은 전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스트레스가 체계적 관리되어야 하는 데는 여러 이유<sup>20)</sup>가 존재한다. 먼저, 경찰이 사회질서 유지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스트레스는 이러한 효율성을 저해한다. 또한 경찰의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시민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성공적인 경찰활동을 위해서는 시민의 협력이 반드시 요구되므로 경찰과 시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찰관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른 직종과 비교했을 때 경찰은 높은 물리적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경찰의 위협의 수준은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의 직무스트레스

- 
- 17) Stratton, J. B. (1978). "Police stress, part 1: An overview". *Police Chief*, 45(4), pp.58-62.; Reese, J. T. (1986). "Policing the violent society: The american experience". *Stress Medicine*, 2(3), pp.233-240.
  - 18) Gershon, R. R., Barocas, B., Canton, A. N., Li, X., & Vlahov, D. (2009). "Mental, physical, and behavioral outcomes associated with perceived work stress in police offic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6(3), pp.275-289.; Berking, M., Meier, C., & Wupperman, P. (2010). "Enhancing emotion-regulation skills in police officers: Results of a pilot controlled study". *Behavior Therapy*, 41(3), pp.329-339.
  - 19) Biggam, F. H., Power, K. G., Macdonald, R. R., Carcary, W. B., & Moodie, E. (1997). "Self-perceived occupational stress and distress in a scottish police force". *Work & Stress*, 11(2), pp.118-133.
  - 20) Manolias, M. (1983). "A preliminary study of stress in the police service". *London: Home Office Scientific and Development Branch Human Factors Group*.

에 주목하여 조직냉소주의와의 관계를 규명한다.

### Ⅲ.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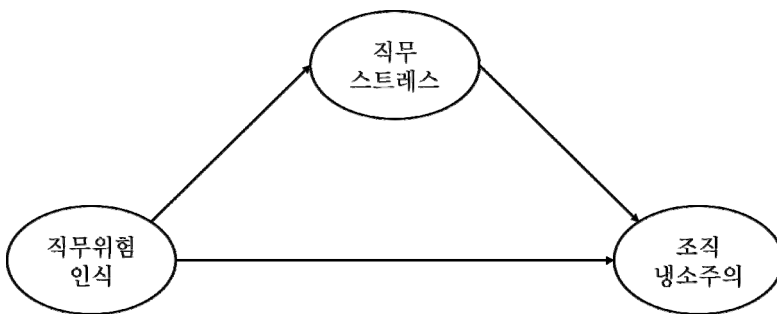
####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이 연구는 경찰의 직무위험인식이 조직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최근 6년간 서울경찰청의 경찰 1인당 범죄 발생 건수의 평균을 업무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에 따라 경로계수의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직무위험인식과 조직냉소주의의 관계를 직무 스트레스가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직무위험인식과 조직냉소주의의 관계에서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경찰 1인당 평균 범죄 발생건수에 대한 집단 차이가 존재하는가?

[그림 1] 연구 모형



## 2. 측정 도구

### 가. 조직 냉소주의

Brooks와 Vance(1991)<sup>21)</sup>가 개발하고 Tesluk, Farr, Mathieu, & Vance(1995)<sup>22)</sup>의 연구에서 사용한 조직냉소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칙도는 9문항이나, 경찰조직에 대한 조직냉소주의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다섯 개의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조직에서의 일상적인 업무 방식의 변경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조직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대개 실패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전체 척도의 총점은 5점부터 25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찰 조직이 개선되지 않고 경찰 조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살펴본 결과 .88로 기준 이상의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직무위험인식

Cullen, Lutze, & Wolfe(1989)<sup>23)</sup>와 Paoline & Gau(2020)<sup>24)</sup>의 연구에서 사용한 직무위험인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 직업은 다른 종류의 직업군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내 직업은 근무 중 다칠 가능성이 높다’, ‘나와 함께 일하는 많은 동료들이 근무 중에 신체적 부상을 당한다’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며 전체 척도의 총점은 3점부터 15점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총점이 높을수록 경찰들이 외부 근무 환경의 위험 수준과 업무 중 부상을 입을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Paoline & Gau(2020)<sup>25)</sup>의 연구에서 보고된 척도

21) Brooks, S. M., & Vance, R. J. (1991). "Organizational cynicism: Initial investigation of a construct". *Unpublished Manuscript*.

22) Tesluk, P. E., Farr, J. L., Mathieu, J. E., & Vance, R. J. (1995). "Generalization of employee involvement training to the job setting: Individual and situational effects". *Personnel Psychology*, 48(3), pp.607-632.

23) Cullen, F. T., Lutze, F. E., Link, B. G., & Wolfe, N. T. (1989). "The correctional orientation of prison guards: Do officers support rehabilitation". *Fed.Probation*, 53, pp.34-41.

24) Paoline III, E. A., & Gau, J. M. (2020).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sources of police job satisfaction". *Police Quarterly*, 23(1), pp.55-81.

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43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2이었다.

#### 다. 직무 스트레스

Crank, Regoli, & Manning(2003)<sup>26)</sup>의 연구에서 개발되고 Paoline & Gau(2020)<sup>27)</sup>의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는 업무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나는 업무 시간 중 좌절하거나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업무 중 종종 긴장감을 느낀다’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며 전체 척도의 총점은 3점부터 15점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총점이 높을수록 경찰들이 업무 중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Paoline & Gau(2020)<sup>28)</sup>의 연구에서 보고된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68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84였다.

#### 라. 업무량

업무량에 따라 경찰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위험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을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업무량은 각 경찰서의 경찰 1인당 범죄 발생 건수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업무량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최근 6년간(2015~2020년) 연도별 서울시경찰청의 사건(범죄) 발생 건수와 경찰 인력을 근거로 서울시 경찰 1인당 사건 발생 건수를 계산하였으며, 계산 식은 <수식 1>과 같다.

$$\text{경찰 1인당 사건 수} = \frac{\text{연간 전체 범죄 발생 건수}}{\text{관할서 내 경찰}} \quad \text{<수식 1>}$$

25) Paoline & Gau, 앞의 논문.

26) Crank, J. P., Regoli, R., Hewitt, J. D., & Culbertson, R. G. (1995).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antecedents of role stress, work alienation, and anomie among police executiv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2(2), pp.152-171.

27) Paoline & Gau, 앞의 논문.

28) Paoline & Gau, 앞의 논문.

서울시경찰청과 7개 경찰서의 연도별 사건 수와 1인당 사건 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최근 6년 동안 서울시경찰청의 경찰 1인당 사건 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경찰 1인당 사건 수는 경찰서 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량의 차이에 따라 관찰 경찰서별 경찰들이 직무 및 조직에 대하여 갖는 인식이 다를 것이라 예측하였다.

<표 1> 2015~2020년 강북·동작·방배·수서·종암·중부·혜화경찰서 및 서울시경찰청의 사건 수, 인원, 및 1인당 사건 수

|      |          | 강북<br>경찰서 | 동작<br>경찰서 | 방배<br>경찰서 | 수서<br>경찰서 | 종암<br>경찰서 | 중부<br>경찰서 | 혜화<br>경찰서 | 서울시<br>경찰청 |
|------|----------|-----------|-----------|-----------|-----------|-----------|-----------|-----------|------------|
| 2015 | 사건 수     | 10,781    | 10,602    | 4,676     | 12,672    | 5,281     | 7,897     | 6,211     | 356,572    |
|      | 인원       | 617       | 637       | 352       | 594       | 387       | 497       | 462       | 26,75      |
|      | 1인당 사건 수 | 17.47     | 16.64     | 13.28     | 21.33     | 13.65     | 15.89     | 13.44     | 13.62      |
| 2016 | 사건 수     | 10,265    | 9,296     | 4,486     | 12,130    | 4,875     | 7,555     | 6,440     | 343,097    |
|      | 인원       | 670       | 672       | 372       | 635       | 412       | 518       | 483       | 27,348     |
|      | 1인당 사건 수 | 15.32     | 13.83     | 12.06     | 19.10     | 11.83     | 14.58     | 13.33     | 12.55      |
| 2017 | 사건 수     | 8,980     | 8,952     | 4,051     | 11,485    | 4,651     | 6,858     | 5,613     | 320,168    |
|      | 인원       | 667       | 670       | 374       | 635       | 420       | 526       | 485       | 27,626     |
|      | 1인당 사건 수 | 13.46     | 13.36     | 10.83     | 18.09     | 11.07     | 13.04     | 11.57     | 11.59      |
| 2018 | 사건 수     | 9,385     | 8,870     | 4,404     | 11,625    | 4,000     | 6,214     | 4,869     | 309,000    |
|      | 인원       | 672       | 678       | 377       | 646       | 429       | 528       | 493       | 27,184     |
|      | 1인당 사건 수 | 13.97     | 13.08     | 11.68     | 18.00     | 9.32      | 11.77     | 9.88      | 11.37      |
| 2019 | 사건 수     | 10,084    | 9,191     | 4,085     | 11,081    | 4,613     | 6,683     | 5,060     | 309,268    |
|      | 인원       | 671       | 674       | 379       | 666       | 417       | 533       | 493       | 28,717     |
|      | 1인당 사건 수 | 15.03     | 13.64     | 10.78     | 16.64     | 11.06     | 12.54     | 10.26     | 10.77      |
| 2020 | 사건 수     | 8,196     | 8,529     | 3,558     | 10,406    | 3,880     | 5,877     | 4,300     | 279,354    |
|      | 인원       | 668       | 668       | 357       | 646       | 408       | 517       | 470       | 29,360     |
|      | 1인당 사건 수 | 12.27     | 12.77     | 9.97      | 16.11     | 9.51      | 11.37     | 9.15      | 9.51       |

##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요 변수들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으며,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의 직무위험인식이 조직냉소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업무량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 6년간 서울경찰청의 경찰 1인당 사건 수를 기준으로 각 경찰서를 상(평균 이상), 하(평균 이하)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별 연구모형을 비교하는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 내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에서 추정되는 모수가 집단 간에 동일성(동질성)이 성립되는지를 검증하는 통계적 방법이다<sup>29)</sup>. 집단 간 비교에 앞서 모형(측정 모형)이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측정모형 동일성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측정모형 동일성 검정은 3단계에 걸쳐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으로<sup>30)</sup>, 두 집단 간에 측정변수와 요인 간의 관계(측정 틀)가 같거나 유사하며, 두 집단 모두 적절한 수준의 합치도를 보이는지 검증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측정단위 동일성(metric invariance)으로<sup>31)</sup>, 이론변수 측정의 단위(unit of measurement<sup>32)</sup>)가 동일한지 검증한다. 여기서 이론변수 측정의 단위란 요인점수 1단위가 증가할 때 기대되는 측정변수 값의 변화로 요인계수( $\lambda$ )를 의미한다. 마지막 단계는 절편 동일성(scalar invariance)<sup>33)</sup> 검증 단계이다. 절편 동일성은 측정원점 동일성이라고도 하는데, 측정원점이란 이론변수가 0일 때 기대되는 측정변수의 값(절편)을 의미한다<sup>34)</sup>. 절편 동일성 검정을 통하여 요인의 척도상 “영점”이 동일한지 검증하게 된다. 각 단계별 모형들은 내재된 관계로, 모형 간  $X^2$  차이검정을 통하여 모형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의수준 .05에서 내재된 모형 간의  $\Delta X^2(\Delta df)$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경우 더 단순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만일 측정단위 동일성 및 절편 동일성 단계에서 영가설을 기각하게 될 경우 부분측정동일성 검증(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sup>35)</sup>을

29) 이순목·김한조. (2011). “구조방정식 모형의 일반화 또는 집단차 연구를 위한 다집단 분석의 관행과 문제점”, 사회과학, 43(1), pp.63-112.

30) Meredith, W. (1993). “Measurement invariance, factor analysis and factorial invariance”. *Psychometrika*, 58(4), pp.525-543.

31) Vandenberg, R. J., & Lance, C. E. (2000).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measurement invariance literature: Suggestions,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1), pp.4-70.

32)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Kenny, D. A. (1979). *Correlation and causality*. New York: Wiley.

33) Meredith, 앞의 논문

34) Jöreskog, K. G. (1971). “Simultaneous factor analysis in several populations”. *Psychometrika*, 36(4), pp.409-426.

실시한다. 부분측정동일성 검정은 집단 간 구조모형에서 추정되는 모수 중 일부만이 같다는 제약을 하는 것으로, 일부 모수가 집단 간에 다를 것을 가정하는 덜 엄격한 방법이다.

세 단계에 걸쳐 집단 간 측정모형의 동질성을 검정한 후 집단별 구조모형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구조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집단 간 경로를 비교하였다. 직무위험인식과 조직냉소주의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5,000번 반복 추출하는 bootstrapping을 통하여 추정된 경험적 분포의 95% 신뢰구간을 확인하였다.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빈도분석과 상관분석에는 SPSS 25.0을 사용하였으며, 다집단 분석에는 통계 프로그램 R과 lavaan 패키지를<sup>36)</sup> 사용하였다.

## IV. 분석 결과

###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가. 관할 경찰서별 경찰 1인당 평균 사건 수

앞서 제시한 최근 6년간 7개 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의 경찰 1인당 사건 수를 활용하여 경찰 1인당 평균 사건 수를 계산하였다. 서울경찰청의 최근 6년간 서울경찰청의 경찰 1인당 평균 사건 수는 11.57건이었다. 강북경찰서 14.59건, 동작경찰서 13.89건, 수서경찰서 18.21건, 중부경찰서 13.20건으로 서울경찰청보다 경찰 1인당 평균 사건 수가 많았다. 방배경찰서 11.43건, 종암경찰서 11.07건, 혜화경찰서 11.27건으로 서울경찰청보다 경찰 1인당 평균 사건 수가 적었다. 따라서 강북경찰서, 동작경찰서, 수서경찰서, 중부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들을 ‘상’ 집단으로, 방배경찰서, 종암경찰서, 혜화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들을 ‘하’ 집단으로 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상 집단은 263명, 하 집단은

35) Byrne, B. M., Shavelson, R. J., & Muthén, B. (1989). "Testing for the equivalence of factor covariance and mean structures: The issue of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105(3), 456.

36) Rosseel, Y. (2012). "Lavaan: An R package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8, pp.1-36.

204명의 경찰로 구성되었으며, 두 집단별 조직냉소주의의 영향요인을 비교할 것을 결정하였다.

〈표 2〉 강북, 동작, 방배, 수서, 종암, 중부, 혜화경찰서 및  
서울시경찰청의 최근 6년간 경찰 1인당 평균 사건 수 및 집단 구분

| 경찰서 분류   | n  | 경찰 1인당 평균 사건 수 | 서울시경찰청과의 비교 |
|----------|----|----------------|-------------|
| 강북경찰서    | 90 | 14.59          | 상           |
| 동작경찰서    | 71 | 13.89          | 상           |
| 방배경찰서    | 65 | 11.43          | 하           |
| 수서경찰서    | 47 | 18.21          | 상           |
| 종암경찰서    | 87 | 11.07          | 하           |
| 중부경찰서    | 55 | 13.20          | 상           |
| 혜화경찰서    | 52 | 11.27          | 하           |
| 서울시경찰청 계 | -  | 11.57          | -           |

#### 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X^2$  동질성 검정 및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상 집단 및 하 집단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집단별 성별의 빈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X^2(1)=0.26, p=.610$ ). 상·하 집단별 평균 연령은 각각 38.60( $SD=10.08$ )세, 38.55( $SD=9.89$ )세였으며, 집단별 평균 연령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455)=0.05, p=.958$ ). 상·하 집단별 평균 근무 기간은 각각 11.86( $SD=10.33$ )년, 11.82( $SD=10.03$ )년으로, 마찬가지로 집단별 근무 기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454)=0.04, p=.966$ ). 마지막으로 계급의 경우 상 집단은 경장( $n=64$ ), 하 집단은 경위( $n=59$ )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집단별 계급의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X^2(5)=5.25, p=.386$ ). 이를 통하여 두 집단 간에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3〉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 변수    | 값             | 상( <i>n</i> =263) |      |                        | 하( <i>n</i> =204) |      |                        | <i>t</i> / $\chi^2$ |
|-------|---------------|-------------------|------|------------------------|-------------------|------|------------------------|---------------------|
|       |               | 빈도                | %    | <i>M</i> ( <i>SD</i> ) | 빈도                | %    | <i>M</i> ( <i>SD</i> ) |                     |
| 성별    | 남자            | 213               | 81.0 |                        | 162               | 79.4 |                        | 0.26                |
|       | 여자            | 49                | 18.6 |                        | 42                | 20.6 |                        |                     |
| 연령    | 20대           | 46                | 17.5 | 38.60<br>(10.08)       | 39                | 19.1 | 38.55<br>(9.89)        | 0.05                |
|       | 30대           | 107               | 40.7 |                        | 82                | 40.2 |                        |                     |
|       | 40대           | 51                | 19.4 |                        | 39                | 19.1 |                        |                     |
|       | 50대           | 52                | 19.8 |                        | 38                | 18.6 |                        |                     |
|       | 60대           | 1                 | 0.4  |                        | 1                 | 0.5  |                        |                     |
| 근무 기간 | 1년 미만         | 4                 | 1.5  | 11.86<br>(10.33)       | 5                 | 2.5  | 11.82<br>(10.03)       | 0.04                |
|       | 1년 이상 5년 이하   | 85                | 32.3 |                        | 71                | 34.8 |                        |                     |
|       | 6년 이상 10년 이하  | 65                | 24.7 |                        | 43                | 21.1 |                        |                     |
|       | 11년 이상 20년 이하 | 45                | 17.1 |                        | 35                | 17.2 |                        |                     |
|       | 21년 이상 30년 이하 | 37                | 14.1 |                        | 29                | 14.2 |                        |                     |
|       | 31년 이상        | 21                | 8.0  |                        | 16                | 7.8  |                        |                     |
| 계급    | 순경            | 63                | 24.0 |                        | 34                | 16.7 |                        | 5.25                |
|       | 경장            | 64                | 24.3 |                        | 44                | 21.6 |                        |                     |
|       | 경사            | 45                | 17.1 |                        | 39                | 19.1 |                        |                     |
|       | 경위            | 63                | 24.0 |                        | 59                | 28.9 |                        |                     |
|       | 경감            | 25                | 9.5  |                        | 24                | 11.8 |                        |                     |
|       | 경정            | 1                 | 0.4  |                        | 1                 | 0.5  |                        |                     |

\**p*<.05 \*\**p*<.01 \*\*\**p*<.001

2.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

집단별 주요 변수들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고 집단별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상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조직냉소주의를 보이는 경찰은 높은 수준의 직무위험인식( $r=.25, p<.001$ )과 직무스트레스( $r=.42, p<.001$ )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 조직냉소주의는 직무스트레스와의 정적 상관관계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28, p<.001$ ), 이는 높은 수준의 조직냉소주의를 보이는 경찰은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직무위험인식과 직무스트레스와의 정적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18, p=.010$ ). 즉, 높은 수준의 직무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경찰은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집단별 조직냉소주의, 직무위험인식, 직무스트레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

|        |           | 조직냉소주의 | 직무위험인식 | 직무스트레스 |
|--------|-----------|--------|--------|--------|
| 조직냉소주의 |           | 1      | .25*** | .42*** |
| 직무위험인식 |           | .12    | 1      | .23*** |
| 직무스트레스 |           | .28*** | .18*   | 1      |
| 상      | <i>M</i>  | 2.78   | 3.97   | 2.96   |
|        | <i>SD</i> | 0.82   | 0.62   | 0.84   |
| 하      | <i>M</i>  | 2.74   | 3.93   | 3.07   |
|        | <i>SD</i> | 0.75   | 0.67   | 0.74   |

Note. 대각선 위는 상 집단, 대각선 아래는 하 집단을 의미함.

\* $p<.05$  \*\* $p<.01$  \*\*\* $p<.001$

### 3. 다집단 분석

#### 가. 측정불변성 검증

집단별 다집단 분석에 앞서 모형의 측정불변성 검증(measurement invariance test)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집단 간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을 검증하였다(모형 1). 추정 결과 모형에 대한  $X^2$ 은 5% 유의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였으나( $X^2(64)=95.50, p=.007$ ), 합치도 지수(CFI=.986, TLI=.980, RMSEA=.046, SRMR=.047)가 기준 이상으로 나타나 집단 간 형태동일성이 성립됨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집단 간 측정단위 동일성(metric invariance)을 검증하였다(모형 2). 모형 1과의 차이 검증에 대한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아 더 단순한 모형인 모형 2를 채택하였다( $\Delta X^2=2.73, \Delta df=7, p=.908$ ). 따라서 집단 간 측정단위 동일성이 성립된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간 절편 동일성(scalar invariance)을 검증하였다(모형 3). 모형 2와의 차이 검증에 대한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아 더 단순한 모형인

모형 3을 채택하였다( $\Delta X^2=8.24$ ,  $\Delta df=7$ ,  $p=.312$ ). 따라서 집단 간 절편 동일성이 성립된 것을 확인하였다. 집단 간 형태 동일성, 측정단위 동일성, 절편 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집단 간 경로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집단 간 형태동일성, 측정단위동일성 및 절편 동일성이 성립된 두 집단의 측정모형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 집단 간 측정모형의 측정불변성 검정

| 모형             | $\chi^2$ | df | $\Delta \chi^2$ | $\Delta df$ | $\chi^2$ 차이검정<br>p-value | CFI  | RMSEA |
|----------------|----------|----|-----------------|-------------|--------------------------|------|-------|
| 모형 1: 형태 동일성   | 95.50**  | 64 |                 |             |                          | .986 | .046  |
| 모형 2: 측정단위 동일성 | 98.24*   | 71 | 2.73            | 7           | .908                     | .988 | .041  |
| 모형 3: 절편 동일성   | 106.47*  | 78 | 8.24            | 7           | .312                     | .988 | .041  |

\* $p<.05$  \*\* $p<.01$  \*\*\* $p<.001$

<표 6> 형태 동일성, 측정단위 동일성, 절편 동일성 성립 후 상·하 집단별 측정모형

|        | 상         |      |       |       | 하         |      |       |       |
|--------|-----------|------|-------|-------|-----------|------|-------|-------|
|        | $\lambda$ | S.E. | z     | p     | $\lambda$ | S.E. | z     | p     |
| 직무위험인식 |           |      |       |       |           |      |       |       |
| 문항1    | 0.87***   | 0.03 | 25.80 | <.001 | 0.92***   | 0.04 | 22.62 | <.001 |
| 문항2    | 0.95***   | 0.03 | 32.73 | <.001 | 0.93***   | 0.04 | 23.68 | <.001 |
| 문항3    | 0.58***   | 0.06 | 9.17  | <.001 | 0.58***   | 0.06 | 9.72  | <.001 |
| 직무스트레스 |           |      |       |       |           |      |       |       |
| 문항1    | 0.90***   | 0.03 | 36.09 | <.001 | 0.87***   | 0.04 | 21.00 | <.001 |
| 문항2    | 0.84***   | 0.04 | 22.87 | <.001 | 0.78***   | 0.06 | 13.57 | <.001 |
| 문항3    | 0.72***   | 0.05 | 15.35 | <.001 | 0.68***   | 0.05 | 13.10 | <.001 |
| 조직냉소주의 |           |      |       |       |           |      |       |       |
| 문항1    | 0.71***   | 0.05 | 14.10 | <.001 | 0.64***   | 0.06 | 11.41 | <.001 |
| 문항2    | 0.80***   | 0.04 | 18.73 | <.001 | 0.72***   | 0.05 | 14.75 | <.001 |
| 문항3    | 0.84***   | 0.03 | 28.23 | <.001 | 0.85***   | 0.04 | 22.14 | <.001 |
| 문항4    | 0.84***   | 0.03 | 28.95 | <.001 | 0.78***   | 0.06 | 13.65 | <.001 |

\* $p<.05$  \*\* $p<.01$  \*\*\* $p<.001$

## 나. 구조모형 분석 결과

구조모형의 비교에 앞서 모형이 자료에 잘 합치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모형의 합치도를 살펴보았다. 모형에 대한  $\chi^2$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chi^2$ 은 사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대안적으로 모형의 합치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대안적 합치도 지수로는 TLI, CFI, RMSEA, SRMR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TLI와 CFI는 .90 이상<sup>37)</sup>, RMSEA와 SRMR은 .08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sup>38)39)</sup>. 모형에 대한 모든  $\chi^2$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chi^2(64)=95.50, p=.007$ ), 합치도 지수가 기준 이상으로 모형이 자료에 잘 합치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TLI=.980, CFI=.986, RMSEA[90% CI]=.046[.025, .064], SRMR=.047).

연구모형에 설정된 각 변수들 간의 경로는 <표 7>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상 집단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위험인식은 조직냉소주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b=0.15, \beta=0.12, p=.063$ ), 직무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28, \beta=0.20, p=.012$ ). 이는 경찰이 인식하는 직무위험인식이 증가할 경우 조직냉소주의는 증가하지 않지만 직무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냉소주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0.36, \beta=0.42, p<.001$ ), 이는 경찰의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조직냉소주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 집단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 결과, 직무위험인식은 조직냉소주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b=0.12, \beta=0.11, p=.184$ ), 직무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21, \beta=0.17, p=.048$ ). 이는 경찰이 인식하는 직무위험인식이 증가할 경우 조직냉소주의가 증가하지는 않지만 직무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냉소주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0.25, \beta=0.29, p=.010$ ), 이는 경찰의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조직냉소

37)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pp.161-177.;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pp.1-55.

38) Browne, M.,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154, pp.136.

39) Hu & Bentler, 앞의 논문

주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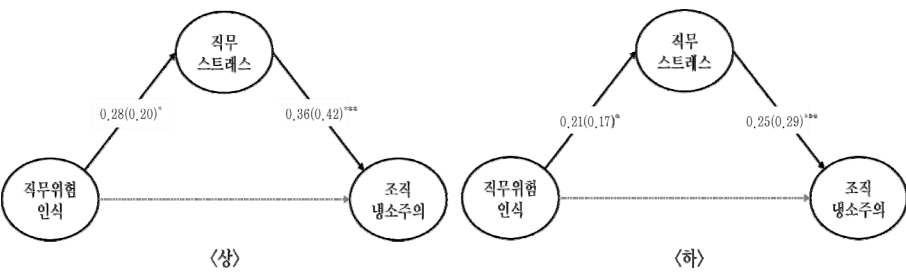
두 집단 모두 직무위험인식이 조직냉소주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직무위험인식은 직무스트레스를,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냉소주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모든 경로에서 상 집단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더 큰 값을 가졌다. 이는 하 집단보다 상 집단에서 각 변수들 간의 관계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표 7〉 집단별 구조모형 검정 결과

| 경로              | 상        |             |          |          | 하        |             |         |          |
|-----------------|----------|-------------|----------|----------|----------|-------------|---------|----------|
|                 | <i>b</i> | <i>S.E.</i> | $\beta$  | <i>p</i> | <i>b</i> | <i>S.E.</i> | $\beta$ | <i>p</i> |
| 직무위험인식 → 조직냉소주의 | 0,15     | 0,08        | 0,12     | ,063     | 0,12     | 0,09        | 0,11    | ,184     |
| 직무위험인식 → 직무스트레스 | 0,28 **  | 0,11        | 0,20 **  | ,012     | 0,21 *   | 0,10        | 0,17 *  | ,048     |
| 직무스트레스 → 조직냉소주의 | 0,36 *** | 0,08        | 0,42 *** | <,001    | 0,25 *   | 0,10        | 0,29 *  | ,010     |

\**p*<.05 \*\**p*<.01 \*\*\**p*<.001

〔그림 2〕 집단별 구조모형의 경로도



Note.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를 의미함.

다. 매개효과 검증

직무위험인식이 조직냉소주의를 설명하는 경로에서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상 집단의 경우 직무위험인식이 조직냉소주의를 설명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무스트레스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effect=0.10, 95% CI=[0.03, 0.21]). 하 집단의 경우 직무위험인식이 조직냉소주의를 설명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effect=0.05, 95% CI=[-0.001, 0.12]). 상 집단의 경우 직무위험인식이 직무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조직냉소주의를 설명하나, 하 집단의 경우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집단별 매개모형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 경로                                   | 상        |                                | 하        |                                |
|--------------------------------------|----------|--------------------------------|----------|--------------------------------|
|                                      | 직접<br>효과 | 간접효과<br>[bootstrapping 95% CI] | 직접<br>효과 | 간접효과<br>[bootstrapping 95% CI] |
| 직무위험<br>인식 → 직무<br>스트레스 → 조직<br>냉소주의 | 0.15     | 0.10<br>[0.03, 0.21]           | 0.12     | 0.05<br>[-0.001, 0.12]         |

\* $p<.05$  \*\* $p<.01$  \*\*\* $p<.001$

## V. 결론

이 연구는 경찰들의 조직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 직무위험인식과 조직냉소주의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직무위험인식과 직무스트레스가 경찰들이 부담하고 있는 업무의 양에 따라 다를 것을 가정하여 업무량에 따른 집단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지역 내 7개 경찰서(강북, 동작, 방배, 수서, 종암, 중부, 혜화)와 서울시경찰청의 관내 경찰 1인당 사건 수를 구하고 6년 동안의 경찰 1인당 평균 사건 수를 계산하였다. 서울시경찰청의 최근 6년간 경찰 1인당 평균 사건 수를 기준으로 7개 경찰서를 업무량이 높은 집단(상 집단)과 낮은 집단(하 집단)으로 나누었다. 상 집단에는 강북경찰서, 동작경찰서, 수서경찰서, 중부경찰서가 하 집단에는 방배경찰서, 종암경찰서, 혜화경찰서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상 집단에서 직무위험인식과 조직냉소주의의 관

계를 직무스트레스가 완전매개하였다. 경찰의 직무 위험인식이 증가할 경우 조직냉소주의가 증가하지는 않으나 직무위험인식이 증가할 경우 경찰의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증가된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냉소주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가 업무량이 많은 경찰서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직무위험인식이 직무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경로와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냉소주의를 설명하는 경로가 두 집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집단 간 경로계수의 크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직무위험인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의 직무에 대한 위험 인식이 증가할 경우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아지며, 높은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찰은 더 높은 수준의 조직냉소주의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가 업무량이 많은 경찰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릴 수 있는 제언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경찰의 직무위험에 대한 인식은 그 자체만으로는 조직냉소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직무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조직냉소주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업무량이 많을수록 해당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업무량 또한 조직냉소주의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냉소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 직무스트레스와 업무량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경찰관들은 직무위험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발생하더라도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해 마음을 돌볼 새 없이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인력부족과 업무강도에서는 경찰의 스트레스가 과증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조직냉소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찰전용 심리상담 센터인 ‘경찰마음동행센터’의 이용자 수는 지난 2017에서 2021년 사이 7400명 가까이 증가했으나 상담 인력은 20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sup>40)</sup>. 또한 마음동행센터에 상주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수 역시 상담을 희망하는 경찰관의 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에 위치한 18개 마음동행센터에 상주하는 상담사는 26명이며, 상담인력은 각 시·도 경찰청과 경찰병원에 1~2명

40) 조선비즈(2022), “상담사 1명이 470명 맡아… 우울증 호소하는 경찰 느는데 상담인력 태부족”, 검색일자 11월 28일

씩 배치된 정도이다.

따라서 조직차원에서 경찰의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인프라를 확장하여 경찰관의 치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시·도 경찰청 수준이 아니라 경찰서 수준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경찰관 개개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복지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경찰의 스트레스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직무 중 위험상황에 놓여 스트레스가 높은 경찰은 적극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경찰에 대한 긴급심리지원원은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법 교육 그리고 마음동행센터 연계 치유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직무위험에 근저한 스트레스가 조직냉소주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료지지(peer supporting)’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노출된 경찰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동료지지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sup>41)</sup>. 이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동료 상담가로서 전문 양성된 퇴역 혹은 현직 경찰들이 동료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추가적인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동료지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어 왔다<sup>42)43)44)</sup>.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sup>45)</sup>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동료지지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매우 도움이 되었으며, 응답자의 80%는 동료지원을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약 90%의 응답자가 동료에게 추천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경찰의 삶의 만족, 삶의 질, 더 나은 사회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6)</sup>. 동료지지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나 감정에 대하여 타인에게 이야기하

41) IACP Police Psychological Services Section. (2016). “Peer Support Guidelines”.

42) Martin, S. “Peer support as a powerful tool”.

43) Papazoglou, K., & Tuttle, B. M. (2018). “Fighting police trauma: Practical approaches to addressing psychological needs of officers”. *Sage Open*, 8(3), 2158244018794794.

44) Milliard, B. (2020). “Utilization and impact of peer-support programs on police officers’ mental health”. *Frontiers in Psychology*, 11, pp.1-8.

45) Law Enforcement Today, <https://www.lawenforcementtoday.com/police-peer-support-work/>, 검색일 11월 28일.

46) Chinman, M., Henze, K., Sweeney, P., & McCarthy, S. (2013). “Peer specialist toolkit: Implementing peer support services in VHA”. McCarthy S, Editor,

는 자기노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타인에게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47)48)49)</sup>. 그러나 국내에서는 경찰들 간에 자신의 생각 혹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이 거의 없으며, 경찰들의 자기노출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50)</sup> 전문 상담인력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 외에도 퇴역·현직 경찰관들로 동료지지 상담가를 양성하여 동료지지 상담을 시행한다면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분석에 활용된 표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표본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경찰서별 사건발생량으로 경찰관의 업무량을 상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연구의 객관성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비록 경찰서별 사건발생량을 관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수로 나누어 평균을 도출했음에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기준을 두었다는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직무위험과 조직냉소주의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업무량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경찰의 공공봉사동기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47) 한덕웅·박준호·김교현. (2004).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자기노출, 반복생각 및 정서경험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pp.99-130.

48) Pennebaker, J. W., & Beall, S. K. (1986). “Confronting a traumatic event: Toward an understanding of inhibition and disea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3), pp.274.

49) Páez, D., Velasco, C., & González, J. L. (1999). “Expressive writing and the role of alexythymia as a dispositional deficit in self-disclosure and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3), pp.630.

50) 전유진. (2010). 경찰공무원의 자기노출, 사회적지지 및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대학원경. 석사학위논문.

## 참고문헌

### 1. 단행본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California: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Kenny, D. A. (1979). *Correlation and causality*. New York: Wiley.
- Niederhoffer, A. (1967). *Behind the shield: The police in urban society*. Doubleday Garden City.
- Spielberger, C. D., Westberry, L. G., Grier, K. S., & Greenfield, G. (1981). *The police stress survey: Sources of stress in law enforcement*.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Washington, DC.
- 박재풍. (2021). 한국경찰의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패널조사 IV-2. 치안정책연구소

### 2. 논문

- 강리경·김선혁. (2017).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계약 위반의 매개효과”, *인적자원개발연구*, 20(1), pp.125-156.
- 박성수. (2014). “경찰조직 구성원간의 침묵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조직냉소주의의 매개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3(3), pp.81-108.
- 이순묵·김한조. (2011). “구조방정식 모형의 일반화 또는 집단차 연구를 위한 다집단 분석의 관행과 문제점”, *사회과학*, 43(1), pp.63-112.
- 이황우, 최응렬, 정우일. (2007).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 경비학회지*, (13), pp.403-422.
- 전유진. (2010). *경찰공무원의 자기노출, 사회적지지 및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대학원경. 석사학위논문.
- 정지수·최혜민. (2020).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직무위험과 직무압박,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내재적 동기의 영향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8(3), pp.236-269.

- 조성호 (2015).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요인이 직무소진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격특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경찰학회보*, 17(4), pp.185-212.
- 조현빈·박준기. (2021). “경찰공무원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연구- 경찰복지법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1), pp.183-202.
- 한덕웅·박준호·김교현. (2004).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자기노출, 반복생각 및 정서경험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pp.99-130.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pp.161-177.
- Berking, M., Meier, C., & Wupperman, P. (2010). “Enhancing emotion-regulation skills in police officers: Results of a pilot controlled study”. *Behavior Therapy*, 41(3), pp.329-339.
- Biggam, F. H., Power, K. G., Macdonald, R. R., Carcary, W. B., & Moodie, E. (1997). “Self-perceived occupational stress and distress in a scottish police force”. *Work & Stress*, 11(2), pp.118-133.
- Brooks, S. M., & Vance, R. J. (1991). “Organizational cynicism: Initial investigation of a construct”. *Unpublished Manuscript*.
- Browne, M.,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154, pp.136.
- Byrne, B. M., Shavelson, R. J., & Muthén, B. (1989). “Testing for the equivalence of factor covariance and mean structures: The issue of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105(3), 456.
- Chinman, M., Henze, K., Sweeney, P., & McCarthy, S. (2013). “Peer specialist toolkit: Implementing peer support services in VHA”. McCarthy S, Editor,
- Crank, J. P., Regoli, R., Hewitt, J. D., & Culbertson, R. G. (1995).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antecedents of role stress, work alienation, and anomie among police executiv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2(2), pp.152-171.

- Cullen, F. T., Lutze, F. E., Link, B. G., & Wolfe, N. T. (1989). "The correctional orientation of prison guards: Do officers support rehabilitation". *Fed.Probation*, 53, pp.34-41.
- Dean Jr, J. W., Brandes, P., & Dharwadkar, R. (1998). "Organizational cynicism".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2), pp.341-352.
- Gershon, R. R., Barocas, B., Canton, A. N., Li, X., & Vlahov, D. (2009). "Mental, physical, and behavioral outcomes associated with perceived work stress in police offic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6(3), pp.275-289.
- Graves, W. (1996). "Police cynicism: Causes and cures". *FBI L.Enforcement Bull.*, 65(6), pp.16-20.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pp.1-55.
- IACP Police Psychological Services Section. (2016). "Peer Support Guidelines".
- Jermier, J. M., Gaines, J., & McIntosh, N. J. (1989). "Reactions to physically dangerous work: A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0(1), pp.15-33.
- Jöreskog, K. G. (1971). "Simultaneous factor analysis in several populations". *Psychometrika*, 36(4), pp.409-426.
- Manolias, M. (1983). "A preliminary study of stress in the police service". *London: Home Office Scientific and Development Branch Human Factors Group*,
- Martin, S. "Peer support as a powerful tool".
- Meredith, W. (1993). "Measurement invariance, factor analysis and factorial invariance". *Psychometrika*, 58(4), pp.525-543.
- Milliard, B. (2020). "Utilization and impact of peer-support programs on police officers' mental health". *Frontiers in Psychology*, 11, pp.1-8.

- Mirvis, P., & Kanter, D. L. (1989a). "Combating cynicism in the workplace". *National Productivity Review*, 8(4), pp.377-394.
- Páez, D., Velasco, C., & González, J. L. (1999). "Expressive writing and the role of alexythymia as a dispositional deficit in self-disclosure and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3), pp.630.
- Paoline III, E. A., & Gau, J. M. (2020).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sources of police job satisfaction". *Police Quarterly*, 23(1), pp.55-81.
- Papazoglou, K., & Tuttle, B. M. (2018). "Fighting police trauma: Practical approaches to addressing psychological needs of officers". *Sage Open*, 8(3), 2158244018794794.
- Pennebaker, J. W., & Beall, S. K. (1986). "Confronting a traumatic event: Toward an understanding of inhibition and disea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3), pp.274.
- Reese, J. T. (1986). "Policing the violent society: The american experience". *Stress Medicine*, 2(3), pp.233-240.
- Rosseel, Y. (2012). "Lavaan: An R package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8, pp.1-36.
- Stevenson, A. (2010). cynicism.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Oxford University Press. 검색일 2022.12.26
- Stratton, J. B. (1978). "Police stress, part 1: An overview". *Police Chief*, 45(4), pp.58-62.
- Tesluk, P. E., Farr, J. L., Mathieu, J. E., & Vance, R. J. (1995). "Generalization of employee involvement training to the job setting: Individual and situational effects". *Personnel Psychology*, 48(3), pp.607-632.
- Vandenberg, R. J., & Lance, C. E. (2000).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measurement invariance literature: Suggestions,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1), pp.4-70.

Violanti, J. M., Marshall, J. R., & Howe, B. (1985). "Stress, coping, and alcohol use: The police connection". *Journal of Police Science & Administration*, 13, pp.106-110.

Wolfe, S. E., & Piquero, A. R. (2011). "Organizational justice and police misconduc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8(4), pp.332-353.

##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risk perception and organizational cynicism of community police: a multi-group analysis of workload

Park, Eun-seo\* · Kim, Seung-Hyun\*\*

The cynicism found in police organizations acts as an obstacle to organizational innovation. This study identified the influencing factors on organizational cynicism of field police officers and proposed a solution through appropriate intervention. In the research design, it was predicted that the job risk perceived by field police officers woul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job stress, which would lead to organizational cynicism. In addition, it was assumed that job risk and job stress would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workload,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workloa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as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if the police's perception of job risk increases, the level of job stress increases, which can lead to an increase in organizational cynicism.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is relationship was stronger in police stations with a lot of work. This study proposes that appropriate intervention in job stress and workload will be made to resolve organizational cynicism.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frastructure for field police to create a work environment in which stress based on job risk can be actually managed. In addition, it is urged to introduce peer support programs operated overseas in Korea to provide a universal working environment for police to relieve job stress.

❖ Key words: job risk perception, organizational cynicism, job stress, community

---

\* first author, Ph.D. Student,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in Dongguk University(Seoul).

\*\* corresponding author,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in Dongguk University(Seoul).

police, multi-group analysis

# 형사정책연구 봄호 논문투고 안내

형사정책연구 '봄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접수 마감일은 2023년 2월 28일(화)까지입니다. 관련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투고를 바랍니다.

## 1. 원고내용

- 제목(한글 및 외국어)
- 성명, 소속 및 직위(한글 및 외국어)
  - ※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
- 초록(한글 및 외국어)
- 주제어(한글 및 외국어)
- 본문(항목번호는 I, 1, 가, 1), 가) 순으로 구성하며 제목위, 아래 한행씩 띄어준다)
  - ※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하고 번역문인 경우 원문 별도 첨부
  - 외국어는 단일언어 표기시에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고 국문번역본을 첨부
- 참고문헌(국내, 구미, 일본의 순으로 저자별 가나다 및 알파벳순으로 하되 단행본, 논문의 순으로 정리, 단 구미문헌의 경우 저자의 성을 먼저 기록한 후 이름을 기록하고 책명, 발행연도 순으로 구성)
- 각주(논문 하단에 위치하되 일련번호를 명시)
- 제목, 성명, 소속 및 직위, 초록 주제어의 외국어 작성시, 반드시 영문을 포함하여 작성

## 2. 원고작성

- 용지종류 및 여백 : A4, 위쪽 35mm, 오른쪽 및 왼쪽 30mm, 아래쪽 30mm
- 글자모양 및 크기 : 신명조체 11포인트(각주는 10포인트)
- 줄 간격 : 180%
- 분량 : A4 20매 내외(최대 25매 초과 불가)
- 작성 : 한글 프로그램 사용

## 3. 투고자격 및 심사

- 원고 투고자의 자격은 학계의 대학교수, 실무계의 변호사, 판사, 검사 등 형사정책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연구경력자로 한다.
- 제출된 원고는 형사정책 관련분야의 학술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제출된 원고는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원고 내용의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 필자는 이에 응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4. 원고접수 마감 및 제출처

- 원고접수 마감일 : 2023년 2월 28일(화)
- 제출처 : <https://kic.jams.or.kr>
- 전 화 : (02) 3460-5184
  - ※ 투고논문은 투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성명, 소속 등 신상정보를 반드시 삭제하여 주시고,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은 투고자에게 있습니다.
  - ※ 논문투고 시 발생하는 심사료 및 게재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서 부담합니다.



## CALL FOR PAP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 AIM AND SCOP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IJCJ)*, a biannual and peer-reviewed English journal published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ICJ), facilitates comprehensive analysis and evidence-based research on crime trends in order to make a contribution to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olicies.

*The IJCJ* will share academic and practical views from home and abroad and play a pivotal role as an international academic arena for criminal justice policies.

### SUBMISSION DETAILS

- Manuscripts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and should be no more than 10,000 words in MS word.
- Please provide an abstract which should be no more than 200 words in length and a maximum of 5 key words.
- All papers should identify all authors and provide their contact information such as phone numbers, full postal addresses, email addresses, affiliations and so on.
- Authors should ensure that they have written entirely original works, and should not publish manuscripts describing essentially the same research in more than one journal.
- Honorarium (USD 2,000 or KRW 2,000,000) will be paid when papers are accepted for publication.
- All manuscripts must be submitted to the managing editor Ms. Hyewon KWON at [ijcj@kicj.re.kr](mailto:ijcj@kicj.re.kr)

### AREA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IJCJ)* invites papers from many different realms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at both regional and global levels. Any issues related to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will be welcomed such as:

Community Sanction, Corrections, Corruption & White Collar Crime, Crime Prevention & Protection, Crime Trends, Crime & Deviance, Criminal Investigation, Criminal Law & Policy, Criminal Procedure, Cybercrime, Drug, Terrorism & Organized Crime, Economic & Corporate Crime, Information, Technology & Forensic Science, 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Justice, Penology, Police & Policing, Violent Crime.



## 간행물출판위원회

위원장 : 이 천 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위 원 : 강 지 현 (울산대학교 경찰학전공 교수)

강 태 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김 지 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 한 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 동 원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 동 희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최 영 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최 준 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탁 희 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황 지 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가나다 순)

간 사 : 구 교 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 선임행정원)

##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32호, 2022·겨울호)

발행인 : 하 태 훈

발행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02)3460-5184

등 록 : 1990년 4월 3일 바-1360

발행일 : 2022년 12월 30일

인 쇄 : 고려씨엔피  
전화 (02)2277-1508

본 학술지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함

[정가 : 10,000원]

